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85호

2025. 8. 11.(월)



서울특별시

# 목 차

◈ 공 고
제2025-2425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 2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425호

##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본부·국 |
|---|---|---|---|
| 조례안 (19건) | 1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국 (인력개발과) |
| | 2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국 (인력개발과) |
| | 3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 | 4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 | 5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 | 6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 | 7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 | 8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 | 9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
| | 10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 | 11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 · 본부 · 국 |
|---|---|---|---|
| | 12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정신건강과) |
| | 13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감염병관리과) |
| | 14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건강국<br>(식품정책과) |
| | 15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물순환안전국<br>(물재생계획과) |
| | 16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물순환안전국<br>(물재생계획과) |
| | 17 |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주택실<br>(주택정책과) |
| | 18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미래공간기획관<br>(도시활력담당관) |
| | 19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 디지털도시국<br>(정보보안과) |
| 동의안<br>(66건) | 1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무국<br>(재산관리과) |
| | 2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 행정국<br>(시민협력과) |
| | 3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재무국<br>(세제과) |
| | 4 |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평생교육국<br>(교육지원정책과) |
| | 5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 평생교육국<br>(평생교육과) |
| | 6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 평생교육국<br>(평생교육과) |
| | 7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 기획조정실<br>(조직담당관) |
| | 8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기획조정실<br>(조직담당관) |
| | 9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기획조정실<br>(재정담당관)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 · 본부 · 국 |
|---|---|---|---|
| | 10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 기획조정실<br>(공기업담당관) |
| | 11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 경제실<br>(경제정책과) |
| | 12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 경제실<br>(창업정책과) |
| | 13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 경제실<br>(금융투자과) |
| | 14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 경제실<br>(금융투자과) |
| | 15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경제실<br>(첨단산업과) |
| | 16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민생노동국<br>(소상공인정책과) |
| | 17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 민생노동국<br>(소상공인정책과) |
| | 18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 기후환경본부<br>(기후환경정책과) |
| | 19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 기후환경본부<br>(녹색에너지과) |
| | 20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 문화본부<br>(문화정책과) |
| | 21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 문화본부<br>(문화정책과) |
| | 22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문화본부<br>(문화예술과) |
| | 23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관광체육국<br>(관광정책과) |
| | 24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 홍보기획관<br>(홍보담당관) |
| | 25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 홍보기획관<br>(민원담당관)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 · 본부 · 국 |
|---|---|---|---|
| | 26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복지실<br>(복지정책과) |
| | 27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여성가족실<br>(저출생담당관) |
| | 28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 주택실<br>(주택정책과) |
| | 29 |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 주택실<br>(임대주택과) |
| | 30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 디지털도시국<br>(디지털정책과) |
| | 31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 디자인정책관<br>(디자인정책담당관) |
| | 32 |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 교통실<br>(도시철도과) |
| | 33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행정국<br>(인력개발과) |
| | 34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행정국<br>(인력개발과) |
| | 35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평생교육국<br>(청소년정책과) |
| | 36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평생교육국<br>(청소년정책과) |
| | 37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평생교육국<br>(청소년정책과) |
| | 38 |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평생교육국<br>(청소년정책과) |
| | 39 |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 ·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경제실<br>(창업정책과) |
| | 40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경제실<br>(뷰티패션산업과) |
| | 41 | 서울풍물시장 관리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민생노동국<br>(상권활성화과)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 · 본부 · 국 |
|---|---|---|---|
| | 42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기후환경본부<br>(자원순환과) |
| | 43 |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기후환경본부<br>(자원회수시설과) |
| | 44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기후환경본부<br>(생활환경과) |
| | 45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미래한강본부<br>(수상운영과) |
| | 46 |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문화본부<br>(문화예술과) |
| | 47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관광체육국<br>(체육정책과) |
| | 48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관광체육국<br>(체육정책과) |
| | 49 |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관광체육국<br>(체육시설관리<br>사업소) |
| | 50 |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관광체육국<br>(체육시설관리<br>사업소) |
| | 51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복지실<br>(장애인복지과) |
| | 52 |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복지실<br>(장애인복지과) |
| | 53 |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복지실<br>(장애인복지과) |
| | 54 |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복지실<br>(자활지원과) |
| | 55 |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복지실<br>(자활지원과) |
| | 56 |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복지실<br>(고독대응과) |
| | 57 | 서울특별시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시민건강국<br>(감염병관리과) |
| | 58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시민건강국<br>(식품정책과) |
| | 59 |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글로벌도시정책관<br>(다문화담당관) |
| | 60 |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글로벌도시정책관<br>(다문화담당관) |

| 구분 | 연번 | 제출 안건명 | 소관 실 · 본부 · 국 |
|---|---|---|---|
| | 61 |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글로벌도시정책관<br>(다문화담당관) |
| | 62 |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글로벌도시정책관<br>(다문화담당관) |
| | 63 |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글로벌도시정책관<br>(다문화담당관) |
| | 64 |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 | 주택실<br>(공공주택과) |
| | 65 | – 시청역 펀 스테이션 조성 –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위 · 수탁 협약체결 동의안 | 미래공간기획관<br>(도시활력담당관) |
| | 66 |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글로벌도시정책관<br>(도시외교담당관) |
| 의견<br>청취안<br>(4건) | 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 한양대학교 – | 도시공간본부<br>(시설계획과) |
| | 2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 도시공간본부<br>(도시재창조과) |
| | 3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균형발전본부<br>(도시정비과) |
| | 4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 균형발전본부<br>(동북권사업과) |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중복·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여 후생복지 제도 현행화하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조항을 개선하여 후생복지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복·사문화 조항 삭제(현행 제7조제1호, 제8호)
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근거 해소(안 제7조제5호)
다. 출산지원 조항 개선 및 확대 반영(안 제7조제9호, 제14호)
라. 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조항 신설(안 제7조제1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6. 0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유진 (☎ 2133-578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2자녀 이상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지원 등”을 “자녀출산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시술비”를 “시술비와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16.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제9조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뜻은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 ----------. -------- ---------- ----------. |
| 1. 우수 · 효행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 포상 · 문화유적지 시찰 | <삭 제>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5. 정년 · 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 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 · 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
| 6. · 7. (생 략) | 6. · 7. (현행과 같음) |
| 8.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 <삭 제> |
| 9.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2자녀 | 9. ---------- ---------- 자녀출 |

| | |
|---|---|
| 이상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지원 등 | 산 지원 |
| 10. ~ 13. (생 략) | 10. ~ 13. (현행과 같음) |
| 14.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 14. ---------- 시술비와 산전·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 |
| 15. (생 략) | 15.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6.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11조(회의) ①·② (생 략) | 제11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 ③ ---------- 담당사무관---------. |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9호, 14호, 16호

※ 기추진 중인 후행복지사업을 조례에 반영, 사업 근거 명확화

2. 비용추계의 전제

**(출산지원 확대 운영)**

– 첫째자녀에 대한 출산축하포인트 지급 : 1인당 포인트* × 지원인원**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둘째(200만원) · 셋째(300만원) 지원금액과 균형 필요

** 지원인원 : 연 160명 (최근 5년간 서울시 직원의 첫째 자녀 출산 인원 중 연 최다인원으로 산정)

**(산전 · 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산전 · 산후 방문관리 서비스 지원 횟수

· 임신 · 출산한 소속 공무원(현행 유지) : 1인당 5회

· 임신 · 출산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신규 제공) : 1인당 3회

– 1회 방문관리 단가 : 220천원(부가세 포함)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 20년부터 추진중

– 행정종합배상공제 연간 정기등록분 : 1인당 보험료* × 총정원수**

*2025년 기준 1인당 보험료 : 18,456원

**2025년 기준 총정원수 : 12,971명(서울시 소속 전직원(공공안전관, 공무직, 촉탁직 포함, 소방직 제외))

– 1인당 보험료와 총정원수는 매년 변동되며, 매년 7월 기준 총정원수를 파악하여 차기 예산 편성

– 최근 3년간 납부액 평균 상승률(3.7%)을 반영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지출 | ○첫째 출산지원 | 160,000 | 160,000 | 160,000 | 160,000 | 160,000 | 800,000 |
| | ○산전 · 산후서비스 | 113,520 | 113,520 | 113,520 | 113,520 | 113,520 | 567,600 |
| | ○공제보험료 납부 | 264,000 | 273,768 | 283,897 | 294,402 | 305,294 | 1,421,361 |
| | 소계(a) | 537,520 | 547,288 | 557,417 | 567,922 | 578,814 | 2,788,961 |
| 수입 | 소계(b) | 해당 없음 | | | | | |
| □총 비용(a-b) | | 537,520 | 547,288 | 557,417 | 567,922 | 578,814 | 2,788,961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537,520 | 547,288 | 557,417 | 567,922 | 578,814 | 2,788,961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537,520 | 547,288 | 557,417 | 567,922 | 578,814 | 2,788,961 |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인력개발과 이소영(02-2133-5773), 유초롱(5785), 강민형(577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출산지원 확대 운영)**

- 최근 5년간 서울시 직원의 첫째 출산인원 중 연 최다인원으로 산정(’ 22년, 약 160명)

**(산전 · 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산출식 : 예상 이용인원 × 인당 평균 이용 건수 × 1회 서비스 비용

1) 소속 공무원 서비스 비용( ‘24년 서비스 이용 현황 반영)

- 97명 × 3.6회 × 220천원 =76,780천원

2) 공무원의 배우자 서비스 비용( ‘23년 출산현황 및 ‘24년 서비스 이용실적으로 추계)

- 76명* × 2.2회** × 220천원 = 36,740천원

* '23년 남성직원 출산인원(123명) × 서비스 이용률(62%)

** 1인당 최대 서비스 제공횟수(3회) × 평균 이용률(72%)

3) 산전·산후 방문관리 서비스 비용 총계

- 76,780천원(소속 공무원 대상) + 36,740천원(공무원의 배우자 대상)

= 113,520천원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 2025년도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계상액 안내(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2458(2024.8.8.)) 첨부 자료 참고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최준호 (☎ 2133-577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운용관으로 한다”를 “기금운용관이 맡는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해당년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한다.<br>②·③ (생 략)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기금운용관이 맡는다.<br>②·③ (현행과 같음) |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br>1. 정기회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해당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함.<br>2. (생 략)<br>②·③ (생 략)<br><신 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br>1. ---------- 해당연도----------.<br>2. (현행과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br>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

| | |
|---|---|
| | 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 4. 작성자

행정국 인력개발과 주무관 최준호(02-2133-5771)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를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목록에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0플러스캠퍼스 시설 목록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추가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허준오(☎ 2133-396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0플러스 캠퍼스 :”를 “50플러스캠퍼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0플러스센터 :”를 “50플러스센터:”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자 :”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가족 :”을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 :”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급자 :”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5 중 “시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의 50플러스캠퍼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50플러스캠퍼스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 은평구 통일로 62길7 |
|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구로구 오류로 36-25 |
|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도봉구 마들로 13길84 |
|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 광진구 능동로 3길 73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뜻은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 ---------- ---------- ---------- 별표와 ----. |
| 1. 50플러스캠퍼스 : 중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시설 | 1. 50플러스캠퍼스: --------- ---------- ---------- ---------- -- |
| 2. 50플러스센터 : 중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시설 | 2. 50플러스센터: ---------- ---------- ---------- ---------- -- |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 ---------- ---------- |

| | |
|---|---|
|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 ----------<br>----------<br>-----.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 1. ----------<br>-- 수급자: -----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 2. ----------<br>----------<br>---------- 가족: ----- |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 3. ----------<br>---------- 사람: --- |
|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 4. ----------<br>-- 수급자: ----- |
| 5.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 5. ----------<br>----------<br>----------<br>-- 제외한다): ----------<br>---------- |
| 6.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 6. ----------<br>----------<br>---------- 경우: --------<br>----------<br>-- |
|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 | <삭 제> |

| | |
|---|---|
| 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줄임.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6조의5(사용료의 반환) ---------- ---- 사용---------- ---------- ---------- --------. |
|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생 략) | 제7조(시설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② ---------- ----------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 시 설 명 | 명 칭 | 소 재 지 |
|---|---|---|
| 50플러스 캠퍼스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 은평구 통일로 62길7 |
|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구로구 오류로 38-25 |
|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도봉구 마들로 13길84 |
| | <신 설> | <신 설> |

[별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 시 설 명 | 명 칭 | 소 재 지 |
|---|---|---|
| 50플러스 캠퍼스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 은평구 통일로 62길7 |
|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
|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구로구 오류로 38-25 |
|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도봉구 마들로 13길84 |
|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 광진구 능동로 3길 73 |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자양동) 신규 개관에 따라 [별표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개정 및 사업비 · 운영비 추가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 동부캠퍼스 관련 ’ 25년 예산 편성액을 1차년도 기초 금액으로 설정하고
- 사업비(운영비) 증가율은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 3년(’ 22~’ 24) 물가상승률 평균 3.66%로 가정하여 산정

(’ 22년 물가상승률 5.1% , ’ 23년 물가상승률 3.6%, ’ 24년 물가상승률 2.3%)

- 인건비 증가율은 최근 3년(’ 23~’ 25) 총인건비 인상률 평균 3.8%로 가정하여 산정

(’ 23년 총인건비 인상률 3.1% , ’ 24년 총인건비 인상률 3.9%, ’ 25년 총인건비 인상률 4.4%)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지출 | ○ 사업비(운영비) | 1,321,475 | 1,369,841 | 1,419,977 | 1,471,948 | 1,525,822 | 7,109,063 |
| | ○ 인건비 | 730,000 | 757,740 | 786,534 | 816,422 | 847,446 | 3,938,142 |
| | 출연금 소계(a) | 2,051,475 | 2,127,581 | 2,206,511 | 2,288,370 | 2,373,268 | 11,047,205 |
| 수입 | ○ 소계(b) | | | | | | |
| □총 비용(a-b) | | 2,051,475 | 2,127,581 | 2,206,511 | 2,288,370 | 2,373,268 | 11,047,205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출연금) | 2,051,475 | 2,127,581 | 2,206,511 | 2,288,370 | 2,373,268 | 11,047,205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2,051,475 | 2,127,581 | 2,206,511 | 2,288,370 | 2,373,268 | 11,047,205 |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평생교육정책팀장 우효정
담 당 자 허준오(02-2133-3963, hahaher@seoul.go.kr)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합계** | | **2,051,475** | **2,127,582** | **2,206,510** | **2,288,370** | **2,373,268** |
| **사업비(운영비) 소계** | | **1,321,475** | **1,369,842** | **1,419,976** | **1,471,948** | **1,525,822** |
| |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 | 175,329 | 181,746 | 188,398 | 195,293 | 202,441 |
| | 취업 컨설팅 | 15,576 | 16,146 | 16,737 | 17,350 | 17,985 |
| | 권역밀착형 중장년 잡페어 | 45,950 | 47,632 | 49,375 | 51,182 | 53,055 |
| | 디지털 직무역량강화 | 56,000 | 58,050 | 60,174 | 62,377 | 64,660 |
| | 4050직업훈련 | 125,000 | 129,575 | 134,317 | 139,233 | 144,329 |
| | 경력설계상담 | 5,000 | 5,183 | 5,373 | 5,569 | 5,773 |
| | 권역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 77,200 | 80,026 | 82,954 | 85,991 | 89,138 |

| | | | | | | |
|---|---|---|---|---|---|---|
| | 시민이용공간시설 및 안전관리 | 821,420 | 851,484 | 882,648 | 914,953 | 948,441 |
| **인건비 소계** | | **730,000** | **757,740** | **786,534** | **816,422** | **847,446** |
| | 기본급 | 658,500 | 683,523 | 709,497 | 736,458 | 764,443 |
| | 제수당 | 71,500 | 74,217 | 77,037 | 79,964 | 83,003 |

- 인건비 산정기준 : 동부캠퍼스 소속 정규직 현원(’25.4.기준) 14명(3급 1명, 4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4명) 기준으로 산정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조문 현행화
나. 조직개편(조직명 및 사무 변경)에 따른 부서명 정비
다.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
라. 어려운 용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생략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이선복 (☎2133-669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제명이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민관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제5호가목”을 “제10호가목”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실 건축기획과”를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방지하는”을 “방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여성가족실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시스템과장에”를 “정보시스템과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컴퓨터화일”을 각각 “컴퓨터 파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중 “컴퓨터화일”을 각각 “컴퓨터 파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설치기준란의 “주택법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기획관”을 “규제혁신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3항”을 “법 제20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리버버스 운영 및 지원”을 “한강버스 운영 및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세종로 1-68번지”를 “세종대로 172”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제4항제1호”를 “제19조제5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제2조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② (생 략)<br>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br>② (생 략) |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 민간기관----------.<br>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조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br>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이 맡는다.<br>③ ~ ⑤ (생 략)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 경제실장----------.<br>③ ~ ⑤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 제13조(준용) ----------<br>----------<br>----------<br>----------<br>----------<br>----------. -----<br>----------<br>제11조제3항----------<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제한장소 등) ① (생 략) | 제3조(제한장소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br>----------<br>----------<br>---------- 교육환경보호구역<br>----------<br>----------<br>----------<br>---.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생 략) |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이 호 다목에 한정하며, 이하 "시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비율 이하로 건폐율 완화 가능 | 1. ----------나목----------. |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0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①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하는 투자사업인 공연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의 공연장과 공연장 중 바닥면적 2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음악당은 제외한다.) | 3. ----------<br>----------<br>----------<br>----------<br>----------<br>----------<br>----------<br>----------<br>----------<br>----------<br>---------- 제10호가목--<br>----------<br>----------<br>----------<br>------- |
| 4. ~ 15. (생 략) | 4. ~ 15.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5조(운영조직) 제4조의 기능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전시관을 주택실 건축기획과 소속으로 둔다. | 제5조(운영조직) ---------- ----------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8조 서울특별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권고 및 후속 조치) ①·② (생 략) | 제18조(권고 및 후속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 --------. |
| 제19조(피해자 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피해자 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 ---------- ---------- ----------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 6. ---------- ---------- ---------- -------- 방치하는 ---- |

| | |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이관하여야 한다. | ⑥ 여성가족실장----------<br>----------<br>----------<br>----------<br>----------<br>--------. |
| 제20조(징계 등)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징계 등) ① ----------<br>----------<br>----------<br>-------특별한 사유가 없으면<br>----------<br>----------<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9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서울특별시장의 공인은 정보시스템과장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 정보시스템과에----------.<br>---------- |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생 략)<br>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br>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br>② ---------- 컴퓨터 파일----------.<br>③ ---------- -- 컴퓨터 파일---------- |

| | |
|---|---|
|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br>----------<br>--.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별지 제2호의2서식] | [별지 제2호의2서식]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공개대상기관에서 징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 7. ---------- 정하는 ---------- |
| 8. ~ 16. (생 략) | 8. ~ 16.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1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현 행

[별표 2]

| 시설물 | 설치기준 |
|---|---|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
| 2-1.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 |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br>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 4.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초과 15 |

### 개 정 안

[별표 2]

| 시설물 | 설치기준 |
|---|---|
|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00㎡당 1대 |
| 2-1.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 |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br>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4㎡당 1대 |
| 4.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초과 15 |

| | |
|---|---|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br>〔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br>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하 생략)

| | |
|---|---|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br>〔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br>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대비표

## (제12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br>----------<br>----------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br>----------<br>----------<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3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 략) |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 ③ ----------<br>----------<br>------- 규제혁신기획관----<br>----------.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 ⑤ ----------<br>---------- 규제개선담당관----. |
| ⑥ ~ ⑩ (생 략) | ⑥ ~ ⑩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4조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1. ~ 6. (생 략)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 법 제20조의2제4항----------.<br>1. ~ 6.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5조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장 리버버스 운영 및 지원 | 제2장 한강버스 운영 및 지원 |
|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한강버스 홍보 등 리버버스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4. ---------- 한강버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7조(안전운항 증진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한강버스의 안전한 운항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리버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법규위반 현황, 선박사고 및 선박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운항 증진을 위한 시책) ①----------한강버스----------.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 | |
|---|---|
| 및 환경친화적 선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br>----------<br>----------.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그 밖에 리버버스 운영 및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 한강버스 ----------<br>----------<br>----------<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6조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생략)<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br>1. (생 략)<br>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br>3. ~ 6. (생 략)<br>③ (생 략) |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br>----------<br>3. ~ 6.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7조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br>----------<br>----------<br>----------<br>-------. |
| 1. 내부위원 : 창의행정담당관,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1. -------- 조직담당관-----<br>----------<br>--------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제9조(회의) ① ~ ⑤ (생 략) | 제9조(회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창의행정담당관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학술용역사업업무 담당자가 각각 맡는다. | ⑥ ----------<br>----------<br>---------- 조직담당관 --<br>----------<br>----------<br>----------. |
|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 제16조(부실용역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제1항의 해당 기관에 불이익조치를 취하도록 시장에게 요청이 있는 | ② ----------<br>----------<br>---------- |

| | |
|---|---|
| 때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8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6조(간사) ① (생 략)<br>② 간사는 창의행정담당관이 된다.<br>③ (생 략) | 제2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br>② ---- 조직담당관----------.<br>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19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1. "광화문광장"이란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대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내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포함한다. | 1. ---------- 세종대로 172 ----------.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0조 서울특별시의회 공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br>----------<br>----------<br>----------<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1조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생 략)<br>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br>③ (생 략) |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br>----------<br>----------.<br>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2조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생 략)<br>② 구청장이 사전검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br>③·④ (생 략) | 제12조(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① (현행과 같음)<br>②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br>③·④ (현행과 같음) |
| 제19조(자치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조직, 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자치구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생 략)<br>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br>④ (생 략) |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4조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9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9조(업무의 협조) ---------- ---------- ----------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5조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업무협조) ----------<br>----------<br>----------<br>----------<br>----------<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6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5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입주자등과 관리주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협조) ----------<br>----------<br>----------<br>----------<br>----------<br>----------<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7조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생략)<br>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 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br>③·④ (생 략) |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③·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8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1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br>①·② (생 략)<br>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br>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29조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6조(실태조사) ① (생 략)<br>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br>③ (생 략) | 제6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br>② ----------<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0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 략)<br>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1조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생략)<br>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br>②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2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 략)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시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 ④ ----------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② (생 략) | 제37조(시설물의 순찰)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하천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사용자에게 해당 설치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중지·철거 또는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 ③ ---------- ----------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3조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서울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 ----------<br>----------<br>----------<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4조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① 현장 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긴급구조지원활동) ① ----------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5조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br>----------<br>----------<br>----------<br>----------<br>----------<br>----------<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6조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 략)<br>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7조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 략)<br>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8조(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생 략)<br>⑤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3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생 략)<br>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기술개발·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br>③ (생 략) | 제7조(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 ----------<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br>----------.<br>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0조(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4조(사업계획·예산) ① ~ ④ (생 략)<br>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사업계획·예산)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1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② (생 략)<br>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br>④ (생 략) |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2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① (생 략) | 제10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노선을 신뢰하고 진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상 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노선의 운행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을버스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 | ④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
|---|---|
| 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운행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br>---. ----------<br>----------<br>----------<br>----------<br>----------<br>----------<br>----------<br>----------.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3조(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4조(의견청취) ① (생 략)<br><br>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4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 ④ (생 략)<br>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책사업 추진)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br>----------<br>----------<br>----------. --<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5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 ~ ⑤ (생 략)<br>⑥ 법 제48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구급차등의 운전자와 법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를 말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br>⑦ (생 략) | 제11조(응급환자 이송) ① ~ ⑤ (현행과 같음)<br>⑥ ----------<br>----------<br>----------<br>----------<br>----------<br>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br>----------<br>----------<br>----------<br>----------<br>----------.<br>⑦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6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생 략)<br><br>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br>②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7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
| ① ~ ③ (생 략)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8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생 략)<br>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br>③ (생 략) |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 ----------<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br>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49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 ⑥ (생 략) ⑦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0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1조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br>----------<br>----------.<br>----------<br>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br>----------<br>----------.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2조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br>----------<br>----------<br>----------<br>----------<br>----------. ---------<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53조(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감독) ----------<br>----------<br>----------<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br>----------.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3조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8조(자료요청) ① (생 략)<br>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자료요청) ① (현행과 같음)<br>②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4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생략) | 제7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보고서·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13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 략) | 제13조(기반시설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 ②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 |
|---|---|
| 따라야 한다. |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5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7조(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생략)<br>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등록업종, 자격·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br>③ (생 략) | 제7조(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br>----------<br>----------<br>-----.<br>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6조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 ①·② (생 략)<br>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자치구 지역본부장과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제9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 (생 략)<br>②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현황,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지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br>③ (생 략) | 제9조(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③ (현행과 같음) |
|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서울특별시 지역본부장은 자치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실무지원반의 | 제10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 |

| | |
|---|---|
| 투입 등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인근 지역본부장,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및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 ---------- ---------- ----------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7조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6조(업무의 협조) ①·② (생략)<br>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업무의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8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의2(자료 요구)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의2(자료 요구) ---------- ---------- ---------- ---------- ---------- ----------.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

# 신·구조문대비표

## (제59조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7조(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br>②·③ (생 략) | 제7조(위원의 의무) ① ----------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br>②·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60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1. (생 략)<br>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br>3. ~ 11. (생 략)<br>②·③ (생 략) | 제3조(기능) ① ----------.<br>1. (현행과 같음)<br>2. ---------- 제19조제5항제1호가목 ----------<br>3. ~ 11. (현행과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61조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5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62조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br>⑥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br>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

# 신·구조문대비표

## (제63조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① (생 략)<br>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br>③·④ (생 략) |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 ----------<br>--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br>--------.<br>③·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제64조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7조(수당 등) 시정고문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br>----------<br>----------<br>----------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br>----------<br>----------<br>----------. |

## 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용어의 순화,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을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이선복 주무관(☎2133-6692)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를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안 제11조)
다. 위원장 대행 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민영 (☎ 2133-681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br><신 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br>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 략)<br><신 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 연장,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직무대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민영 주무관(2133-681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인용 조항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지방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현행화
(안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나. 부정수급 벌칙 인용 조문 내용 보완(안 제11조)
다. 별지 서식 시행규칙에 위임(안 제20조, 제21조,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박상웅 (☎2133-6855)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벌칙

제20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종물 :”을 각각 “종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기 :”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요재산 :”을 “중요재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영 제14조”를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로, “별지 제4호서식의”를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32조제2항”을 “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36조의3”으로 한다.

제35조 중 “것 이외”를 “사항 외”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생 략) |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2.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 라.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른 벌칙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생 략) |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현행과 같음) |
|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② ---------- 규칙이 정하는 서식---. |
|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 | ③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야 한다. | |
|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 1. --------- 종물: ---- |
|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 2. ---------- 종물: --- |
| 3. 항공기 : 10년 | 3. 항공기: --- |
|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 4. ---------- 중요재산: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
|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
|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6조의 3----------.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필요한 ----------. |
|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 |
| <신 설> | 1.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 1. (생 략)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 2.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3. 법 제32조제3항 ---------- |
|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항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br>1. ~ 3의2. (생 략)<br>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br>5. ~ 8. (생 략)<br>② (생 략) |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br>1. ~ 3의2. (현행과 같음)<br>4. 법 제36조의3----------<br>5. ~ 8.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5조(운영세칙) ---------- 사항 외---------- 필요한 ----------.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서식을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박상웅** (☎2133-6855)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신설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의견수렴 대상 및 고시 방법 등

다. 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저공해운행지역 운행제한 및 제외대상 자동차

라.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과태료 부과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별표 7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의결)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운행제한 대상 예외 자동차 명확화, 단속 적발 시 사전통지 규정 추가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4조, 제6조)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5. 1.~5. 21.) 결과: 의견있음(반영)

- 의견내용: 운행제한 대상 예외 자동차 명확화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4조, 제6조)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김선배(☎2133-3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운행지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존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
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일시
3.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저공해운행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기간 및 시간
5.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제4조(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으로 사용연료가 경유인 자동차(단, 저공해운행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운행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동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5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속공무원은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4조에 따른 운행 허용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사전통지·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환경6급 김선배(☎2133-3633)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2024.10.22.)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 여건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8조)
나. 부칙에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다.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지연 (☎ 2133-282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을 “이란”으로, “출자·출연하여”를 “출자·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촉진하기 위한”을 “촉진할 수 있는”으로,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여건개선”을 “여건 개선”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광발전”을 “관광 발전”으로, “심사하거나”를 “심사하는 등”으로 한다.

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제3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관광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30이내”를 “30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등과 관련”을 “등에 관하여”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 서울특별시 관광특구 시설요건 세부기준(제8조 관련)

| 시설 구분 | 종류 | 구비기준 |
|---|---|---|
| 1. 공공편익시설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공영주차장 |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br>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br>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만 포함 |
| 2. 관광안내시설 | 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br>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 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
| 3. 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
| 4. 휴양·오락시설 |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수영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
| 5. 접객시설 |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 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
| 6. 상가시설 | 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 | 하나 이상일 것 |

<비고>

위 표의 시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시스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2. (생 략)<br>3.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br>4. ~ 8. (생 략) | 제2조(정의) ----------.<br>1.·2. (현행과 같음)<br>3. ----------이란 ---------- 출자·출연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br>4. ~ 8. (현행과 같음) |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br>② ~ ④ (생 략)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촉진할 수 있는 ---------- 노력하여야 한다.<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6조(관광진흥종합계획) ① (생 략) | 제6조(관광진흥종합계획) ① (현행과 같음) |

| | |
|---|---|
|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6. ---------- 여건 개선--------- |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시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관광 발전---------- ---------- 심사하는 등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8조(관광특구 시설기준)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제8조 (생 략) | 제8조의2 (현행 제8조와 같음) |
|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② (생 략) |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 | ③ ---------- |

| | |
|---|---|
| 리·점검하여야 하며, 관리·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 ------- 다음 연도 -------- ---------- --------.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1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① --------- ---------- ---------- ---------- ---------- ---------- ----------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관광 상품 개발 | 7. 관광상품 --- |
| 8. ~ 14. (생 략) | 8. ~ 14.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③ ---------- ---------- ---------- ---------- ---------- 공유재산 ---------- 30 이내----------. |
| 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 ④ ---------- 공유재산---- |

| | |
|---|---|
|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br>----------<br>----------. |
| 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 ① (생 략) | 제16조의3(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u>등과 관련</u>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br>---------- <u>등에 관하여</u> -----<br>----------. |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지연(02-2133-2827)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노후화된 ‘시민청’을 서울의 미래 비전 홍보, 시민 소통,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개편하고, 명칭을 ‘서울갤러리’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명칭 변경을 조례 제명과 전체 조문에 일괄 반영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제2조 : 시설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반영 / 복수 장소 조항 삭제
- 시민참여·소통·문화체험 공간 → 도시홍보·시민참여·소통·문화체험 공간
⇨ 제8조 및 제14조에서도 서울갤러리 정의와 용어 통일
- 서울시청사 단일 공간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수 위치 전체를 둔 제2항 삭제
※ 기존 시민청은 시청·삼각산 복수 운영

다. 제5조 : 무료이용 대상 조항 현행화(대상자 범위 : 11개 그룹 추가)
- 서울시 문화시설 간의 기준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제정·개정된 관련 조례[1]의 무료 이용 대상 범위를 반영하여 조정

라. 제10조 : 대관료 감면조항 정비
- 운영자문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됨에 따라 대관료 감면 자문 절차 실효성 저하
※ 기존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에서도 대관료 감면 자문 사례 없었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유효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 만료에 따른 정비

마. 제14~16조 : 운영자문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따른 개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비상설 운영 원칙을 반영하여 위원 임기, 부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15조 제1항(위원장 직무 조항)은 제14조제4항으로 통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1)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25. 5. 29. ~ 6. 1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서성열 (☎641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일반인이 서울갤러리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갤러리”란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청사에 설치한 복합문화시설을 말한다.
2. “대관”이란 서울갤러리 내 각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서울갤러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3. 추석
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4조(이용료) ① 서울갤러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19.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20.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22.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이용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대관허가)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경우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따라서 산출한다.
③ 대관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서울갤러리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서울갤러리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 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울갤러리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서울갤러리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갤러리 정책의 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서울갤러리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갤러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홍보, 시민 참여와 소통, 문화체험 등을 위한 전시, 공연, 행사 등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3. 서울갤러리 소관 담당 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서울갤러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⑦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대관, 이용료 및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서울갤러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서울갤러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갤러리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갤러리 조성에 따른 종합 운영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상기간 : 2026년 1월(서울갤러리 개관 예정)부터 5년

○ 지출내용

–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

| 구분 | | 주요 기능 | 운영방식 | 주요 지출내용 |
|---|---|---|---|---|
| 서울갤러리 운영 | 전체 시설 운영 | 도시홍보 · 시민소통 · 문화체험 위한 복합문화시설 | 용역 | 문화 예술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시설 · 안전 관리 |
| | 서울갤러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 홈페이지 보안 등 관리 | 용역 | 유지관리 비용 |
| | 서울책방 운영 | 시정간행물 전시 및 판매 | 용역 | 책방 운영 비용 |

– 타 부서 소관 사항

| 공간명 | 주요 기능 | 운영부서 | 운영방식 | 주요 지출내용 |
|---|---|---|---|---|
| 미래서울도시관, 태평홀 | 서울 미래 비전 전시 | 도시공간본부 | 용역 | 전시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시설 관리 |
| 청년활력소 | 청년 취업 지원 | 경제실 | 직영 | 구인 · 구직 프로그램 기획 · 운영, 경비 |
| |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 복지실 | 공공위탁 (서울시복지재단) | 상담 프로그램 기획 · 운영, 운영 |
| 군기시유적전시관 | 군기시 유적 전시 | 서울역사박물관 | 직영 | 전시용품 유지관리, 보험가입 |

○ 수입내용 :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

– 대관료 : 서울갤러리 내 공간 대관 수입(팝업전시장, 공연장, 워크숍룸, 동그라미방 등)

– 임대료 : 서울갤러리 내 서울브랜드 굿즈샵 운영기관인 서울관광재단에 부과

– 무인카페 수입 : 서울갤러리 내 로봇카페 기계 임차 운영에 따른 수입

– 시정간행물 판매 수입 : 전체 시정간행물 판매 수입 중 서울책방 통한 판매 수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지출 | ○서울갤러리 운영 | 1,993,279 | 2,032,388 | 2,093,269 | 2,155,977 | 2,220,567 | 10,495,480 |
| | ○미래서울도시관, 태평홀 | 1,450,000 | 1,493,500 | 1,538,305 | 1,584,454 | 1,631,988 | 7,698,247 |
| | ○청년활력소 운영 | 699,428 | 699,399 | 720,381 | 741,992 | 764,252 | 3,625,452 |
| | ○군기시유적전시관 운영 | 10,600 | 10,918 | 11,246 | 11,583 | 11,930 | 56,277 |
| | 소계(a) | 4,153,307 | 4,236,205 | 4,363,201 | 4,494,006 | 4,628,737 | 21,875,456 |
| 수입 | ○서울브랜드굿즈샵 임대 수입 | 27,909 | 28,746 | 29,609 | 30,497 | 31,412 | 148,173 |
| | ○서울갤러리 대관 수입 | 38,309 | 38,911 | 40,078 | 41,280 | 42,518 | 201,096 |
| | ○무인카페 수입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300,000 |
| | ○시정간행물 판매 수입 | 38,458 | 38,458 | 38,458 | 38,458 | 38,458 | 192,290 |
| | 소계(b) | 164,676 | 166,115 | 168,145 | 170,235 | 172,388 | 841,559 |
| □총 비용(a-b) | | 3,988,631 | 4,070,089 | 4,195,056 | 4,323,772 | 4,456,349 | 21,033,897 |

※ 지출사항 : 2027년도부터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 3% 반영
(예외 : 청년활력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서울갤러리 개관식 행사 등)

※ 수입사항 : 임대료 및 대관료는 2027년도부터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4,153,307 | 4,236,205 | 4,363,201 | 4,494,006 | 4,628,737 | 21,875,456 |
| | 세외수입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구분 \ 연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민간 | | | | | | |
| 기타 | | | | | | |
| 합계 | 4,153,307 | 4,236,205 | 4,363,201 | 4,494,006 | 4,628,737 | 21,875,456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서성열(2133-641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 | 구 분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총 비용(A-B) | | | | 3,988,631 | 4,070,089 | 4,195,056 | 4,323,772 | 4,456,349 | 21,033,897 |
| 지출(A) | 계 | | | 4,153,307 | 4,236,205 | 4,363,201 | 4,494,006 | 4,628,737 | 21,875,456 |
| | 서울갤러리 운영 (홍보기획관) | 소계 | | 1,993,279 | 2,032,388 | 2,093,269 | 2,155,977 | 2,220,567 | 10,495,480 |
| | | 개관식, 위원회 운영 등 | | 2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5,000 |
| | | 서울갤러리 운영 | 소계 | 1,769,950 | 1,823,049 | 1,877,740 | 1,934,072 | 1,992,095 | 9,396,906 |
| | | | 인건비 | 363,377 | 374,279 | 385,507 | 397,072 | 408,984 | 1,929,219 |
| | | | 운영비 | 858,973 | 884,742 | 911,284 | 938,623 | 966,782 | 4,560,404 |
| | | | 사업비 | 547,600 | 564,028 | 580,949 | 598,377 | 616,329 | 2,907,283 |
| | | 서울갤러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 | 70,000 | 72,100 | 74,263 | 76,491 | 78,786 | 371,640 |
| | | 서울책방 운영 | | 130,329 | 134,239 | 138,266 | 142,414 | 146,686 | 691,934 |
| | 미래서울도시관·태평홀 운영 (도시공간본부) | 소계 | | 1,450,000 | 1,493,500 | 1,538,305 | 1,584,454 | 1,631,988 | 7,698,247 |
| | | 인건비 | | 400,000 | 412,000 | 424,360 | 437,091 | 450,204 | 2,123,654 |
| | | 운영비 | | 650,000 | 669,500 | 689,585 | 710,273 | 731,581 | 3,450,938 |
| | | 사업비 | | 400,000 | 412,000 | 424,360 | 437,091 | 450,204 | 2,123,654 |
| | 청년활력소 운영 | 소계 | | 699,428 | 699,399 | 720,381 | 741,992 | 764,252 | 3,625,452 |
| | | 취업 지원(경제실) | | 249,428 | 235,899 | 242,976 | 250,265 | 257,773 | 1,236,341 |
| | | 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 (복지실) | | 450,000 | 463,500 | 477,405 | 491,727 | 506,479 | 2,389,111 |
| | 군기시유적전시관 운영 (서울역사박물관) | | | 10,600 | 10,918 | 11,246 | 11,583 | 11,930 | 56,277 |
| 수입(B) | 계 | | | 164,676 | 166,115 | 168,145 | 170,235 | 172,388 | 841,559 |
| | 서울브랜드 굿즈샵 임대수입 | 소계 | | 27,909 | 28,746 | 29,609 | 30,497 | 31,412 | 148,173 |
| | | 임대료 | | 21,605 | 22,253 | 22,921 | 23,608 | 24,317 | 114,704 |
| | | 공공요금 | | 6,304 | 6,493 | 6,688 | 6,889 | 7,095 | 33,469 |

| | 구 분 | 구분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합계 |
|---|---|---|---|---|---|---|---|---|
| | 서울갤러리 대관 수입 | | 38,309 | 38,911 | 40,078 | 41,280 | 42,518 | 201,096 |
| | 무인카페 수입 |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60,000 | 300,000 |
| | 시정간행물 판매 수입(서울책방) | | 38,458 | 38,458 | 38,458 | 38,458 | 38,458 | 192,290 |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기 치료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 제5호)
나.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7. 17. ~ 7.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삼희 (02-2133-750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공공보건의료”라 함은”을 “ “공공보건의료”란”으로, “ ‘시’ ”를 “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을 “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안전망병원”이라 함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시장이”를 “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5. “의료비 융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융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뜻은 ----------. |
|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1. “공공보건의료”란 -------- ---------- ---------- ----- “시”---------- ---------- ---------- ---------- ----------. |
|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 ----------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 3.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 ----------.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 | 나. ---------- ---------- ---------- 공공의료기 |

| | |
|---|---|
| 관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하는 의료기관 | 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
| 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 다.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
| <신 설> |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 <신 설> | 5. “의료비 융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8조(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

| | |
|---|---|
| |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융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br>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br>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br>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br>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br>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br>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 제8조 ~ 제10조 (생 략) |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 필요한 ----------. |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료비 융자이자 지원 사업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5년 소요비용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
| 지출 | 이차보전금, 배상금등 | 12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a) | 12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00,000 |
| 수입 | | - | - | - | - | - | - |
| | 소 계(b) | - | - | - | - | - | - |
| **총 비용(a-b)** | | **12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0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
| 국 비 | | - | - |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12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00,0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 - | - |
| 민 간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합 계** | | **12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00,000** |

5. 덧붙이는 의견 : 1차년도 시범사업 기준 작성, 본사업 추진 시 비용추계 재산정
6. 작성자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삼희(2133-7509)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6) | 2차년도 (2027) | 3차년도 (2028) | 4차년도 (2029) | 5차년도 (2030) | 합 계 |
|---|---|---|---|---|---|---|---|
| 지출 | 이차보전금, 배상금등 | 12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00,000 |
| | **합 계** | **12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170,000** | **800,000** |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상위법에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직장,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상 '서울 소재 대학(원)생' 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9조)
나. 그 밖의 문구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김진아(☎2133-756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시” 를 “시”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2. 시에 소재한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자영업자 포함)
3. 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

제11조 중 “신체활동장려사업” 을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 으로, “전문가는” 을 “전문가에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뜻은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② (생 략) | 제5조(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③ ---------- ---------- 시 ---------- ----------. |
| 제9조(비용의 지원) ①·② (생략) | 제9조(비용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 |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
| <신 설> |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
| <신 설> | 2. 시에 소재한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자영업자 포함) |
| <신 설> | 3. 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11조(수당 등) 신체활동장려사 |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신체활동 |

| | |
|---|---|
| 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장려사업 ---------- 전문가에게 ----------. |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서울 소재 대학(원)생을 '신체활동 장려사업' 참여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조례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추진 중인 사업의 참여 대상자와 동일하며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김진아(☎ 2133-7563)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광역치매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
   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취소 시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 ·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보며,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안 제8조)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9조)
   다. 그 밖의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선영 (☎ 2133-758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매관리법」 제3조”를 “「치매관리법」 제16조의2”로,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매센터”를 “광역치매센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광역치매센터의 장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 ---------- -------- 광역치매센터----- ---------- ----------. |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치매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② 광역치매센터---------- ---------- ----------. |
|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 ③ (생 략) | 제5조(수탁기관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 ④ ---------- ----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 - ---------- ---------- ----------. |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 -------- 광역치매센터-----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 제8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 |

| | |
|---|---|
| | 음) |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 재산 ----------. |
| 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삭 제> |
| 제9조(운영비 지원 등) ① (생략) | 제9조(운영비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 2일(1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광역치매센터의 장의 근무방식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선영 (☎ 2133-7589)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소멸로 인해 표현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삭제, 연관 조문 현행화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20조제3항제2호)
다. 법규 관계를 고려한 인용 방식 간소화(안 제2조, 제4조, 제6~7조)
라. 위원의 해촉 조문 현행화 (안 제23조)
마.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17조, 제28조, 제30조)
바.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안 제2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일부반영)
- 의견내용: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 공무원 의제 및 이의제기 규정 신설
- 반영사항: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유지(안 제22조제1항), 이외에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미반영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반영)
- 의견내용: 위원회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 반영사항: 성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하도록 조문 수정(안 제20조제1항)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4. 8. 8. ~ 8. 28.)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진숙 (☎2133-768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를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종합계획 “ ”을 “ “종합계획” ”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를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라”로, “ “지역계획 “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를 “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7조제3항에 따라”를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로,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12조”를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또는 제12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를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24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를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리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같은 항 제1호 중 “종사자,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을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을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를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의2”를 “법 제2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조례 제6761호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시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하여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환경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1.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
|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 | |

유해 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

| | |
|---|---|
| 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 |
| 7.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
| 8.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환경보건법」, 「화학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하여 다른 |

| | |
|---|---|
| 물질관리법」 및 그 밖의 환경보건과 화학물질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생략)<br>③ 사업자는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의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와 자치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 |
|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서울특 | 제7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종합계획"---------- 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법 제6조의2에 |

| | |
|---|---|
| 별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으로 한다)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 ----------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삭 제> |
|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 |
|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 |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 ⑨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⑨ ----- 시의 환경계획 수립 시 ----------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 |
|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생 략) | 제11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및 결과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 ⑤ ---- 제1항---------- |

| | |
|---|---|
| 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 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 |
| ⑦ 시장이 실시하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 ⑦ ---------- 제1항----------. |
| ⑧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 제1항----------.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⑨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이 제1항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 제1항---------- |
| 제12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시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원을 처리한다. | <삭 제> |
| 1.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 | |

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3.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4. 시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청원

| | |
|---|---|
| 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br>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br>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 |
|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 법 제15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br>②·③ (생 략)<br>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환경부장관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4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 법 제15조제2항----------.<br>②·③ (현행과 같음)<br><삭 제> |

| | |
|---|---|
|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생 략) |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제2항 및 법 24조에 따라 어린이 용품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 ③ ---------- 법 제24조---------- |
|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시장은 제24조에서 정한 정보, 그 외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및 시민 교육·홍보 등을 위해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① ---- 제28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건정책의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제19조(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
| 1. 제7조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 1. ----- 계획---------- |

| | |
|---|---|
| 변경에 관한 사항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제12조 청원에 관한 사항 | <삭 제> |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br>----------<br>----------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br>---------- 위촉한다. |
|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 1. ----------<br>----------<br>----------<br>----------<br>----------<br>-------- 종사자 또는 법률 전문가 |
|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환경기획관 | 2. ---------- 시 시민건강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기후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 ⑤ ----------<br>---------- |

| | |
|---|---|
|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 | 간사 1명---------- ---------- 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맡는다. |
|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
|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
| 제24조(회의) ①·② (생 략) | 제24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26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 제28조(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①---------- |

| | |
|---|---|
| 민에게 공개한다. | ----------. |
| 1. 제7조에 따른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에 대한 정보 | 1. --------- 계획---------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제12조의 어린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3. 제16조---------- ---------- -- |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단체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 ---------- ---------- ----------. |
| 1.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법 제24조의2에 의한 자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 | 1. ---------- ---------- -- 법 제24조의3----------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련 환경·안전교육 등을 위해 제25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 ③ ---------- ---------- --- 제29조제3항---------- ---------- |

| | |
|---|---|
|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조례 제6761호 | <삭 제> |
| 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 |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 변동사항 반영(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삭제), 시 환경보건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4. 작성자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이진숙 (☎ 2133-7680)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체계상 조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을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나.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에 관한 일부 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11조)
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범위 확대(안 제6조)
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여 일부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제7조의2, 제8조)
마. 그 밖의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박태경 (☎2133-470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2.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융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을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로, “교육·활동지원”을 “교육·활동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시민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융자사업”을 “융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을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으로 한다.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7의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제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기금관리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포함)및”을 “포함) 및”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실·본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 과장
3. 기금출납원: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

④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를 “소관부서”로, “되고”를 “맡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을 “위원은”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를 “구분하며,”로,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를 “소관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하며”를 “하며”로, “3명으로”를 “3명 이내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 중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를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우수판매업소와 관련된 시설 개수·보수”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중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 및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

소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중 “업종별·용도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를 “업종별·용도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을 “(융자조건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 2.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 · 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 <삭 제> |
| 5. (생 략) | 4. (현행 제5호와 같음) |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 |
|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 1. ---------- 융자 사업 |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 · 홍 | 2. ----------(소비자단체의 교육 · 홍보 |

| | |
|---|---|
| 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 지원을 포함한다)과 ---------- 교육·활동 지원 |
| 3.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3.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보상금(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7.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7. ---------- 융자 사업 |
| <신 설> | 7의2.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
|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 | 8. ----------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 |

| | |
|---|---|
| 1조에서 정하는 사업 | ----------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삭 제 | |
|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실·본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 ---------- ---------- ---------- ---------- 기금관리공무원---------- ---------- 포함) 및 ---------- ---------- ---------- ---------- ---------- 기금관리공무원---------- ----------. |
| <신 설> | 1. 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실·본부·국장 |
| <신 설> | 2.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 과 |

| | |
|---|---|
| | 장 |
| <신 설> | 3. 기금출납원: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 |
|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④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생략)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소관부서---------- 맡고 ----------. |
| ④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 ④ 위원은 ---------- 구분하며, ---------- 소관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⑤ ---------- |

| | |
|---|---|
|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 이내, 제3호의 위원은 2명 이내로 한하며 제4호의 위원은 3명으로 한다. | ----------. ---------- ---------- ---------- 하며 ---------- ---- 3명 이내로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3. ---------- 의원 |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 ---------- ---. ---------- ---------- --------. |
| <신 설> |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
|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 | |

| | |
|---|---|
| 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br>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br>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br>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
| <신 설> | 제7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br>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8조(회의) ① (생 략) |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

| | |
|---|---|
|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의2(간사) ---------- ---------- ----------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
| 제11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의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1조(융자대상) ① --------- ---------- ---------- ----------. |
| 1.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1. ---------- ---------- -- 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3.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관련된 시설 개수·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 3. ----------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 중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 |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 | |
|---|---|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1조의2(융자대상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 및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br>②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

| | |
|---|---|
| | 설치업소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
| 제13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용도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융자한도) ----------<br>----------<br>----------<br>--- 업종별·용도별 --------<br>----------<br>----------. |
|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② (생 략) | 제14조(융자조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없음

##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박태경 (02-2133-4707)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하수도사용료를 연차별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 재정 여건을 개선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한강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5년간 연평균 9.5%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별표 2)
나. 가정용 누진제 폐지, 일반용 누진제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안 별표 2)
다. 유출지하수는 현재 가정용 최저 요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정용과 연계하여 개편(안 별표 2)
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6. 12. ~ 7. 2.)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 (☎ 2133-385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영‘ 이라 한다.)”를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후단 중 “납부토록”을 “납부하도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의2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82조”를 “「지방재정법」 제82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로, “경우 :”를 “경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 구분 / 업종 | 사용구분(㎥) | 연도별 단가(원/㎥) | | | | |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부터 |
| 가정용 | ㎥당 | 480 | 560 | 630 | 700 | 770 |
| 욕탕용 | 500이하 | 520 | 590 | 660 | 730 | 800 |
| | 500초과~2,000이하 | 630 | 710 | 790 | 870 | 950 |
| | 2,000초과 | 720 | 810 | 890 | 970 | 1,050 |
| 일반용 | 30이하 | 580 | 660 | 740 | 820 | 900 |
| | 30초과~100이하 | 1,550 | 1,690 | 1,830 | 1,970 | 2,100 |
| | 100초과~1,000이하 | 2,100 | 2,200 | 2,300 | 2,400 | 2,500 |
| | 1000초과 | 2,200 | 2,300 | 2,400 | 2,500 | 2,600 |
| 유출지하수 | ㎥당 | 480 | 560 | 630 | 700 | 770 |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 업 종 | 구 분 내 용 |
|---|---|
| 가정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가정용 업종 |
| 욕탕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욕탕용 업종 |
| 일반용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별표 1에 따른 일반용 업종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뜻은 ----------.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 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 · 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 3. ---------- ---------- 한다) - ---------- ---------- ---------- ---------- ---------- ---------- ---------- ---------- ----------. |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 12. "타행위"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2. ---------- ---------- ---------- ---------- ----------.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

| | |
|---|---|
| 수행 | 수행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수행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 라.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의 수행 |
| 마. (생 략) | 마. (현행과 같음) |
|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 ---------- -- 한다)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생략) | 제23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하수도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 ④ ---------- ---------- ---------- ---------- 「서울특별시 |

| | |
|---|---|
| 수도 조례」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도 조례」 제26조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② (생 략) | 제2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 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해당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점용허가시에 당해년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 ③ ---------- --- 해당 연도 ----------.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
|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1. ---------- "영"이라 한다) ----------. |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생 략) | 제3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 | ④ ---------- |

| | |
|---|---|
| 하되, 제29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 다만 제29조를 준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산액을 준공 전 분할 납부토록 하되 준공 시에 정산 징수(납부)한다. | ----------<br>----------<br>----------. ----------<br>----------<br>---------- 납부하도록 -<br>----------<br>---. |
|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 제3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br>----------<br>----------<br>----------<br>----------<br>----------<br>----------.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강남구는 제외한다.)의 구청장에 대하여는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3. ----------<br>----------<br>------. ----------<br>----------<br>----------<br>----------<br>제외한다)----------<br>----------<br>------.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
| 제33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33조의2(소멸시효) ----------<br>----------<br>----------<br>----------. ----------<br>----------<br>---------- 「지방재정법」 제82조----------<br>---. |
|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 제34조(감면) ① ----------<br>----------<br>----------<br>----. ----------<br>----------<br>----------<br>----------<br>----------<br>-----.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br>----------<br>----------<br>------ |
|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br>---------- |

| | |
|---|---|
| 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 ---------- |
| 9.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9. ---------- 경우 : ---------- |
| 10.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 | 10. ---------- 경우 : ---------- |
| 11. · 12. (생 략) | 11. · 12. (현행과 같음) |
|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13. ---------- 경우: ---------- |
| 14.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 1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 -- 경우: ---------- |
| 15. (생 략) | 15.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 구분 / 업종 | 2022년부터 | |
|---|---|---|
| | 사용구분(㎥) | 단가(원/㎥) |
| 가정용 | 30이하 | 400 |
| | 30초과~50이하 | 930 |
| | 50초과 | 1,420 |
| 욕탕용 | 500이하 | 440 |
| | 500초과~2,000이하 | 550 |
| | 2,000초과 | 630 |
| 일반용 | 300이하 | 500 |
| | 30초과~50이하 | 1,000 |
| | 50초과~100이하 | 1,520 |
| | 100초과~200이하 | 1,830 |
| | 200초과~1,000이하 | 1,920 |
| | 1,000초과 | 2,030 |
| 유출지하수 | ㎥당 | 400 |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2]

하수도사용료 요율 및 업종구분 (제23조 관련)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 구분 / 업종 | 사용구분(㎥) | 연도별 단가(원/㎥) | | | | |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부터 |
| 가정용 | ㎥당 | 480 | 560 | 630 | 700 | 770 |
| 욕탕용 | 500이하 | 520 | 590 | 660 | 730 | 800 |
| | 500초과~2,000이하 | 630 | 710 | 790 | 870 | 950 |
| | 2,000초과 | 720 | 810 | 890 | 970 | 1,050 |
| 일반용 | 300이하 | 580 | 660 | 740 | 820 | 900 |
| | 300초과~1000이하 | 1,550 | 1,690 | 1,830 | 1,970 | 2,100 |
| | 100초과~1,000이하 | 2,100 | 2,200 | 2,300 | 2,400 | 2,500 |
| | 1000초과 | 2,200 | 2,300 | 2,400 | 2,500 | 2,600 |
| 유출지하수 | ㎥당 | 480 | 560 | 630 | 700 | 770 |

※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업종 구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없음(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2026~2030년 적용 하수도사용료 인상

3. 비용추계의 결과(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합계 |
|---|---|---|---|---|---|---|---|
| 세입 | 하수도사용료 | 137,716,348 | 205,945,136 | 266,003,813 | 325,385,019 | 383,589,066 | 1,318,639,382 |
| | | - | - | - | - | - | |
| | 소계(a) | 137,716,348 | 205,945,136 | 266,003,813 | 325,385,019 | 383,589,066 | 1,318,639,382 |
| 세출 | 시설비 | 137,716,348 | 205,945,136 | 266,003,813 | 325,385,019 | 383,589,066 | 1,318,639,382 |
| | | - | - | - | - | - | |
| | 소계(b) | 137,716,348 | 205,945,136 | 266,003,813 | 325,385,019 | 383,589,066 | 1,318,639,382 |
| □총 비용(a-b) | | - | - | - |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 | - | - | - | - | - |
| | 세외수입 | 137,716,348 | 205,945,136 | 266,003,813 | 325,385,019 | 383,589,066 | 1,318,639,382 |
| | 지방채 등 | - | - | - | - | - | - |
| 민간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합계 | | 137,716,348 | 205,945,136 | 266,003,813 | 325,385,019 | 383,589,066 | 1,318,639,382 |

5. 덧붙이는 의견: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액 추계임

6. 작성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 (☎ 2133-3854)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 1차년도 (2026년) | 2차년도 (2027년) | 3차년도 (2028년) | 4차년도 (2029년) | 5차년도 (2030년) | 합계 |
|---|---|---|---|---|---|---|
| 하수도사용료(인상 전) | 730,820,659 | 752,745,279 | 775,327,637 | 798,587,466 | 822,545,090 | 3,880,026,131 |
| 하수도사용료(인상 후) | 868,537,007 | 958,690,415 | 1,041,331,450 | 1,123,972,485 | 1,206,134,156 | 5,198,665,513 |
| 수입 증가액(인상 후) | 137,716,348 | 205,945,136 | 266,003,813 | 325,385,019 | 383,589,066 | 1,318,639,382 |

### 2.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인상전 하수도사용료 수입)

(단위 : 천원)

| 회계명 | 실국명 | 부서명 | 장 | | 관 | | 항 | | 세목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 | | | | | | | | | | | | | | | 전년대비 3% 증 | 전년대비 3% 증 |
|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물순환 안전국 | 물재생 계획과 | 200 | 세외 수입 | 210 | 경상적 세외 수입 | 212 | 사용료 수입 | 21203 | 하수도 사용료 | 688,868,564 | 709,534,621 | 730,820,659 | 752,745,279 | 775,327,637 | 798,587,466 | 822,545,090 |

### 3. 연도별 조정액 추계(인상후 하수도사용료 수입)

(단위 : 원)

| 업종 | 구간(㎥) | 2025년조정량 | | | 요율 통합 | | 2026년 | | 2027년 | | 2028년 | | 2029년 | | 2030년 | |
|---|---|---|---|---|---|---|---|---|---|---|---|---|---|---|---|---|
| | | 조정량(㎥) | 요율 | 조정액 | 요율 | 조정액 | 요율 | 조정액 | 요율 | 조정액 | 요율 | 조정액 | 요율 | 조정액 | 요율 | 조정액 |
| 가정용 | 30이하 | 717,017,230 | 400 | 286,806,891,966 | 410 | 293,977,064,266 | 480 | 344,168,270,360 | 560 | 401,529,648,753 | 630 | 451,720,854,847 | 700 | 501,912,060,941 | 770 | 552,103,267,035 |
| | 30초과~50이하 | 6,542,429 | 930 | 6,084,458,719 | 410 | 2,682,395,779 | 480 | 3,140,365,790 | 560 | 3,663,760,089 | 630 | 4,121,730,100 | 700 | 4,579,700,111 | 770 | 5,037,670,122 |
| | 50초과 | 3,846,394 | 1,420 | 5,461,880,051 | 410 | 1,577,021,705 | 480 | 1,846,269,313 | 560 | 2,153,980,865 | 630 | 2,423,228,473 | 700 | 2,692,476,081 | 770 | 2,961,723,689 |
| 일반용 | 30이하 | 50,486,087 | 500 | 25,243,043,291 | 500 | 25,243,043,291 | 580 | 29,281,930,217 | 660 | 33,320,817,144 | 740 | 37,359,704,071 | 820 | 41,398,590,997 | 900 | 45,437,477,924 |
| | 30초과~50이하 | 18,738,227 | 1,000 | 18,738,226,948 | 1,320 | 24,734,459,571 | 1,550 | 29,044,251,769 | 1,690 | 31,667,603,542 | 1,830 | 34,290,955,314 | 1,970 | 36,914,307,087 | 2,100 | 39,350,276,590 |
| | 50초과~100이하 | 29,198,195 | 1,520 | 44,381,256,893 | 1,320 | 38,541,617,828 | 1,550 | 45,257,202,753 | 1,690 | 49,344,950,098 | 1,830 | 53,432,697,443 | 1,970 | 57,520,444,789 | 2,100 | 61,316,210,181 |
| | 100초과~200이하 | 29,219,470 | 1,830 | 53,471,629,866 | 1,890 | 55,224,798,058 | 2,100 | 61,360,886,731 | 2,200 | 64,282,833,718 | 2,300 | 67,204,780,705 | 2,400 | 70,126,727,693 | 2,500 | 73,048,674,680 |
| | 200초과~1,000이하 | 62,994,295 | 1,920 | 120,949,047,027 | 1,890 | 119,059,218,167 | 2,100 | 132,288,020,186 | 2,200 | 138,587,449,719 | 2,300 | 144,886,879,251 | 2,400 | 151,186,308,784 | 2,500 | 157,485,738,316 |
| | 1,000초과 | 92,721,183 | 2,030 | 188,224,001,031 | 2,030 | 188,224,001,031 | 2,200 | 203,986,602,102 | 2,300 | 213,258,720,380 | 2,400 | 222,530,838,657 | 2,500 | 231,802,956,934 | 2,600 | 241,075,075,212 |
| 욕탕용 | 500이하 | 4,665,734 | 440 | 2,052,922,861 | 440 | 2,052,922,861 | 520 | 2,426,181,563 | 590 | 2,752,782,928 | 660 | 3,079,384,292 | 730 | 3,405,985,656 | 800 | 3,732,587,021 |
| | 500초과~2,000이하 | 5,679,210 | 550 | 3,123,565,722 | 550 | 3,123,565,722 | 630 | 3,577,902,554 | 710 | 4,032,239,387 | 790 | 4,486,576,219 | 870 | 4,940,913,051 | 950 | 5,395,249,883 |
| | 2,000초과 | 3,000,522 | 630 | 1,890,328,620 | 630 | 1,890,328,620 | 720 | 2,160,375,566 | 810 | 2,430,422,511 | 890 | 2,670,464,241 | 970 | 2,910,505,970 | 1,050 | 3,150,547,700 |
| 유출 지하수 | ㎥당 | 20,830,725 | 400 | 8,332,290,131 | 400 | 8,332,290,131 | 480 | 9,998,748,157 | 560 | 11,665,206,183 | 630 | 13,123,356,956 | 700 | 14,581,507,729 | 770 | 16,039,658,502 |
| 합 계 | | 1,044,939,701 | 732 | 764,759,543,125 | 732 | 764,662,727,030 | 831 | 868,537,007,062 | 917 | 958,690,415,316 | 997 | 1,041,331,450,570 | 1,076 | 1,123,972,485,825 | 1,154 | 1,206,134,156,856 |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하수도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운용 중인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동 기금의 전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지급 규정에 대해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3조)
   나.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 근거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위원회 직무대행 규정 신설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9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2133 - 385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금의 전출)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0년 12월 31일----------. ---------- |
| <신 설> | 제6조의2(기금의 전출)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br>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한 용역 ·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br>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br>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

| | |
|---|---|
| 위원장에게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br>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 략)<br><신 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5조(수당 등)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윤석진 주무관(02-2133-3854)

#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다.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8. 4. ~ 8. 6.) 결과: 의견 없음
(2) 신 · 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작성자 : 주택실 주택정책과 전세용 (☎ 2133-702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
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배당금
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해 납부한

현금
5. 기금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 사업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 사업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사업
4.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민 주거복지 향상 및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및 예탁금 등 기금 운용에 따른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주택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주택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주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 운용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서울특별시 주택실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조성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시장방침 제62호, ’25.7.)’에 의거 재원 조성 및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소요비용 추계(향후 5년, ’26년~’30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지출 | ○주택공급 활성화 등 사업 추진 | 219,993,000 | 219,993,000 | 219,993,000 | 219,993,000 | 219,993,000 | 1,099,965,000 |
| | ○기본경비 | 7,000 | 7,000 | 7,000 | 7,000 | 7,000 | 35,000 |
| | 소계(a)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1,100,000,000 |
| 수입 | ○일반회계전입금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500,000,000 |
| |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70,000,000 | 350,000,000 |
| | ○SH공사이익배당금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250,000,000 |
| | 소계(b)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1,100,000,000 |
| □총 비용(a-b) | | - | - | - | - | - | - |

※ 융자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은 재원·사업 규모, 추진시기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여 추계 제외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 시비(지방세수입 등)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1,100,000,000 |
| 민간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합계**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220,000,000** | **1,100,000,000** |

※ 국비는 사업내용 및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여 추계 제외

5. 덧붙이는 의견 :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순증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음

6. 작성자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과 전세용 주무관(2133-7020)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정비사업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연 약 219,993,000천원 규모 추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등 기금 운용에 따른 기본경비 지출액 연 7,000천원 규모 추계(위원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본경비 상당액)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의 사용 ·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시설의 이용 및 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5조)
다. 관리 · 운영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가결)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 사용료가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추가
– 반영사항 : 반영완료(제9조 5항에 1호, 2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5. 8. ~ 5. 28.) 결과: 의견없음
(2)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박경호 (☎2133-042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善用)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77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체육 및 조경시설, 주차장, 종합안내소, 화장실 등 해당 구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부속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사용”이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전시, 공연, 행사,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에 부속된 시설물 중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체육시설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 제2장 시설의 사용 등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사용 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 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4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사용일이 같은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③ 시장은 광장의 안전 관리, 사용 독점 방지, 의무 불이행 시 조치 등을 위해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광장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 사용허가 통지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광장 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광장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4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2의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2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0일전까지 취소 시 : 전액 반환
2. 5일전까지 취소 시 : 10분의 9
3. 1일전까지 취소 시 : 10분의 7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제3장 시설의 이용

제13조(이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의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의 그 유족 또는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9.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
11. 65세 이상 어르신

제14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는 이용 시작일 전 이용자의 이용취소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0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2. 5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9
3. 1일전까지 취소 시: 10분의 7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5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규칙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료를 체납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4장 운영의 위탁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사용, 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관리·운영규정의 작성 등) ① 수탁기관은 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사용허가신청서

| | | | | |
|---|---|---|---|---|
| 행 사 명 칭 | | | | |
| 사 용 목 적 | | | |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 ~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간 분) | | | |
| 사 용 인 원 | | 사용면적 | ㎡ | |
| 행 사 내 용 | | | | |
| 신 청 자 | 주 소 | | 전화번호<br>(핸드폰)<br>FAX | ( ) |
| | 성 명<br>(단 체 명) | | | |
| 신청단체의 대표자 | 주 소 | | 전화번호<br>(핸드폰) | ( ) |
| | 성 명<br>(단 체 명) | | |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표 1]

## 광장사용료 기준

(제9조 관련)

| 구 분 | 단 위 | 금 액(원) | 비 고 |
|---|---|---|---|
| 사 용 료 | ㎡/시간 | 10 ~ 20 | |
| 기 타 | 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br>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br>3. 야간사용료(18:00시~익일 06:00시)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br>4. 신청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br>※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 | |

[별표 2]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기준

(제9조제4항 관련)

| 시 설 | 금 액 (시간당) | 비 고 |
|---|---|---|
| 다목적 코트 | 10,000원 ~ 20,000원 | |
| 배드민턴 코트 | 5,000원 ~ 10,000원 | |
| 탁구대(1면) | 5,000원 ~ 10,000원 | |
| 피트니스 | 20,000원 ~ 40,000원 | |
| GX 룸 | 20,000원 ~ 40,000원 | |
| 기 타 | 1. 사용료에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도구의 대여도 포함한다.<br>2. 위 사용료는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한다.<br>3.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 · 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 |

[별표 3]

## 광장이용료 기준

(제13조 관련)

1. 체육시설 및 조경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 시 설 | 종 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 고 |
|---|---|---|---|---|
| 공 통 |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 1인 1회당 | 20,000원 이하 | 재료비 포함 |
| | 조경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 | | |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문정 스포츠든 광장은 문정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이후 서울시(도시활력담당관)로 기부채납될 예정임.

○ 광장의 공공성 유지와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 중이며

○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6조에 광장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세출이 증가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행기간 : 비용은 조례 공포·시행 예정인 2025년 9월 이후 발생
(1차년도 : 2026년도)

○ 원가계산을 통하여 광장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비용, 체육 및 정원시설을 활용한 시민 참여 운동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노무비와 재료비 등이 지출로 산출함.

○ 수입으로는 프로그램의 참가비용과 체육시설의 대관비가 문정역 스포츠 가든 광장의 주 수입으로 산출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지출 | ○재료비 | 26,374 | 26,817 | 27,268 | 27,726 | 28,192 | 136,377 |
| | ○노무비 | 842,812 | 856,971 | 871,368 | 886,007 | 900,892 | 4,358,050 |
| | ○경 비 | 257,398 | 261,722 | 266,119 | 270,590 | 275,136 | 1,330,965 |
| | ○일반관리비 | 101,392 | 103,096 | 104,828 | 106,589 | 108,379 | 524,284 |
| | ○이 윤 | 120,160 | 122,179 | 124,231 | 126,318 | 128,440 | 621,328 |
| | 소계(a) | 1,348,136 | 1,370,785 | 1,393,814 | 1,417,230 | 1,441,039 | 6,971,004 |
| 수입 | ○체육 프로그램 | 248,639 | 259,814 | 271,490 | 283,692 | 296,442 | 1,360,077 |
| | ○문화 프로그램 | 10,006 | 10,456 | 10,926 | 11,417 | 11,930 | 54,735 |
| | ○대 관 | 137,521 | 143,702 | 150,160 | 156,909 | 163,961 | 752,253 |
| | 소계(b) | 396,166 | 413,971 | 432,576 | 452,018 | 472,333 | 2,167,064 |
| □총 비용(a-b) | | 951,972 | 956,815 | 961,239 | 965,214 | 968,708 | 4,803,948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951,972 | 956,815 | 961,239 | 965,214 | 968,708 | 4,803,948 |
| | 세외수입 | 396,166 | 413,971 | 432,576 | 452,018 | 472,333 | 2,167,064 |
| | 지방채 등 | | | | | | |
| 민간 | | | | | | | |
| 기타 | | | | | | | |
| 합계 | | 1,348,136 | 1,370,785 | 1,393,814 | 1,417,230 | 1,441,039 | 6,971,004 |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박경호(02-2133-0421)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재료비 : 26,375천원

○ 청소관련 재료비 : 13,345천원

- 종량제봉투(75L) : 300개 * 1,880원 * 12개월 = 6,768,000원
- 화장지(300~500m, 16개입) : 1개 * 65,900 * 12개월 = 790,800원
- 물비누(3.75L, 6개입) : 0.33 * 68,942원 * 12개월 = 273,010원
- 기타 청소 용품 : 1식 459,480원 * 12개월 = 5,513,760원

○ 정원 활용 문화프로그램 재료비 : 13,029천원

- 액티브 메도우 Ⅰ : 8명 * 0.6 * 월 3회 * 3만원 * 년 3회 = 1,296,000원
- 액티브 메도우 Ⅱ : 5명 * 0.6 * 월 3회 * 3만원 * 년 4회 = 1,080,000원
- 액티브 메도우 Ⅲ : 6명 * 0.6 * 월 1회 * 3만원 * 년 3회 = 324,000원
- 액티브 메도우 Ⅳ : 7명 * 0.6 * 주 2회 * 3만원 * 년 7회 = 7,665,000원
- 미러 가든 Ⅰ : 8명 * 0.6 * 월 2회 * 1만원 * 년 9회 = 864,000원
- 미러 가든 Ⅱ : 8명 * 0.6 * 월 1회 * 3만원 * 년 9회 = 1,296,000원
- 미러 가든 Ⅲ : 6명 * 0.6 * 월 1회 * 2만원 * 년 7회 = 504,000원

※ 전체 참여가능 인원의 60%를 등록율로 하여 산정함.

### 2. 노무비 : 959,519천원

| 구분 | | 단위 | 수량 | 노임단가(1인) | 월수 | 금액(원) |
|---|---|---|---|---|---|---|
| 행정팀 | 총괄팀장 | 명 | 1.0 | 4,536,297 | 12 | 54,435,564 |
| | 사무 및 행정 | 명 | 2.1 | 3,485,175 | 12 | 89,499,294 |
| | 강사 | 명 | 7.7 | 2,836,563 | 12 | 262,098,421 |

| | | | | | | |
|---|---|---|---|---|---|---|
| 유지 관리팀 | 유지관리팀장 | 명 | 1.0 | 3,887,904 | 12 | 46,654,848 |
| | 청소 | 명 | 2.9 | 2,836,563 | 12 | 99,393,168 |
| | 시설 | 명 | 2.0 | 4,715,625 | 12 | 113,175,000 |
| | 경비 | 명 | 4.0 | 3,699,089 | 12 | 177,556,272 |
| 합 계 | | | | | | 842,812,567 |

**3. 경비 : 257,398천원**

○ 법정복리후생비 : 82,582천원

- 배부대상액 777,980,878원 * 보험요율 10.615% =82,582,670원

○ 기타복리후생비 : 3,412천원

- 20.7인 * 1인당 월간 13,700원 * 12개월 = 3,412,944원

○ 안전관리비 : 17,783천원

- 노무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2.11% = 17,783,345원

○ 세금과공과 : 29,347천원

- 승강기 정기점검비 25,320,000원, 소반시설 정기점검비 2,400,000원
- 전기설비 정기점검비 1,300,000원, 수질검사비 327,500원

○ 수도료 : 4,758천원

- 기초 수도료 3,172,430원 / 기준 부과회수 4회 * 해당 부과회수 : 4,758,645원

○ 전력비 : 33,202천원

- 869,187,139원 * 3.82% = 33,202,949원

○ 가스비 : 26,50천원

- 869,187,139원 * 3.05% = 26,510,208원

○ 보험료 : 10,343천원

- 869,187,139원 * 1.19% = 10,343,327원

○ 수선비 : 49,456천원

- 869,187,139원 * 5.69% = 49,456,748원

※ 전력비, 가스비 보험료, 수선비의 산출은 배부대상액 * 기타경비율로 하며, 배부대상액은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으로 함.

**4. 일반관리비 : 101,392천원**

○ 용역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 1,126,585,475원 * 9% = 101,392,693원

**5. 이윤 : 120,160천원**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 1,201,603,596원 * 10% = 120,160,360원

**6. 수입 : 396,166천원**

○ 체육 프로그램 : 248,639천원

| 종목 | 대상 | 횟수 | 인원 | 등록율 | 공간 수 | 월 강습료 (원) | 개월수 | 금액 |
|---|---|---|---|---|---|---|---|---|
| 풋살 | 청소년 | 4 | 10 | 60% | 1 | 33,333 | 12 | 9,599,904 |
| | 성인 | 2 | 10 | 60% | 1 | 66,667 | 12 | 9,600,048 |
| 농구 (반코트) | 청소년 | 4 | 8 | 60% | 2 | 33,333 | 12 | 15,359,846 |
| 배드민턴 | 청소년 | 4 | 6 | 60% | 1 | 33,333 | 12 | 5,759,942 |
| GX | 성인 | 16 | 10 | 60% | 1 | 91,667 | 12 | 105,600,384 |
| 패드민턴 | 청소년 | 4 | 6 | 60% | 2 | 33,333 | 12 | 11,519,885 |
| 탁구 | 청소년 | 4 | 4 | 60% | 2 | 33,333 | 12 | 7,679,923 |
| 러닝트랙 | 성인 | 8 | 8 | 60% | 1 | 50,000 | 12 | 23,040,000 |
| 피트니스 | 청소년 | 4 | 10 | 60% | 1 | 45,000 | 12 | 12,960,000 |
| | 성인 | 12 | 10 | 60% | 1 | 55,000 | 12 | 47,520,000 |
| 합계 | | | | | | | | 248,639,932 |

○ 문화 프로그램 : 10,006천원

| 프로그램 | 인원 | 등록율 | 월 운영회수 | 회당 강습료 (원) | 연간 회수 | 금액 |
|---|---|---|---|---|---|---|
| 에티브 메도우 Ⅰ (작품집 만들기) | 8 | 0.6 | 3 | 20,000 | 3 | 864,000 |
| 에티브 메도우 Ⅱ (나만의 시집 만들기) | 5 | 0.6 | 3 | 20,000 | 4 | 720,000 |
| 에티브 메도우 Ⅲ (가드닝 테이블) | 6 | 0.6 | 1 | 20,000 | 3 | 216,000 |
| 에티브 메도우 Ⅳ (내가 꿈꾸는 정원 가꾸기) | 7 | 0.6 | 8.69 | 20,000 | 7 | 5,110,000 |
| 미러 가든Ⅰ (압화/허브 비누 만들기) | 8 | 0.6 | 2 | 20,000 | 9 | 1,728,000 |
| 미러 가든Ⅱ (액자 만들기) | 8 | 0.6 | 1 | 20,000 | 9 | 864,000 |
| 미러 가든Ⅲ (키즈 프로그램) | 6 | 0.6 | 1 | 20,000 | 7 | 504,000 |
| 합계 | | | | | | 10,006,000 |

○ 대관 프로그램 : 137,520천원

| 종 목 | 구 분 | 대관 시간 | 사용율 | 공간 수 | 사용료 (원) | 연간 회수 | 금액 |
|---|---|---|---|---|---|---|---|
| 다목적코트 | 평일 주간 | 5 | 0.6 | 1 | 10,000 | 251 | 7,530,000 |
| | 평일 조기/야간 | 5 | 0.6 | 1 | 13,000 | 251 | 9,789,000 |
| | 토/공휴일 주간 | 9 | 0.6 | 1 | 13,000 | 114 | 8,002,800 |
| | 토/공휴일 조기/야간 | 7 | 0.6 | 1 | 16,900 | 114 | 8,091,720 |
| 배드민턴코트 | 평일 주간 | 3 | 0.6 | 1 | 5,000 | 251 | 2,259,000 |
| | 평일 조기/야간 | 3 | 0.6 | 1 | 6,500 | 251 | 2,936,700 |
| | 토/공휴일 주간 | 9 | 0.6 | 1 | 6,500 | 114 | 4,001,400 |
| | 토/공휴일 조기/야간 | 7 | 0.6 | 1 | 8,450 | 114 | 4,045,860 |
| 탁구대(1면) | 평일 주간 | 3 | 0.6 | 2 | 5,000 | 251 | 4,518,000 |
| | 평일 조기/야간 | 3 | 0.6 | 2 | 6,500 | 251 | 5,873,400 |
| | 토/공휴일 주간 | 9 | 0.6 | 2 | 6,500 | 114 | 8,002,800 |
| | 토/공휴일 조기/야간 | 7 | 0.6 | 2 | 8,450 | 114 | 8,091,720 |
| 피트니스 | 평일 주간 | 0 | 0.6 | 1 | 20,000 | 251 | - |
| | 평일 조기/야간 | 0 | 0.6 | 1 | 26,000 | 251 | - |
| | 토/공휴일 주간 | 9 | 0.6 | 1 | 26,000 | 114 | 16,005,600 |
| | 토/공휴일 조기/야간 | 7 | 0.6 | 1 | 33,800 | 114 | 16,183,440 |
| GX룸 | 평일 주간 | 0 | 0.6 | 1 | 20,000 | 251 | - |
| | 평일 조기/야간 | 0 | 0.6 | 1 | 26,000 | 251 | - |
| | 토/공휴일 주간 | 9 | 0.6 | 1 | 26,000 | 114 | 16,005,600 |
| | 토/공휴일 조기/야간 | 7 | 0.6 | 1 | 33,800 | 114 | 16,183,440 |
| 합계 | | | | | | | 137,520,480 |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공격 · 위협의 고도화 · 지능화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중단 없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사이버보안관리관 임명 및 사이버보안담당자 지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사이버공격 · 위협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반 구성 · 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마. 사이버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 ·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조례안 제25조의 사이버보안 감사가 자체감사로 오인될 수 있음
- 반영사항: 제25조의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두 감사의 역할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였음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적정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6. 25.) 결과: 의견 있음(미반영)
- 의견내용: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명시 요청
- 미반영 사유: 개별 기관에서 자체 조례 또는 정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미반영함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디지털도시국 정보보안과 이준기(☎2133-778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공격·위협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강화 및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등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등의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의회사무처·자치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4. “정보통신기기등”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설비·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정보통신실”이란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버·스위치·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각급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의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구성·운영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소관사무 영역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위협으로부터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사이버보안 정책에 상응하는 사이버보안 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급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적용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6조(사이버보안관리관 운영) ① 시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소관사무 영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2.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관리·감독
5. 사이버공격·위협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실시
6. 보안관제, 사고 분석·대응 및 관계 기관 정보 공유
7.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8.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보안 감사
9.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보안 관리 및 복구 대책 수립
10.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업무 감독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관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2. 소관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 관리·감독
3. 사이버공격·위협 대응훈련 및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협력
4. 보안관제, 사고 분석·대응 및 관계 기관 정보 공유 협력
5.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6. 소관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보안 관리 및 복구 대책 수립
7. 기관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업무 감독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보안 관련 사항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운영) ① 시장은 사이버보안관리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분임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 각 부서의 장을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보안관리관 및 사이버보안담당자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을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보조할 분임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이버보안관리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이버보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국내외 동향,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공격·위협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이버보안 교육의 활성화
5.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강화 방안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주요 업무의 추진성과 평가
3. 국내외 사이버보안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이 속한 실·본부·국의 장
2. 위촉직: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이버보안 관련 전문가
   나. 서울특별시 소재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다.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이 속한 실·본부·국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촉직 위원을 우선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소속 사무관이 맡는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자료 제출)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 제19조에 따른 사고 조사, 제2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감사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등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이버보안 교육)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직원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관리관 및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의 사이버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이버보안 예방 조치 등) ① 시장은 사이버공격·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기관등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 결과를 각급기관등에서 이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1. 관리 체계 구축 및 누출금지정보의 관리 등 관리적 보안대책
2. 설치·운용 장소 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등 구성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 긴급 사태 대비 및 재난 복구 계획
5. 온라인 개발 등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사이버공격·위협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대응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정기적인 예방 점검·훈련 실시
2. 안전한 정보통신기기등의 도입 및 활용
3.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정보 공유, 사고 신고 등 체계의 구축·운영
4. 전문 인력 확보 및 직무교육 실시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제15조(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① 시장은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시스템
2. 대시민·업무용 홈페이지
3.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대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 이외 각급기관등의 사이버보안 강화에 필요한 경우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진단·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실태 점검 결과 취약요소를 발견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보안 강화) ① 각급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 위협을 사전 식별하고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자율주행시스템 등 신기술 활용 사업
2. 클라우드컴퓨팅, 무선랜,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물인터넷 등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에 구축되어 운용되는 사업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이하 “보안관제”라 한다)하기 위하여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급기관등의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생성된 로그의 수집 및 저장
2.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탐지 및 분석
3.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및 초동 조치
4.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 조사
5.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센터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제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경보 발령)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5조에 따른 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단계별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보 단계별로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사고 조사·보고) ① 시장은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격 주체 규명, 원인 분석 및 피해 내역 확인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각급기관의 업무 수행 및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급기관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이버보안 복구 체계)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이버보안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비상대책반의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비상대책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이버공격·위협 대응훈련)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급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의 범위와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위협정보의 공유) ①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위협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할 수 있다.

1. 사이버공격·위협의 방법 및 대응 조치에 관한 정보
2. 사이버공격·위협에 사용된 악성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 정보통신망,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기기등의 보안 취약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이버공격·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협력 체계) 시장은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이버보안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위기 대응체계 구축
2. 국제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세미나, 콘퍼런스, 포럼 등의 개최
4. 그 밖에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협의회) ① 시장은 사이버보안 정책 조정 및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차원의 민·관 협력 협의회 등을 구성하거나, 필요에 따라 관계 기관이 주관하는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사이버보안 감사) ① 시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지침(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각급기관등의 사이버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에 자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자체 진단·점검을 실시할 때에 각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위규자 처리) 시장은 사이버보안 위규자(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규자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시행된 위규자(규정 위반자) 처리기준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임명된 정보보안담당관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이버보안관리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는 제6조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및 제7조에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출이 증가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행기간: 비용은 조례 공포·시행 예정인 2025년 9월 이후(1차년도: 2026년도) 발생

○ 사이버보안 기본계획 관련 ISP 수립 비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공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산출하였으며 직전 3년 SW기술자 평균임금 인상률을 평균으로 하여 ISP 단가를 계산함

– 상세 붙임 참고

○ 위원회 개최 관련 비용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산출함

– 연 3,000천원 = 위원회 최대 위원 수(15인) * 참석수당(200천원(2시간 이상 기준)) * 연 개최 횟수(1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지출 | ○기본계획 수립 ISP 비용 | 452,759 | – | – | – | – | 452,759 |
| | ○위원회 운영비용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15,000 |
| | 소계(a) | 455,759 | 3,000 | 3,000 | 3,000 | 3,000 | 467,759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455,759 | 3,000 | 3,000 | 3,000 | 3,000 | 467,759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 – | – |
| 민간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합계 | | 455,759 | 3,000 | 3,000 | 3,000 | 3,000 | 467,759 |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디지털도시국 정보보안과 이준기(02-2133-7784)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부가세 포함 452,758,897원)**

– 컨설팅업무량 34.245 × ISP 단가 12,019,201원 = 411,598,981원

**-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 기본계획" 정보전략계획(ISP)수립비 산정 -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 KOSA)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산정**

(단위 : 원)

| 업무 | | 업무별 가중치 (가이드 p.57 참조) | 해당여부 (O, X) | 총업무 가중치 | 업무 요소 (가이드 p.58 참조) | 난이도 | 해당여부 (O, X) | 난이도 계산 |
|---|---|---|---|---|---|---|---|---|
| 소요제기 | 경영환경 분석 | 3.5 | X | 32.0 | 업무규모 (단순) | 0.7 | X | 1.07 |
| | 정보기술 환경분석 | 3.7 | O | | 업무규모 (보통) | 1.0 | X | |
| | 제도/규정 분석 | 2.0 | O | | 업무규모 (복잡) | 1.3 | O | |
| 현황분석 | 경영전략 분석 | 2.8 | X | | 업무의특성 (단순) | 0.6 | O | |
| | 업무분석 | 6.1 | O | | 업무의특성 (보통) | 1.0 | X | |
| | 정보시스템 분석 | 6.1 | O | | 업무의특성 (복잡) | 1.4 | X | |
| | 벤치마킹 | 2.5 | O | | 기존시스템 (단순) | 0.7 | O | |
| | 자이분석 | 2.0 | O | | 기존시스템 (보통) | 1.0 | X | |
| 목표모델 수립 | 정보화 전략 수립 | 3.3 | O | | 기존시스템 (복잡) | 1.3 | X | |
| |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5.0 | X | | ISP 유형 (보통) | 1.0 | X | |
| | 정보관리 체계수립 | 3.8 | O | | ISP 유형 (복잡) | 1.4 | O | |
| |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 2.5 | O | | 정보자원규모 (단순) | 0.6 | X | |
| 이행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3.8 | X | | 정보자원규모 (보통) | 1.0 | X | |
| 세부계획 작성 | 소요예산 산출 | 3.5 | X | | 정보자원규모 (복잡) | 1.4 | O | |
| | 기대효과 산정 | 2.5 | X | | | | | |
| | 제안요청서 작성 | 4.0 | X | | | | | |
| 컨설팅업무량 계산 (가중치 x 난이도) | | | | | | | 34.245 | |
| ISP 단가(2026년) | | | | | | | | 12,019,201 |
| 직접경비 | | | | | | | | 0 |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 | | | | | | 411,598,981 |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부가세 포함) | | | | | | | | 452,758,879 |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처분 1건임

○ 취득 3건은 신축 1건, 매입 및 신축 취소 1건, 매입·교환 및 신축 1건이며,

○ 처분 1건은 교환 처분 1건임

나. 취득 3건

○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난지천공원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노후하고 산재되어 있는 근로자 대기실 및 시민 샤워장을 통합하여 신축(472.89㎡)

○ 매입 및 신축 취소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노후하고 협소한 '화곡119안전센터'를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강서문화원 부지(972.00㎡) 및 건물(2,046.45㎡)을 매입 후 신축(998.32㎡)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기존 청사(화곡119안전센터)가 준공 후 27년 경과하여 재건축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유로 부지매입비 예산이 미편성 됨에 따라 공간 재구성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노후 및 협소 문제를 일부 해소하며 청사 이전 계획을 취소하였기에 매입 및 신축 취소

○ 매입·교환 및 신축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당초 송현동(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부지를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민간과 종로구 소유의 토지(종로구 중학동 24 외, 129.40㎡) 및 건물(309.90㎡)을 매입 후 주차장과 시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송현 문화공원(28,077.11㎡)을 조성하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매입 대상 종로문화원 부지(247.50㎡) 및 건물(2,046.45㎡)을 종로구의 제안에 따라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종로구 관내 시유지 및 시유건물과 교환하여 취득하고, 버스주차장 확

대 등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129% 증가(86,916백만원 → 199,074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

다. 처분 1건

○ 교환 처분 1건에 대한 세부내역

-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 시유지(종로구 무악동 67-1, 147.10㎡) 및 시유 건물(171.55㎡)을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과 교환하여 처분

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3건

| | | | |
|---|---|---|---|
| - 신축 | 1건 | : | 건물 472.89㎡ |
| - 매입 및 신축 취소 | 1건 | : | 토지 972.00㎡<br>건물 3,044.77㎡ |
| - 매입·교환 및 신축 | 1건 | : | 토지 129.40㎡<br>건물 51,271.67㎡ |

○ 처분 1건

| | | | |
|---|---|---|---|
| - 교환 처분 | 1건 | : | 토지 147.10㎡<br>건물 171.55㎡ |

##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난지천공원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노후하고 산재되어 있는 근로자 대기실 및 시민 샤워장을 통합하여 신축(472.89㎡)하고,

당초 노후하고 협소한 '화곡119안전센터'를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강서문화원 부지(972.00㎡) 및 건물(2,046.45㎡)을 매입 후 신축(998.32㎡)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기존 청사(화곡119안전센터)가 준공 후 27년 경과하여 재건축 기준에 못 미친다는 사유로 부지매입비 예산이 미편성 됨에 따라 공간 재구성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노후 및 협소 문제를 일부 해소하며 청사 이전 계획을 취소하였기에 매입 및 신축 취소하고,

당초 송현동(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부지를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민간과 종로구 소유의 토지(종로구 중학동 24 외, 129.40㎡) 및 건물(309.90㎡)을 매입 후 주차장과 시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송현 문화공원(28,077.11㎡)을 조성하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매입 대상 종로문화원 부지(247.50㎡) 및 건물(2,046.45㎡)을 종로구의 제안에 따라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종로구 관내 시유지 및 시유건물과 교환하여 취득하고, 버스주차장 확대 등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에 따라 사업비가 129% 증가(86,916백만원 → 199,074백만원)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고,

서울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재산인 종로구 내 시유지(종로구 무악동 67-1, 147.10㎡) 및 시유 건물(171.55㎡)을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과 교환 처분하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 별첨)

○ 취득 3건

| | | | |
|---|---|---|---|
| - 신축 | 1건 | : | 건물 472.89㎡ |
| - 매입 및 신축 취소 | 1건 | : | 토지 972.00㎡<br>건물 3,044.77㎡ |
| - 매입·교환 및 신축 | 1건 | : | 토지 129.40㎡<br>건물 51,271.67㎡ |

○ 처분 1건

| | | | |
|---|---|---|---|
| - 교환 처분 | 1건 | : | 토지 147.10㎡<br>건물 171.55㎡ |

**첨 부**

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 구 분 | | | 이 전 | | | 금 회 | | | 합 계 | | |
|---|---|---|---|---|---|---|---|---|---|---|---|
| | |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 취득 | 계 | 토지 | 3 | 33,528.57 | 120,833,943 | - | 1,101.40 | 8,038,175 | 3 | 34,629.97 | 128,872,118 |
| | | 건물 | 19 | 216,247.92 | 1,618,412,410 | 3 | 54,789.33 | 205,649,232 | 22 | 271,037.25 | 1,824,061,642 |
| | | 기타 | 3 | - | 95,416,400 | - | - | - | 3 | - | 95,416,400 |
| | 매입 및 신축 | 토지 | - | 16,981.60 | 87,366,157 | - | - | - | - | 16,981.60 | 87,366,157 |
| | | 건물 | 2 | 34,807.30 | 185,307,000 | - | - | - | 2 | 34,807.30 | 185,307,000 |
| | 신축 등 | 건물 등 | 8 | 72,279.87 | 647,064,925 | 1 | 472.89 | 2,600,000 | 9 | 72,752.76 | 649,664,925 |
| | 기부채납 | 토지 | 1 | 122.97 | 1,153,705 | - | - | - | 1 | 122.97 | 1,153,705 |
| | | 건물 등 | 1 | 14178.95 | 76,855,209 | - | - | - | 1 | 14178.95 | 76,855,209 |
| | 증축 등 | 건물 등 | 3 | 24,779.58 | 386,702,770 | - | - | - | 3 | 24,779.58 | 386,702,770 |
| | 매입 | 선박 | 1 | - | 9,300,000 | - | - | - | 1 | - | 9,300,000 |
| | 매입 및 신축(취소) | 토지 | - | - | - | - | 972.00 | 6,957,576 | - | 972.00 | 6,957,576 |
| | | 건물 | - | - | - | - | 2,046.45 | 944,407 | - | 2,046.45 | 944,407 |
| | | 건물 | - | - | - | 1 | 998.32 | 2,901,801 | 1 | 998.32 | 2,901,801 |
| | 신축(취소) | 건물 | 3 | 49,036.90 | 155,725,490 | - | - | - | 3 | 49,036.90 | 155,725,490 |
| | 현물출자 | 권리 | 2 | - | 86,116,400 | - | - | - | 2 | - | 86,116,400 |
| | 무상귀속 및 신축 | 토지 | 1 | 359 | 607,751 | - | - | - | 1 | 359 | 607,751 |
| | | 건물 | - | 10,924.32 | 75,900,000 | - | - | - | - | 10,924.32 | 75,900,000 |
| | 교환 | 토지 | 1 | 8,975.00 | 1,915,265 | - | - | - | 1 | 8,975.00 | 1,915,265 |
| | 매입·교환 및 신축 | 토지 | - | - | - | - | 40.50 | 116,923 | - | 40.50 | 116,923 |
| | | 건물 | - | - | - | - | 94.67 | 5,510 | - | 94.67 | 5,510 |
| | | 토지 | - | - | - | - | 88.90 | 963,676 | - | 88.90 | 963,676 |
| | | 건물 | - | - | - | - | 247.50 | 122,859 | - | 247.50 | 122,859 |
| | | 건물 | - | - | - | 1 | 50,929.50 | 199,074,655 | 1 | 50,929.50 | 199,074,655 |
| | 교환 및 신축 | 토지 | - | 7,090.00 | 29,791,065 | - | - | - | - | 7,090.00 | 29,791,065 |
| | | 건물 | 2 | 10,241.00 | 90,857,016 | - | - | - | 2 | 10,241.00 | 90,857,016 |
| 처분 | 계 | 토지 | 5 | 73,822.80 | 380,056,285 | 1 | 147.10 | 866,713 | 6 | 73,969.90 | 380,922,998 |
| | | 건물 | 1 | 40,597.63 | 12,291,490 | - | 171.55 | 27,334 | 1 | 40,769.18 | 12,318,824 |
| | | 공작물 | 1 | 3,314.41 | 3,019,599 | - | - | - | 1 | 3,314.41 | 3,019,599 |

| 구 분 | | | 이 전 | | | 금 회 | | | 합 계 | | |
|---|---|---|---|---|---|---|---|---|---|---|---|
| | |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건수 | 면 적(㎡) | 금 액(천원) |
| | 현물출자 | 토지 | 2 | 22,194.30 | 86,116,400 | - | - | - | 2 | 22,194.30 | 86,116,400 |
| | 교환 | 토지 | 2 | 3,628.50 | 17,027,885 | 1 | 147.10 | 866,713 | 3 | 3,775.60 | 17,894,598 |
| | | 건물 | - | 132.23 | 13,896 | - | 171.55 | 27,334 | - | 303.78 | 41,230 |
| | 매각 및 멸실 | 토지 | 1 | 48,000.00 | 276,912,000 | - | - | - | 1 | 48,000.00 | 276,912,000 |
| | | 건물 | - | 29,477.11 | 8,710,127 | - | - | - | - | 29,477.11 | 8,710,127 |
| | 멸실 | 건물 | 1 | 10,988.29 | 3,567,467 | - | - | - | 1 | 10,988.29 | 3,567,467 |
| | | 공작물 | 1 | 3,314.41 | 3,019,599 | - | - | - | 1 | 3,314.41 | 3,019,599 |

2.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25년도 제4차 수시분)

| 일련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취득시기 | 취득사유 및 방법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계 | | | | | 55,890.73 | 213,687,408 | | | |
| 1 | 건물신축 | 마포구 | 상암동 | 1538 | 472.89 | 2,600,000 | 2026 | 난지천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건립 | 서부공원여가센터 |
| 2 | 토지매입(취소) | 강서구 | 화곡동 | 111-90 | 972.00 | 6,957,576 | - |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취소 | 소방행정과 |
| | 건물매입(취소) | | | | 2,046.45 | 944,407 | | | |
| | 건물신축(취소) | | | | 998.32 | 2,901,801 | | | |

| 일련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취득시기 | 취득사유 및 방법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3 | 토지매입(변경) | 종로구 | 송현동 | 48-9 일대 | 40.50 | 116,924 | 2026 | 송현 문화공원 조성 | 공공개발담당관 |
| | 건물매입(변경) | | | | 94.67 | 5,510 | | | |
| | 토지교환(변경) | | | | 88.90 | 963,676 | 2025 | | |
| | 건물교환(변경) | | | | 247.50 | 122,859 | | | |
| | 건물신축(변경) | | | | 50,929.50 | 199,074,655 | 2029 | | |

3.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25년도 제4차 수시분)

| 일련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처분시기 | 처분사유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계 | | | | | 318.65 | 894,047 | | | |
| 1 | 토지교환 | 종로구 | 무악동 | 67-1 | 147.10 | 866,713 | 2025 | 송현 문화공원 조성 | 공공개발담당관 |

| 일련번호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연)면적(㎡) | 기준가격(천원) | 처분시기 | 처분사유 | 소관부서 |
|---|---|---|---|---|---|---|---|---|---|
| | | 구 | 동 | 번지 | | | | | |
| | 건물 교환 | | | | 171.55 | 27,334 | | | |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요약(’ 25년도 제4차 수시분)

| 사 업 명 | 구 분 | 내 역 | | | | 세 부 내 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 (㎡) | 기준가격 (천원) | |
| 난지천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건립 | 취 득 (신축) | 건물 | 1 | 472.89 | 2,600,000 | - 목적 및 용도 : 난지천공원 내 근로자대기실 및 시민샤워장 통합 신축<br>- 대 상 지 : 마포구 상암동 1538<br>- 사업기간 : ’ 22. 7월 ~ ’ 26. 12월<br>- 소요예산 : 2,600,000천원<br>- 사업규모 : 건물 472.89㎡<br>- 기준가격 명세 : 건물 2,600,000천원<br>- 계약방법 : 〈건물신축〉 (설계)수의계약, (공사)공개경쟁입찰 |
|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취소 | 취 득 취 소 (신축) | 토지 | 1 | 972.00 | 6,957,576 | - 목적 및 용도 : 화곡119안전센터 이전 건립 취소<br>- 대 상 지 : 강서구 화곡동 111-90<br>- 사업기간 : ’ 20. 8월 ~ ’ 23. 10월<br>- 소요예산 : 12,602,681천원 |

| 사 업 명 | 구 분 | 내 역 | | | | 세 부 내 용 |
|---|---|---|---|---|---|---|
| | | 종류 | 건수 | (연)면적 (㎡) | 기준가격 (천원) | |
| | | 건물 | 1 | 2,046.45 | 944,407 | - 사업규모 : 토지 972.00㎡, 건물 3,044.77㎡<br>- 기준가격 : 〈토지매입〉 6,957,576천원, 〈건물매입〉 944,407천원, 〈건물신축〉 2,901,801천원<br>- 계약방법 : 〈토지 및 건물 매입 - 취소〉<br>〈건물 신축 -취소〉 |
| | | 건물 | 1 | 998.32 | 2,901,801 | |
| 송현 문화공원 조성 | 취 득<br>변 경<br>(매입,교환 및 신축) | 토지 | 9 | 129.40 | 1,080,599 | - 목적 및 용도 : 송현동 부지를 국제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br>(지상)문화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br>- 대 상 지 :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br>- 사업기간 : ' 22. 10월 ~ ' 29. 12월<br>- 소요예산 : 199,406,655천원<br>- 사업규모 : (취득) 토지 129.40㎡, 건물 51,271.67㎡<br>(처분) 토지 147.10㎡, 건물 171.55㎡<br>- 기준가격 명세 : (취득) 토지 1,080,599천원, 건물 199,203,024천원<br>(처분) 토지 866,713천원, 건물 27,334천원<br>- 계약방법 : 〈토지 및 건물 매입〉 협의 매입,<br>〈토지 및 건물 교환〉 협의(감정평가),<br>〈건물 신축〉 (설계)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br>(공사) 공개경쟁입찰 |
| | | 건물 | 3 | 51,271.67 | 199,203,024 | |
| | 처분<br>(교환) | 토지 | 1 | 147.10 | 866,713 | |
| | | 건물 | 1 | 171.55 | 27,334 | |

#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고양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 조정 ·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06년 1월~)

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나. 근거법령

○ (공통)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개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다. 사무내용

○ 지역사회 이웃 간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 기획봉사 ‘이웃화합 프로젝트’ 추진
○ 청년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기획봉사 및 대학연계 봉사활동 지원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권 단위(캠프·풀뿌리단체 등)의 자원봉사 운영
○ 효과적 재난 ·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 · 관 자원봉사 협력사업 추진
○ 시민 자원봉사 참여기반 확대 및 자원봉사 인정·예우 강화
○ 다양한 주체간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재원 다각화 및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개발
○ 관리자·봉사자 역량강화 및 초·중·고 연계 청소년 봉사학습 지원
○ 자원봉사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식 확산 및 체계적 조사 연구 추진

라. 출연의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회복 및 발전 도모

○ 자원봉사활동의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마. 기관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신용보증재단 건물 3층)
○ 규　　모 : 1,413.22㎡ (약 428평)
○ 인　　력 : 36명
○ 지　　원 :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및 동 캠프 등

바. 소요예산(’ 26년) : 5,556,114천원

○ 운 영 비(인건비, 경비 등) : 3,126,869천원
○ 사 업 비 : 2,429,245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행정국 시민협력과 최천수 (☎ 2133-6310)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 · 운영되고 있음.
나.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097,955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20,979,551,520천원)×0.01%
▸ 산출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예정(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269호, ’25. 7. 9.)
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 정책, 제도 및 행정에 관한 조사 · 연구
◯ 과표, 세외수입, 지방세특례 등에 관한 조사 ·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의무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 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재무국 세제과 김용덕 (☎ 2133-3353)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 비율변경(2020년 이전 1만분의 1.5, 2021년 1만분의1.3, 2022년 1만분의 1.2, 2026년 1만분의 1.0 개정예정)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 ·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서울장학재단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출연의 필요성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 ·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장학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라. 주요사업
      ○ 고교, 대학 분야 장학생 진로활동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직업전문학교 학업활동 장학금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후손 및 해외 교환학생 파견 장학금 지원사업
      ○ AI 등 이공계 분야 지원강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에 참여한 우수학생 지원사업
      ○ 멘토링, 아카데미 등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등
   마. 기관개요
      ○ 소 재 지 :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
      ○ 법인설립 : 2009. 1. 8.
      ○ 조 직 : 사무국(2부), 정원 15명/ 현원 14명
      ○ 시설규모 : 675㎡(사무공간, 회의실(3), 창고)

바. 소요예산(안) : 12,813,397천원
사. 산출근거
○ 장학사업비 : 10,705,590천원
○ 사무국운영비(인건비, 경비 등) : 2,107,807천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전진수(☎ 2133-3913)

붙임 2026년도 서울장학재단 예산(안)

(단위: 천원)

| 구 분 | 2026년 편성안 |
|---|---|
| 합 계 | 12,813,397 |
| 장학사업비 소계 | 10,705,590 |
|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 3,109,993 |
|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 1,990,300 |
|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 360,000 |
| 서울교환학생장학금 | 315,500 |
|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장학금 | 301,100 |
| 서울꿈길장학금 | 200,000 |
| 서울선순환인재장학금 | 50,000 |
| 서울희망하나고장학금 | 27,000 |
| AI서울테크대학원장학금 | 2,710,000 |
|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 656,000 |
|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 254,000 |
| 서울직업계고장학금 | 292,000 |
| 장학생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비 | 120,500 |
| 홍보사업비 | 116,000 |
| 장학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비 | 203,197 |
| 경상운영비 소계 | 2,107,807 |
| 인건비 | 844,853 |
| 운영경비 | 1,262,954 |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개별)법령 :「평생교육법」제20조
○ 조 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진흥 · 지원 ·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함
라. 출연 사무내용
○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 고도화 및 확산, 서울시민(청소년) ‘인문독서 프로그램’
○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 · 개발 등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 광역 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사업 운영
– 중부권 캠퍼스 사업 운영, 동남권 캠퍼스 사업 운영, 모두의학교 캠퍼스 사업 운영, 다시

가는 캠퍼스 사업 운영,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생애주기별 사업 운영

- 주인공학교 운영, 청년포트폴리오학교 운영,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넥스트 아카데미 운영, 7학년 교실 운영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시민대학 통합 홍보 추진

○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 중부권 · 동남권 · 모두의학교 ·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시설현황 : (붙임1) 참조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2)

○ 출연금액 : 21,589백만원

- 사업비 13,876백만원, 인건비 4,776백만원, 운영경비 2,251백만원, 예비비 687백만원

※ 예산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 이사회 회의록 : 별첨1

아. 결산보고서 : 별첨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강성준 (☎ 2133-3966)

| 붙임1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시설 현황 |
|---|---|

| 시 설 명 | 시 설 현 황 (위치도) |
|---|---|
| 평생교육진흥원 본 원 | - 개관일: 2015. 4. 21.<br>- 위 치: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br>- 연면적: 331㎡<br>- 주요시설: 사무실, 회의실, 강의실<br>  <br>〈5 · 6호선,경의중앙,공항철도 공덕역 8번 출구 도보 5분〉 |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 - 개 관 일: 2018. 4. 10.<br>- 위 치: 종로구 송월길 52<br>- 연 면 적: 1,484.96㎡ (지하1층~지상3층)<br>- 주요시설: 사무실, 시민홀, 도서관, 강의실 등<br>  <br>〈5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 도보 10분〉 |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 - 개 관 일: 2021. 4. 5.<br>- 위 치: 강동구 고덕로 399, 104동<br>- 연 면 적: 11,833.03㎡ (지하2,5층, 지상2~4층)<br>- 주요시설: 사무실, 시민홀, 미래홀, 강의실 등<br>  <br>〈5호선 상일동역 4번 출구 도보 3분〉 |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캠퍼스 | - 개 관 일: 2017. 10. 28.<br>- 위 치: 금천구 남부순환로 128길 42<br>- 연 면 적: 2,482.87㎡ (지상 1~5층)<br>※ 운동장 5,616㎡ 별도<br>- 주요시설: 사무실, 강의실, 강당, 모두의책방 등<br>  <br>〈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도보 15분〉 |

| 시 설 명 | 시 설 현 황 (위치도) |
|---|---|
| 서울시민대학<br>다시가는 캠퍼스 | - 개 관 일: 2025. 2. 21.<br>- 위 치: 관악구 낙성대로 70<br>- 연 면 적: 7,040㎡ (지하1층~지상3층)<br>- 주요시설: 사무실, 대강당, 소강당, 도서실, 미디어실 등<br>  <br>〈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 도보 15분〉 |

| 붙임2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별 예산(안)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6년 예산(안) |
|---|---|
| **합 계** | **21,589,469** |
| **사업비 소계** | **13,875,960** |
| **1.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 **1,557,305** |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 1,069,705 |
| 대학연계 평생교육 고도화 및 확산 | 129,600 |
| 서울시민(청소년) '인문독서 프로그램' | 358,000 |
| **2.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 **4,417,480** |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 521,900 |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 · 개발 | 269,445 |
| 서울시민 영어교육 온 · 오프라인 확대 운영 | 3,626,135 |
| **3.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 **1,103,440** |
| 광역 평생교육연수센터 운영 | 583,165 |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 108,155 |
|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 303,090 |
|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109,030 |
| **4.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사업 운영** | **1,179,285** |
| 중부권 캠퍼스 사업 운영 | 252,720 |
| 동남권 캠퍼스 사업 운영 | 251,240 |
| 모두의학교 캠퍼스 사업 운영 | 256,880 |
| 다시가는 캠퍼스 사업 운영 | 330,420 |
|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88,025 |
| **5. 생애주기별 사업 운영** | **2,522,640** |
| 주인공학교 운영 | 114,830 |
| 청년포트폴리오학교 운영 | 56,720 |
|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 244,470 |
| 넥스트 아카데미 운영 | 108,620 |
| 7학년 교실 운영 | 1,998,000 |
| **6.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 **526,795** |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 216,160 |
|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 40,635 |
|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 24,735 |
| 시민대학 통합 홍보 추진 | 245,265 |
| **7.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 **2,569,015** |
| 중부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204,381 |
| 동남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465,396 |
|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182,481 |

| 구 분 | 2026년 예산(안) |
|---|---|
|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1,716,757 |
| **일반관리비 소계** | **7,026,644** |
| 인건비 | 4,775,827 |
| 운영경비 | 2,250,817 |
| **예비비 소계** | **686,865** |
| 봉급 예비비 | 686,865 |

※ 예산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중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나. 추진근거
      ○ 법령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조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고령화 가속과 기대수명 증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중장년층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전담 기관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을 지원하고,
      ○ 중장년층의 역량을 서울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장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캠퍼스 사업 활성화’, ‘중장년 정책연구 및 확산’ 사업 등 추진을 통해 ‘서울형 중장년 지원 정책’을 구현하고자 함
   라. 출연 사무내용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중장년층 전직 및 취업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생활 지원,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중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중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중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중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마.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개요
○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공덕동)
○ 시설현황: (붙임1) 참조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2)
○ 출연금액 : 38,304백만원
- 사업비 23,800백만원, 인건비 12,171백만원, 운영경비 2,088백만원, 반환금 1백만원, 예비비 244백만원 ※ 예산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 이사회 회의록 : 별첨1

아. 결산보고서 : 별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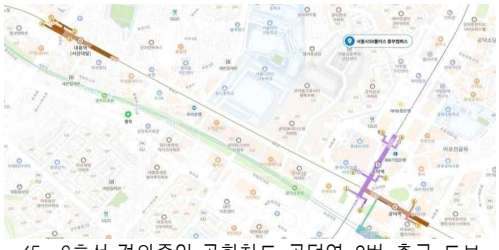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허준오 (☎ 2133-3963)

붙임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시 설 현 황 (위치도) |
|---|---|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 - 개관일: 2016.5.2.<br>- 위 치: 은평구 통일로 62길7<br>- 연면적: 3,956.43㎡ (지하1~지상4층)<br>- 주요시설: 사무실, 강의실, 강당, 상담센터, 공유사무실, 카페 등  〈3호선 ·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도보 7분〉 |
|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재단본부 포함) | - 개관일: 2017.3.6.<br>- 위 치: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복지타운 내<br>- 연면적: 4,509.9㎡ (지하1~지상4층)<br>- 주요시설: 사무실, 강의실, 강당, 상담센터, 공유사무실, 서재 등  〈5 · 6호선,경의중앙,공항철도 공덕역 2번 출구 도보 10분〉 |
|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 - 개관일: 2018.3.5.<br>- 위 치: 구로구 오류로 36-25<br>- 연면적: 3,755.28㎡ (지하1~지상4층)<br>※ 지하2~3층 수영장 1,959.52㎡ 별도<br>- 주요시설: 사무실, 강의실, 강당, 상담센터, 공유사무실, 카페 등  〈7호선 천왕역 3번 출구 도보 7분〉 |
|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 - 개관일: 2020.11.27.<br>- 위 치: 도봉구 마들로13길 84<br>- 연면적: 6,280.62㎡ (지하2~지상3층)<br>- 주요시설: 사무실, 강의실, 강당, 상담센터, 공유사무실, 학생회관 등  〈1호선 ·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 도보 4분〉 |

| 시 설 명 | 시 설 현 황 (위치도) |
|---|---|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 - 개관일: 2025.2.10.<br>- 위 치: 광진구 능동로3길 73<br>- 연면적: 4,181.17㎡ (지하1~지상4층)<br>※ 지하1~3층 주차장 6,851.15㎡ 별도<br>- 주요시설: 사무실,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강의실, 강당, 상담센터, 모두의라운지 등<br>  <br>〈7호선 자양역 1번 출구 도보 8분〉 |

| 붙임2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사업별 예산(안) |
|---|---|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2026년 출연금 편성(안) |
|---|---|
| 예산 총계 | 38,303,838 |
| 사업비 소계 | 23,800,318 |
| 1. 중장년 취업사관학교 운영 | 10,699,170 |
| 1-1 중장년 취업훈련 | 3,200,000 |
| (신규)중장년 취업훈련 | 3,200,000 |
| 1-2 중장년 인재매칭 | 7,389,170 |
| 경력인재지원사업 | 6,000,000 |
| 취업상담 | 794,170 |
|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 295,000 |
| 권역별 잡페어 · 채용설명회 | 300,000 |
| 1-3 중장년 공통교육 | 110,000 |
| 커리어전환교육 | 110,000 |
| 2.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 및 캠퍼스 사업 활성화 | 4,352,260 |
| 2-4 중장년 창업 지원 | 1,345,860 |
| 창업 공간지원 | 100,000 |
| 창업 보육컨설팅 | 220,000 |
| (신규)제조산업 소상공인 창업 지원 | 1,025,860 |
| 2-5 노후준비 프로그램 운영 | 650,000 |
| 디지털 직무역량 프로그램 | 650,000 |
| 2-6 권역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 2,314,400 |
| 권역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 272,200 |
| (신규) 지역기반 중장년 협력사업 | 2,042,200 |
| 2-7 사업 지원 및 성과관리 | 42,000 |
| 자치구50플러스센터 협력지원 | 42,000 |
| 3. 온 ·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7,542,638 |
| 3-8 시민 이용 공간 시설 및 안전 관리 | 5,247,212 |
| 시민 이용 공간 시설 및 안전 관리 | 5,247,212 |
| 3-9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2,295,426 |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 2026년 출연금 편성(안) |
|---|---|
| **예산 총계** | **38,303,838** |
|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 | 2,295,426 |
| **4. 중장년 정책 연구 및 확산** | **532,000** |
| **4-10 중장년 정책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 | **532,000** |
| 정책기획연구 | 397,000 |
|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 135,000 |
| **5. 고객만족경영 및 경영혁신 강화** | **674,250** |
| **5-11 시민소통 강화** | **587,410** |
| 중장년 통합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시민소통 강화 | 487,410 |
| 중장년 인식개선 대외협력캠페인 추진 | 100,000 |
| **5-12 사회적 책임실현** | **32,700** |
| 사회적 책임 강화 | 32,700 |
| **5-13 경영혁신 및 성과내재화** | **50,140** |
| 경영혁신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50,140 |
| **5-14 청렴 및 인권경영 구현** | **4,000** |
| 윤리경영 체계 구축 및 관리 | 4,000 |
| **일반관리비 등 소계** | **14,503,520** |
| **인건비** | **12,171,327** |
| 인건비 | 10,915,160 |
| 성과급 | 1,256,167 |
| **기본경비** | **2,087,674** |
| 기본경비 | 2,087,674 |
| **영업외비용(반환금)** | **1,000** |
| 시설이용반환금 | 1,000 |
| **예비비** | **243,519** |
| 예비비 | 243,519 |

※ 예산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 서울연구원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 운영 ·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2) 추진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교통, 안전, 경제, 복지,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 · 전문적으로 조사 · 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다. 출연 사무내용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 · 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 · 기술개발 · 연구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 기술개발 · 연구
3)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 · 기술개발 · 연구
4)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 · 평가 · 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 · 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6)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7)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8)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

라. 출연 기관 개요

1) 연 혁

- ’92. 1. 15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정
- ’92. 7. 1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
- ’92. 10. 1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개원
- ’03. 1. 27 현 청사(서초동 인재개발원 내) 이전
- ’12. 7. 26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17. 9. 21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23. 11. 1 통합연구원 출범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 ’24. 2. 23 제18대 오균 원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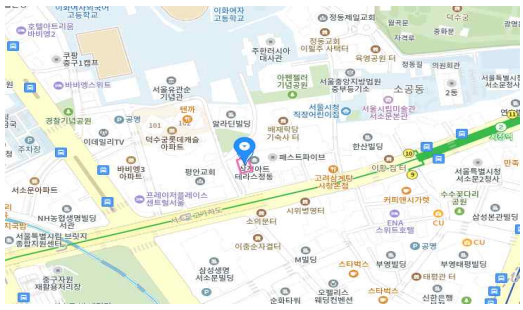
2) 소재지

| 구 분 | 서초 본원 | 정동 별관 | 역삼 별관 | 개포 별관 |
|---|---|---|---|---|
| 소재지 |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중구 서소문로 89-10 | 강남구 도곡로 205, YK빌딩 | 강남구 개포로 416, 디지털혁신파크 |
| 규 모 | 지상5층 ~ 지하1층 | 지상4층 ~ 지하1층 | 지상8층 지하1층 | 지상1~3층 |
| 연면적 | 8,468m² | 1,794m² | 1,117m² | 499m² |
| 계약기간 | ’21.12.27. ~ ’26.12.26. | ’24.3.22. ~ ’29.3.21. | ’21.5.1. ~ ’26.4.30. | ’25.1.1. ~ ’29.12.31. |
| 소유자 | 서울시 (무상사용) | 서울시 (무상사용) | 민간 | 서울시 (무상사용) |
| 비 고 | | | 공공투자관리센터 | 서울RISE센터 |

3) 위치도



서초 본원



정동 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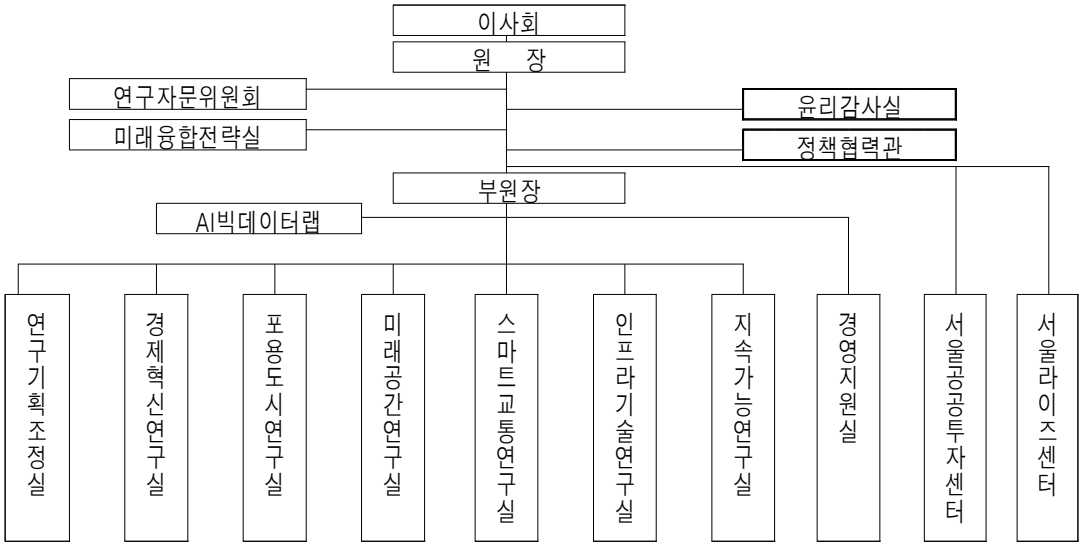
역삼 별관



개포 별관

4) 규 모

– 조 직 : 원장, 부원장, 윤리감사실, 9실, 2센터, 1랩



- 인 력 : 정원 305명 / 현원 298명

(2025. 7. 31. 기준, 단위: 명)

| 구 분 | 계 | 임 원 | 연구직 | 일반직 | 공무직 |
|---|---|---|---|---|---|
| 정 원 | 305 | 1 | 217 | 71 | 16 |
| 현 원 | 298 | 1 | 211 | 70 | 16 |
| 과부족 | △7 | - | △6 | △1 | - |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출연금액(안) : 44,367백만원

2)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 세입 예산 | | | 세출 예산 | | |
|---|---|---|---|---|---|
| 계 | 56,746,222 | 100.0% | 계 | 56,746,222 | 100.0% |
| 1. 일반사업계정 | 49,146,222 | 86.6% | 1. 일반사업계정 | 49,146,222 | 86.6% |
| 가. 출연금 | 44,366,640 | 78.2% | 가. 연구사업 | 7,384,060 | 13.0% |
| 나. 자체수입 | 4,779,000 | 8.4% | 1)연구과제 수행 | 7,289,450 | 12.8% |
| 1)수탁사업 계정전입금 | 1,178,000 | 2.1% | 2)연구실 운영 | 94,610 | 0.2% |
| 2)출판물 등 판매수입 | 40,000 | 0.1% | 나. 경영사업 | 8,029,506 | 14.1% |
|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600,000 | 1.1% | 다. 인건비 | 33,411,448 | 58.9% |
| 4)이월금 | 1,074,000 | 1.9% | 라. 예비비 | 321,208 | 0.6% |
| 5)내부유보금 | 1,887,000 | 3.3% | | | |
| 2. 수탁·협약사업계정 | 7,600,000 | 13.4% | 2. 수탁·협약사업계정 | 7,600,000 | 13.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별첨 1. 2024년도 결산 이사회 결과보고 1부.
2. 2024년도 결산보고서 1부.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박혜진 (☎ 2133-675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 · 지방분권 · 지방행정 · 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
  나.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 · 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 제3항

> 제3조(출연금) ①~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생략)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추진 필요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 지방분권 · 지방행정 ·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 · 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각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

다. 출연 사무내용

1)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3)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평가 연구 및 용역 수탁
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
5)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

라. 출연기관 개요

1) 연 혁
- ’ 84. 8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서울시 마포구)
- ’ 86. 5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 ’ 15.10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
- ’ 16.12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2)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3) 위치도



4) 규 모
- 조 직: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제도실, 지방행정혁신실,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균형발전실, 경영지원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인 력 (2025. 07. 31. 기준)

▸ 임　원: 30인 이내 (당연직 22인, 임의직 8인)

이사회 구성현황

○ 원　장(1): 육동일
○ 당연직(21)
- 행안부(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국장, 지방재정국장, 균형발전지원국장
- 시 · 도 기획조정실장(1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임의직(4): 김재훈(서울과기대), 김태영(경희대), 손희준(청주대), 이재원(부경대)

▸ 직　원:　현원 98명 (원장 1, 연구직 58, 행정직 18, 전문직 1, 투자분석직 20)

(2025. 07. 31. 기준, 단위:명)

| 구 분 | 계 | 원장 | 연구직 | 행정직 | 전문직 | 투자분석직 |
|---|---|---|---|---|---|---|
| 정　원 | 104 | 1 | 63 | 19 | 1 | 20 |
| 현　원 | 98 | 1 | 58 | 18 | 1 | 20 |
| 과부족 | - 6 | 0 | 5 | 1 | 0 | 0 |

5) 시설현황

- 규　　모 : 지상 3층, 지하 2층 / 연면적 5,742.68m²
- 건축년도 : 2016년(’16.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
- 시설현황

| 층 별 | 주요 용도 |
|---|---|
| 지하 2층 | 주차장, 체력단련실, 기계실, 전기실 |
| 지하 1층 | 자료실 |
| 1층 | 로비, 경영지원실, 기획조정실 연구기획과 |
| 2층 | 임원실, 연구실(지방재정경제),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
| 3층 | 연구실(자치분권제도, 지방행정혁신, 지역균형발전), 중회의실, 소회의실, 여성휴게실 |
| ※ LIMAC 별도 청사 임차 사용 중(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5~6층) | |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 26년 출연금 편성액(안) : 250백만원

2)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원

▸ 특별 · 광역시 · 도(16개) 출연금 : 각 250백만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 150백만원

※ 분담근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생략)

2)「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2024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심의 결과

2. 2024년 결산 보고서

3. 2024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4. 2026년 추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5. 2026년 사업계획(안)(별도 송부)

6. 2026년 출연금 요구서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권태환(☎ 2133-6725)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출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2) 출연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
- 2010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서울 · 인천 · 경기)의 출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
다. 출연 사무 내용
1)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2)「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및「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의 인수 등

라. 출연 기관 개요

1)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3층)

3) 규 모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

| 구 분 | 정·현원 | 인원수 | 세부 내용 |
|---|---|---|---|
| 조합위원 | 정원 | 23인 |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정책관(1),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균형발전전문가(2인) |
| | 현원 | 23인 |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및 16개 시도 기획조정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1),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소멸대응전문가(2인) |
| 사무직원 | 정원 | 4인 |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 · 6급(1인)<br>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2인) |
| | 현원 | 4인 |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 · 6급(1인)<br>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2인) |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실 면적 : 108.9㎡(33평, 임차 사무실)

4) 위 치 도




〈위 치 도〉



〈지방재정회관 건물〉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2026년 출연금 편성액(안) : 363,648,619천원

※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국세수입 전망('24~'28년)에 따른 잠정액으로, 실제 출연 금액은 세수에 따라 변동 가능

2) 2026년 산출근거(안)

– 1,004,759,476천원(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2]) × 35%

2) 지방소비세 인상 10%p분(약 12.4조원)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약 4.5조원)을 제외한 잔여분(약 7.9조원)에 최근 3년 서울시 안분율 평균액(12.83%) 적용

+ 11,982,802천원(’24년 결산 기금 정산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제②항~제③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원진희(☎ 2133-6889)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 무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ㅇ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동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 필요성
  ㅇ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 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법정지정기관)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조 직 : 3실 2센터 / 정원 65명 ※현원 63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2명, 감사 1명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부지 640㎡

○ 위 치 도



청사현황



위 치 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 50,000천원, 사업비 28,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차솔비(☎2133-6774)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등 경제 산업분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경제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나. 주요사무
  ○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해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첨단산업 기술진흥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등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지원 사업
 다.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2조(출연금 등) ① 시는 재단의 설립 · 시설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서울시 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으로 서울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서울 경제 활성화
 라. 출연기관 개요
  ○ 소 재 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 시설규모: 대지 9,864.2㎡, 연면적 43,609m² (지하4층 ~ 지상14층) 중 74%
  ○ 지원시설 및 위치도: (붙임1) 참조

3. 소요예산
 가. 2026년 출연금액(안) : 65,357백만원
  ○ 지출예산 추계 93,821백만원 중 자체수입 추계 28,464백만원 감안, 필요예산 65,357백만

원을 출연금으로 추계하여 검토중

(단위: 백만원)

| 세 입 | | | | 세 출 | | | |
|---|---|---|---|---|---|---|---|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 |
| 총계 | 87,004 | 93,821 | 6,817 | 총계 | 87,004 | 93,821 | 6,817 |
| 고유사업 | 12,442 | 12,758 | 316 | 고유사업비 | 44,315 | 47,716 | 3,401 |
| 시설운영 | 6,456 | 6,706 | 250 | 시설운영비 | 6,522 | 7,284 | 762 |
| 수탁수수료 등 | 1,500 | 1,500 | - | 기관운영비 | 35,647 | 38,301 | 2,654 |
| 사업외수입 | 3,000 | 3,000 | - | 예비비 | 520 | 520 | - |
| 잉여금 | 5,285 | 4,500 | △785 | | | | |
| 출연금 | 58,321 | 65,357 | 7,036 | | | | |

※ 현재 2026년도 예산 편성·검토 과정에 있어 출연금 규모는 추계액으로 확정 사항이아니며 검토 과정에서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수탁사업 예산 제외)

나. 세부내역 : (붙임 2)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붙임 : 1. 관리시설 및 위치도 1부.
2. 예산 세부내역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결산보고서 1부

※ 작성자 : 경제실 경제정책과 전민주 (☎ 2133-5125)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바이오 등)을 육성하고자 ’ 19년부터 우수한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 · 운용 중임
   나. 이에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나. 출자개요
   ○ 출자사업

| 펀 드 명 | 市 출자약정액 | 조 성 액 | 조성기간 |
|---|---|---|---|
| 미래혁신성장 펀드 | 1,751억원 | 3조 6,857억원 | ’ 19년~’ 22년 (조성완료) |
| 서울 Vision 2030 펀드 | 3,500억원 | 5조원(목표) | ’ 23년~’ 26년 (조성 중) |
|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 20억원 | 200억원 | ’ 23년(조성완료)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30억원 | 50억원(목표) | ’ 25년(조성 중) |

<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

| 운용사 선정계획 수립 및 공고 | ⇨ | 운용사 선정 및 市 출자 약정액 결정 | ⇨ | 펀드 결성 | ⇨ | 출자금 납입 요청 | ⇨ | 출자금 납입 |
|---|---|---|---|---|---|---|---|---|
| (市) | | (운용사선정위원회) | | (운용사) | | (운용사) | | (市) |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 펀드 결성
* 투자기간(4년) 동안 출자금 수시 납입→ 회수기간(4년) 동안 출자금 회수

○ 2026년 출자계획(안)

| 펀 드 명 | ’26년 출자계획액 |
|---|---|
| 합계 | 860억원 |
| 서울 Vision 2030 펀드 | 781억원 |
| 미래혁신성장 펀드 | 65억원 |
|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 7억원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민생노동국) | 7억원 |

※ 기 조성된 펀드의 ’26년 출자약정액 납입 예상액(640억원) 및 ’26년 조성 펀드의 市 출자약정액(1,100억원) 1차년도 납입 예상액(220억원)

○ 출자재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다. 출자 필요성

- 총 3.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19년부터 ’22년까지 조성되어 첨단산업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1,538개사에 3조 429억원 투자하여 기업당 평균 19.8억원 투자(’24년말 기준)
- 총 5조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24년까지 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23년 700억원, ’24년 810억원을 市가 출자약정하여 2.6조원 규모 펀드 조성 (369개사에 5,703억원 투자하여 기업당 평균 15.5억원 투자(’24년말 기준))
  * ’25년 7월 300억원을 출자하여 신규 펀드 조성 중이며 10월 590억원을 추가로 출자 예정
- ’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23년 조성 후 4개사 27억원 투자(’24년말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송정민 (☎ 2133-4757)

[붙임]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계획(안)

| 분 야 | 주 요 내 용 | 출 자 액 |
|---|---|---|
| **계** | | **860억원** |
| **미래혁신성장 펀드** | | **65억원** |
| ① 4차산업혁명 |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지원 | 2억원 |
| ② 스마트시티 |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 지원 | 19억원 |
| ③ 창업지원 | 원천기술, 지식 기반 창업기업 지원 | 12억원 |
| ④ 재도전지원 |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 지원 | 8억원 |
| ⑤ 서울바이오 |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 23억원 |
| ⑥ 문화콘텐츠 |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 지원 | 1억원 |
| **서울 Vision 2030 펀드** | | **781억원** |
| ① 인공지능대전환 | 인공지능(AI) 기반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기업 지원 | 75억원 |
| ② 디지털대전환 | 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기술 지원 | 72억원 |
| ③ 서울바이오 |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 | 85억원 |
| ④ 첨단제조 |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및 신제품 생산기업 지원 | 124억원 |
| ⑤ 창조산업 | 지식재산권 기반 생산, 유통, 마케팅 등 종합 지원 | 153억원 |
| ⑥ 스케일업 | 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지원 | 184억원 |
| ⑦ 첫걸음동행(창업지원) | 창업 초기기업, 경영위기·재창업 기업 지원 | 88억원 |
|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 | **7억원** |
| 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 |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 산업 지원 | 7억원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 **7억원** |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혁신·성장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 7억원 |

※ ’26년도 예산편성, 펀드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출자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임

나. 이에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소요예산을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 구 분 | 시설현황 | |
|---|---|---|
| 서울투자<br>진흥재단 |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서린동),<br>서울글로벌센터 6·7층<br>- 규 모 : 면적 991.59㎡(6층 590.2㎡, 7층 401.39㎡)<br>- 시설소유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br>- 주요시설 : 경영전략팀, 투자유치팀 등 사무실 |  |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이하 생략)

다. 출연 필요성

○ 투자유치 전문성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에 기반한 투자유치 가능성 확대

○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증대와 서울 경제성장에 기여

라. 주요사무

○ 서울 핵심 개발지 마케팅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 ‘투자하기 좋은 서울’ 대·내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지원

○ 서울 진출기업에 대한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 등

3. 소요예산(세부내역 : 붙임)

○ 2025년 출연금액 : 1,795백만원

- 사업비 430백만원, 인건비 383백만원, 운영비 432백만원, 기본재산 500백만원, 예비비 50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인베스트서울 운영 예산 중 일부 변경 및 현물 출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 사업별 예산(안) 1부.

※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반가운 (☎ 2133-4824)
경제실 금융투자과 이선미 (☎ 2133-4769)

| 붙임 |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 사업별 예산(안)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5년 예산(안) |
|---|---|
| **합 계** | **1,795,992** |
| **고유사업비 소계** | **430,150** |
| **1.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브랜딩 및 홍보** | **125,950** |
| 서울 개발부지 마케팅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 90,450 |
| 서울 투자환경 설명회 | 15,500 |
|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홍보 | 20,000 |
| **2. 글로벌 자본 유치** | **69,200** |
| 투자유치 유망 CORE 어워드 행사 | 29,200 |
| 성과우수기업 지원금 | 40,000 |
| **3. 해외 기업 유치** | **235,000** |
| 해외기업 진출단계별 인센티브(올인원패키지) 제공 | 235,000 |
| **일반관리비 소계** | **815,842** |
| 인건비 | 383,701 |
| 기관운영경비 | 432,141 |
| **기본재산 소계** | **500,000** |
| 기본재산 출연(현금) | **500,000** |
| **예비비 소계** | **50,000** |
| 일반예비비 | **50,000**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도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운영하고자 함

나. 이에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소요예산을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 구 분 | 시설현황 | |
|---|---|---|
| 서울투자진흥재단 |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6·7층<br>- 규 모 : 면적 991.59㎡(6층 590.2㎡, 7층 401.39㎡)<br>- 시설소유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br>- 주요시설 : 경영전략팀, 투자유치팀 등 사무실 |  |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이하 생략)

다. 출연 필요성

○ 투자유치 전문성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에 기반한 투자유치 가능성 확대

○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증대와 서울 경제성장에 기여

라. 주요사무

○ 서울형 투자유치 전략 고도화 및 서울투자유치단 운영

○ 투자 유망기업·투자자 발굴 및 연계

○ 투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기업 유치 마케팅

○ 투자유치 전담기관 인지도 강화 및 국내·외 홍보 등

3. 소요예산(세부내역 : 붙임)

○ 2026년 출연금액 : 10,817백만원

- 사업비 5,415백만원, 인건비 2,609백만원, 운영비 2,743백만원, 예비비 50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 사업별 예산(안) 1부.

※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반가운 (☎ 2133-4824)
경제실 금융투자과 이선미 (☎ 2133-4769)

| 붙임 |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6년 사업별 예산(안)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6년 예산(안) |
|---|---|
| **합 계** | **10,817,289** |
| **고유사업비 소계** | **5,414,924** |
| **1.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브랜딩 및 서울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 | **374,810** |
| 서울 투자환경 브랜딩 | 100,000 |
| 투자유치 전담기관 인지도 강화 | 150,310 |
| 서울형 투자유치 전략 고도화 | 95,750 |
| 서울투자유치단 운영 | 28,750 |
| **2. 글로벌 자본 유치** | **1,950,400** |
| 투자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 682,500 |
|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다변화 | 310,700 |
| 서울기업 글로벌 자본유치 IR 추진 | 831,900 |
| 국내 VC의 글로벌화 지원 | 125,300 |
| **3. 해외 기업 유치** | **2,293,315** |
| 투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122,700 |
| 글로벌 기업 유치 마케팅 | 1,268,865 |
| 해외기업 진출단계별 인센티브(올인원패키지) 제공 | 901,750 |
| **4. 투자하기 좋은 서울 기반 조성** | **796,399** |
| 서울 핵심 개발부지 마케팅 | 509,050 |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 287,349 |
| **일반관리비 소계** | **5,352,365** |
| 인건비 | 2,608,968 |
| 기관운영경비 | 2,743,397 |
| **예비비 소계** | **50,000** |
| 일반예비비 | **50,000**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학·연 협력을 통한 R&D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하였음['20. 8. 28. 지정, '22. 10. 26. 개정]

나.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지속 추진 및 특화 발전을 위하여 '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하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나. 사 무 명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다. 출연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의2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라. 출연의 필요성
○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법정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특구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을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과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 우리 시는 과기정통부가 '26년도 국비 20억 원 대비 지방비 100%를 편성하도록 한 '강소특구 종합평가 결과 통보(지역과학기술진흥과-1274호, '25. 5. 20.)'에 따라 시비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기술-창업-성장' 이 선순환하는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 에 대한 지원 필요

마. 주요 사업내용

○ 공통수단 지원사업 : 전문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
-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 사업화, 엑셀러레이팅 및 글로벌진출 지원 등

○ 특화수단 지원사업 : 기술핵심기관(KIST, 경희대, 고려대) 주관
- 특화기술 발굴 · 연계, 지역 특성화 육성, 강소형 기술창업 활성화

바. 출연대상 기관 개요

○ 기 관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05. 9월 법인설립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주요기능 :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조 직 : 10본부(10실, 17팀), 감사 1부 1팀 / 정원 170명

사. 추진방식

○ 지방비 출연 협약체결 ※사업기간 : ’ 26. 3. 10.~’ 27. 3. 9.
○ 협약내용 : ’ 26년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을 위한 지방비 출연
- 출연목적, 출연금 사용 범위,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실적보고, 협약변경 등

아.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억 원
○ 산출근거 : 강소특구별 육성사업 국비(20억원)의 100% 매칭

(단위 : 억 원)

| 구 분 | 소계 | ’ 26년 | ’ 27년 | ’ 28년 | ’ 29년 | ’ 30년 |
|---|---|---|---|---|---|---|
| 출 연 금 | 200 | 40 | 40 | 40 | 40 | 40 |
| 국비 | 100 | 20 | 20 | 20 | 20 | 20 |
| 지방비 | 100 | 20 | 20 | 20 | 20 | 20 |

※ 사업기간 ’ 26. 3.~’ 31. 3.(5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 지방비 1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출연 등)**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첨단산업과 김대훈 (☎ 2133-8737 )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악화된 대외여건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나.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2026년 출연금액(안) : 155,500백만원
  - 편성내용: ①보증료재원 105억원 + ②신용보증재원 1,450억원
  - 산출근거 : (붙임2)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송휘영 (☎2133-9541)

붙임 1.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 현황
 2.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 2024년 결산 관련 이사회 회의록(별도첨부)
 4. 2024년 결산 보고서(별도첨부)

## 1.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관현황

□ 기관개요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관설립 : 1999. 6월

○ 조직현황 : 2부문 4실 7부 1센터 / 영업점 : 2지역본부 2부 30센터

○ 인력현황 : 정원 503명 / 현원 653명 (’ 25.7월 기준)

| 구 분 | 임 원 (a) | 정규직 (b) | 정원외 기간제 (c) |
|---|---|---|---|
| 정원 / 현원 | 3 / 3 | 500 / 475 | - / 175 |

○ 주요기능

- 신용보증 :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 (신용보증 지원한도 : 기본재산의 15배)
- 구상권 관리 : 신용보증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 경영지도 :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창업 및 경영 개선 컨설팅, 현장지도, 다양한 정보제공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전, 시설) 지원대상에 대한 융자심사를 통한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 지원

□ ’ 25년 예산 : 545,139백만원

○ 사업예산(인건비, 재보증료, 예비비 등) : 126,920백만원

○ 자본예산(대위변제금, 투자자산 등) : 374,794백만원

○ 기타예산(예치금 전입, 기본재산 적립 등) : 3,162백만원

○ 수탁 · 대행사업예산(종합지원사업 등) : 40,263백만원

□ 주요사업

○ 신용보증(채무보증) 지원

- 이용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보증종류 : 일반보증, 정책보증(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창업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80% ~ 100%
- 보증료율 : 보증금액의 연 0.5~2.0%(기준보증료율 : 연 1.0%)

  ※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
- 지원실적 : '99년 설립이래 '25.7.31. 기준 총 42조 1,802억원 지원

○ 구상권 관리
- 신용보증 지원업체가 부실 발생한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 추진
- 추진절차 : 차기년도 구상권 관리계획 수립(서울시, 중기부 사전협의) ⇒ 이사회 의결 ⇒ 서울시 및 정부 사업계획 제출 ⇒ 연중 구상권 관리 지속

○ 기본재산 관리
- 매년 출연금 조성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증지원 기반 마련

○ 출연금 종류
- 신용보증 공급 재원이 되는 출연금 : 순자산(기본재산) 확충 성격
- 고객의 보증료 보전 목적의 출연금 : 소모성 사업비 성격

○ 출연금 조성방법

| 서 울 시 | 서울시 예산 편성 및 집행 (연도별) |
|---|---|
| 금융회사 등 | 법정출연 : 중소기업대출금잔액의 0.7/1,000 출연 |
| | 특별협약출연 : 특정금융회사와 특별보증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등 |
| 정 부 | 정부차원 특례보증 공급 시 출연 (햇살론 등) |
| 자 치 구 | 자치구와 특별보증지원 협약 체결을 통한 출연 |

## 2. 2026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6년도 출연금 예산(안) : 1,555억원

○ 서울시 정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경영환경 개선)에 부합하는 재단 역할 강화와 신용보증 등 운영손실 보전을 위한 출연금 편성

○ ① 보증료재원 105억원 + ② 신용보증재원 1,450억원

□ 최근 5개년 서울시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5개년 평균 |
|---|---|---|---|---|---|---|
| 출 연 금 | 1,202 | 759 | 168 | 342 | 426 | 579 |
| 신용보증재원 | 809 | 534 | 100 | 189 | 286 | 383 |
| 보증료재원 | 393 | 225 | 68 | 153 | 140 | 196 |
| 기본재산 | 8,876 | 9,785 | 9,477 | 8,547 | 7,798(추정) | 8,897 |

□ 2026년 출연금 산출 근거

① ’ 26년 대환대출자금 등에 대한 보증료재원 : 105억원

– 희망동행자금 90억원 + 신속드림자금 9억원 + 다시서기프로젝트 6억원

② ’ 26년 4.3조원 보증공급에 따른 신용보증재원 : 1,450억원

– ’ 26년 보증공급 규모 : 신규보증 3조 1,000억원 + 기한연장 1조 2,000억원

– ’ 26년 보증잔액 규모 : 8조 670억원

(단위 : 억원)

| 구분 | | 2025년(A) | 2026년(B) | 증감(B-A) |
|---|---|---|---|---|
| 보증 공급 | 신규보증 | 25,600 | 31,000 | 5,400 |
| | 기한연장 | 9,000 | 12,000 | 3,000 |
| | **합계** | **34,600** | **43,000** | **8,400** |
| **보증잔액** | | **77,600** | **80,670** | **3,070** |

○ (추진배경) ’ 26년 경기 회복세 예상되나 자영업자 매출 하락 · 수익 부진 지속

– 경영 비용 부담 심화, 내수 회복 체감 지연 등 자영업자 경기 악화 지속 전망
※ 소상공인 72.6%가 매출감소 경험, 65%가 경기회복 시기 불투명 응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태조사, '25.6월)

○ (추진방향)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보증공급 확대
– (보증규모) '25년(3조4,600억원) 대비 8,400억원 확대한 4조 3,000억원 지원
– (운용배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운용배수 10배 이내 운영 필요
▸ 열악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배수 이내에서 적극 지원

| 구 분 | 운용배수 | 최소자본 비율 |
|---|---|---|
| 적정운용배수 | 8.0배수 이내 | 12.5% 이상 |
| 완충운용배수 | 8.7배수 이내 | 11.5% 이상 |
| **적극운용배수** | **9.5배수 이내** | **10.5% 이상** |
| 한계운용배수 | 12.5배수 이내 | 8.0% 이상 |
| **법정 최대 운용배수** | **15.0배수 이내**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 (필요 신용보증재원) 운용배수 10배 운영시 : 1,450억원
※ (’ 23년) 10.3배 → (’ 24년) 9.5배 → (’ 25년) 10.0배(예상) → (’ 26년) 10.0배(예상)

(단위: 억원)

| 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예상) | 2026년(예상) |
|---|---|---|---|---|
| 보증공급액 | 31,349 | 31,366 | 34,600 | 43,000 |
| (A) 보증잔액 | 97,313 | 80,859 | 77,600 | 80,670 |
| 연간 출연금 조성액* | 1,191 | 1,120 | 1,243 | ②2,104 |
| 서울시 | 100 | 189 | 286 | **1,450** |
| 정 부 | 129 | 3 | 13 | – |
| 자치구 | 113 | 44 | 80 | 25 |
| 금융회사 법정출연 | 120 | 138 | 143 | 129 |
|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 729 | 746 | 721 | 500 |
| 당기순손실 | 1,512 | 2,052 | 1,990 | ③1,805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 | -2 | 2 | ④-10 |
| (B) 기본재산 | 9,477 | 8,547 | ①7,798 | ⑤8,107 |
| 운용배수=(A/B) | 10.3 | 9.5 | 10.0 | **10.0** |

※ 연간 출연금 조성액은 서울시 출연금 중 “보증료 보전재원” 은 제외한 신용보증재원임

※ ⑤기본재산=①전년도 기본재산+②당해연도 출연금-③당해연도 당기순손실-④기타포괄손익누계액(순자산 보정)

※ 상기 내용은 업무계획 등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며, 보증공급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을 위한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취약 소상공인 “보호” 중심의 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소상공인 육성의 마중물이 될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를 조성 중임
  나.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전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출자개요
  ○ 추진방향
    -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도약이 어려운 소상공인 발굴 투자
    -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금융 투자 유도
  ○ 출자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 출자사업
    - 펀 드 명 :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 결성목표 : 50억원 (시 30억원, 민간 20억원)
    - 운용기간 : 총 8년(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
    - 투자대상 :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울 소재 기업가형 소상공인
  ○ '26년 펀드 출자 계획(안) : 7억원
    ※ 연도별 출자액(안) : 7억원(’ 25년) → 7억원(’ 26년)→ 8억원(’ 27년)→ 8억원(’ 28년)

  다. 출자의 필요성
  ○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의 과밀구조로 인해 반복적인 창업과 폐업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의 취약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 함께 소상

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성장 육성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

○ 기존의 기술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기업당 높은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되나, 소상공인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고 그 투자효과도 단기에 나타나 소규모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큼

○ 특히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혁신 · 성장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5조(기금의 용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나. 예산조치 : 2026년 중소기업기금(투자계정) 운용계획에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박진(☎2133-5133)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녹색산업 육성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창업펀드 및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중임
   나. 녹색산업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테크 관련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함에 따라「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나. 출자개요
   ○ 출자규모 : 총 19억원(’26년)

(단위 : 억원)

| 펀드명 | ‘26년 市출자액 (총약정액) | 조성액 | 조성기간 |
|---|---|---|---|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 4(20) | 440억원 | ’24년~’32년 |
|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 15(15) | 20억원 이상 | ’26년~’34년 |

※ ’2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 및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다. 필 요 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분야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보유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

3. 출자계획
   가. 녹색기업 창업펀드

○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펀드 운용
– 녹색기술 보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기업 성장지원
○ 펀 드 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 출자금액 : 총 4억원(’ 26년)
○ 조성규모 : 440억원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292.5억원), 민간출자자 등(127.5억원)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녹색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서울 소재 녹색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서울시 출자금의 400% 이상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이내): 서울시 출자금의 5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4년, 회수 4년)

나. 기후테크 펀드
○ 추진방향
–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 펀드 운영
– 기후테크 기업 투자 집중 및 초기기업 성장지원 육성 프로그램 도입
○ 펀 드 명 :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 출자금액 : 총 15억원(’ 26년)
○ 조성목표 : 20억원 이상
‣서울시(15억원), 민간출자자(5억원 이상)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기업에 펀드 약정총액의 7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4년, 회수 4년)

【펀드 조성현황】

(’ 25.7월 말 기준)

| 펀드명 | 재원 | 조성액 (市출자액) | 조성일 | 존속기간 | 비고 |
|---|---|---|---|---|---|
|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 | SBA 출연금 | 160억원 (SBA 20억원) | ’ 11.5.30. | 7년 (4년투자, 3년회수) | 청산완료 |
| 녹색기업 창업펀드 2호 | SBA 출연금 | 100억원 (SBA 20억원) | ’ 12.7.12. | 8년 (4년투자, 4년회수) | 청산완료 |
|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 |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억원 (市 20억원) | ’ 13.9.16. | 12년 (3년투자, 9년회수) | 청산중 (~’ 25.9.15.) |
| 녹색기업 창업펀드 4호 | SBA 기금 | 145억원 (SBA 10억원) | ’ 17.9.5. | 8년 (4년투자, 4년회수) | 회수중 |

| 펀드명 | 재원 | 조성액<br>(市출자액) | 조성일 | 존속기간 | 비고 |
|---|---|---|---|---|---|
| 녹색기업 창업펀드 5호 |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억원<br>(市 20억원) | ’ 23.12.1. | 8년<br>(4년투자, 4년회수) | 투자중 |
| 녹색기업 창업펀드 6호 | 市 기후대응기금 | 440억원<br>(市 20억원) | ’ 24.8.27. | 8년<br>(4년투자, 4년회수) | 투자중 |
| 기후테크 펀드 1호 | 市 기후대응기금 | 15억원 이상<br>(市 10억원) | 결성 준비중(운용사 선정 ’ 25.5) | | |
| 총 계 | | 1,245억원(市 · SBA 110억원) ※ 결성예정 불포함 | | |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 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김경희 (☎ 2133-3586)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16.12월 서울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음

나. 안정적인 열공급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열수송관 적기 교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개요

○ 대 상 : 서울에너지공사

○ 출자규모 : 6,000백만원

– 노후 열수송관 교체 : 6,000백만원

(단위 : 억원)

| 사업명 | 소계 | ’ 22년 | ’ 23년 | ’ 24년 | ’ 25년 | ’ 26년 |
|---|---|---|---|---|---|---|
| 합 계 | 699 | 59 | 200 | 140 | 240 | 60 |
|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 699 | 59 | 200 | 140 | 240 | 60 |

나. 출자 필요성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열수송관의 노후화가 지속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 26년 사업비를 출자하고자 함

– ’ 26년 노후 열수송관 5.2km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③ 항 생략

나. 예산조치 : ’ 26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 예산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박필관 (☎ 2133-3554)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수준 높은 공연예술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음악연주활동 및 연주자 육성사업
   -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나.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2) 규 모 : 건물 2,043.58㎡
  3) 소요예산 : 23,713백만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성희제 (☎ 2133-2527)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3) 필 요 성 : 다양한 공연, 전시를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5) 소요예산 : 53,588,967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2) 규 모 : 대지 21,083㎡, 건물 64,066㎡ (지하 3층, 지상 6층)
      - 공연장(세종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전시관(세종미술관, 세종충무공이야기), 교육시설(세종예술아카데미) 등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김영미 (☎ 2133-2519)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4)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소요예산 : 70,012,854천 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용두동 255-67)
  2) 규 모 : 대지 1,520.2㎡, 건물 2,367.41㎡ (6층 건물)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최종규 (☎ 2133-2555)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 무 명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2)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필 요 성
         -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관광재단의 운영 지원
         - 외래관광객 3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객 편의 개선 등 사업수행
      4) 사무내용
         -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제공
         -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등
      5) 출 연 금(2026년) : 금73,217,306천원
         - 본부운영비 : 금18,095,998천원 (인건비, 경비 등)
         - 고유사업비 : 금55,121,308천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나. 서울관광재단 기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 삼일빌딩

2) 규 모 : 전용 6,941㎡, 9개 층(지상1층 일부, 4~11층, 6,941㎡)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조치사항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임영선(☎2133-2811)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12.15.)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6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나. 위 치: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다. 규 모: 지상 1~3층(총면적 2,925.23㎡, 전용면적 1,791.1㎡)
 라. 주요시설: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등
 마. 사업주체: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타 공공기관)
 바.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체험 운영 등
 ○ 미디어 이용자 참여 활성화: 방송제작을 위한 장비·시설·교육 지원 등
 ○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미디어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미디어교육 운영 등
 ○ 지역 연계 협력 강화: 청년형·협력형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 출연금액(안): 299,920천원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1,499,600천원)의 20% 분담
   (인건비 82,700천원, 경상비 217,220천원) ※ 사업비 제외
 아.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4조(운영비 분담)**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 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방송법」 제90조의2

>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2026 회계연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양송희 주무관(☎2133-6442)

붙임 1. 2025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제1차 이사회 회의록 1부.
2. 2024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결산서 1부. 끝.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20다산콜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출연금)
▸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 사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운영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시정·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 재단 사업 관련 업무시설 관리
–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출연의 필요성
○ 시민중심 맞춤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 전문상담기관
기능을 수행하여 시민서비스 질 향상 및 시민중심 소통행정 실현
○ 상담관련 과학적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시정서비스 개발 및 제공

라. 기관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 규　　모 : 연면적 4,615m² (지하1~지상5층)

○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한종 (☎2133-6542)

| 붙 임 | 2026년도 120다산콜재단 세출예산(안) |
|---|---|

(단위 : 천원)

| 구 분 | | | ’26년 예산(안) |
|---|---|---|---|
| 계 | | | 37,295,194 |
| 세입 | 출 연 금 | | 35,014,998 |
| | 결산잉여금 | | 2,280,196 |
| 계 | | | 37,295,194 |
| 세출 | **사업비** | | **5,555,891** |
| | **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5,046,490** |
| | | **전산시스템 운영** | **2,719,492** |
| | | 상담정보시스템 운영 | 2,702,033 |
| | | 상담 체계 운영 | 17,459 |
| | | **스마트상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2,326,998** |
| | | 스마트상담시스템 구축 | 2,000,000 |
| | | 스마트상담시스템 운영 활성화 | 326,998 |
| |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 보호** | | **509,401** |
| | | **상담 역량 강화** | **222,439** |
| | | 역량강화 교육 | 208,639 |
| | | 상담지식정보 현행화 | 13,800 |
| | |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강화** | **286,962** |
| | | 감정노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 286,962 |
| | **인건비** | | **24,183,552** |
| | 보수 | | 19,246,043 |
|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 | 502,955 |
| | 기간제근로자 보수 | | 229,807 |
| | 퇴직급여 | | 2,166,130 |
| | 성과급 | | 2,038,617 |
| | **운영비** | | **7,455,751** |
| | 경 비(일반운영비 등) | | 6,778,981 |
|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 | 676,770 |
| | **예비비** | | **100,000** |
| | 예비비 | | 100,000 |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 가능함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 구 분 | 시설현황 | |
|---|---|---|
| 본 관 |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br>- 전용면적 : 3,665㎡<br>- 주요시설 : 정책연구센터, 평가인증센터, 고립예방센터,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경영기획실, 감사실 등 |  |
| 흑석동 별 관 |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br>- 전용면적 : 814.64㎡<br>- 주요시설 : 금융복지센터, 복지교육센터, 기능보강지원센터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  |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 ·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 ·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다. ’ 26년 총 소요예산(안) : 82,537,356천원

라. ’ 26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 업 비 : 56,772,498천원
○ 기관운영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25,764,858천원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복지정책과 이보열 (☎ 2133-7332)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복지증진 및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등
   – 운영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
   ‣ 서울여성플라자 : 지상 5층, 지하 3층(연면적 22,520㎡)
   ‣ 서울가족플라자 : 지상 2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서울여성플라자



서울가족플라자

   ○ 근거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 · 아동 · 가족 · 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 · 연구
○ 여성 · 아동 · 가족 · 보육 분야의 평가 · 심사 및 인증
○ 여성 · 아동 · 가족 · 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 · 아동 · 가족 · 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 보급
○ 여성 · 아동 · 가족 · 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 · 아동 · 가족 · 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 · 교류 및 민간 협력
○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의 운영·관리 등
다. ’26년 소요예산(안) : 19,754,834천원
라. ’26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 업 비 : 7,493,306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12,261,528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 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
○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서울여성의 경력 활성화, 아동의 권리 보장, 그리고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 · 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광훈 (☎2133-5010)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 개량 ·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지원하고자 출자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관련법령
      - 법 령 : 지방공기업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매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다. 출자의 필요성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실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은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서민주거안정 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주택실 주택정책과 서영진(☎2133-7019)

[붙임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요

| 구 분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
| 설립목적 | | 택지개발공급<br>주택건설 개량<br>공급 및 관리 |
| 설립일 | | ’89. 2. 1. |
| 대 표 자<br>(임기) | | 황 상 하<br><br>2024.12.30. ~ 2027.12.29. |
| 조 직 | | 7본부, 6실, 1원, 27처, 99부, 26센터 12TF |
| 임원<br>현황 | 정 원 | 15명 (비상임이사 포함) |
| | 현 원 | 15명 (비상임이사 포함) |
| 정원 내 | 정 원 | 1,386 (임원 포함) |
| | 현 원<br>(결 원) | 1,413<br>(+27) |
| | % | 101.9% |
| 정원 외 | 무기 | 101 |
| | 기간제 | 61(대체인력 13명 포함) |
| | 단시간 | - |
| 자본금 | 수 권 | 120,000억원 |
| | 납 입 | 77,543억원 |
| ’25 예산 | | 79,009억원 |
| ’25 市 출자금 | | 1,682억원 |
| 주요사업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br>- 25년 계획 총 24,310호(신규공급:14,575호, 재공급 : 9,735호) |
| | | 주택건설 사업 추진<br>- 12개 단지, 5,988세대<br>택지조성 사업 추진<br>- 17개 지구 14,528.8천㎡<br>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추진<br>- 하계5 시범사업 추진<br>- 상계마들 시범사업 추진<br>주거복지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br>- 1구 1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br>- 저소득층, 1인가구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
| | |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관리<br>- 758개 단지 263,071세대 |

[붙임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6년 출자사업(출자금) 내역

(단위:백만원)

| 사업명 | 2026년 (출자금) | 산출내역 |
|---|---|---|
| 총 계 | 322,689 | |
|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 104,594 | ① 매입비<br>(반지하) (258.1백만원-193백만원)*50%*500호<br>(지상) (320백만원-193백만원)*50%*500호<br>( '26년 신축약정) (436.7-193백만원)*50%*34%*500호<br>( '25년 신축약정) (420.59-193백만원)*50%*33%*500호<br>② 정산비 : 17,076백만원 |
|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 35,669 | ① 매입비<br>(청년)<br>·' 26년 신축 : (366백만원-269백만원) *50%*500호*34%<br>·' 25년 2차분(33%) : (353백만원-269백만원)*50%*500호*33%<br>(기숙사)<br>·' 26년 신축 : (359백만원-230백만원)*50%*500호*34%<br>·' 25년 2차분(33%) : (346백만원 - 230백만원) *50% *500호*33%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 132,352 | ① 매입비<br>(신혼Ⅰ)<br>·' 26년 신축 : (561백만원-307백만원)*50%*500호<br>·' 25년 2차분(33%) : (541백만원-307백만원)*50%*420호*33%<br>(신혼Ⅱ)<br>·' 26년 신축 : (642백만원-491백만원)*50%*2,000호<br>·' 25년 2차분(33%) : (619.5백만원-491백만원) *50%*2,037호*33% |
| 자율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 16,280 | ① 매입비<br>(청년주택) 243호 : 12,374백만원<br>(신혼부부Ⅰ) 63호 : 3,906백만원 |
| 공공주택 건설<br>(통합공공임대주택) | 13,670 | ① 명일1동주민센터 공공주택복합화사업<br>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4,844백만원 |

| 사업명 | 2026년<br>(출자금) | 산출내역 |
|---|---|---|
| | | - ’ 25.09. 착공 예정, ‘28.05. 준공 예정<br>② 방화차고지 공공주택건설사업<br>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1,605백만원<br>- ’ 25.06. 착공, ‘27.02. 준공 예정<br>③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br>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6,265백만원<br>- ’ 25.12. 착공 예정, ‘28.01. 준공 예정<br>④ 독산동 산업문화어울림센터<br>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955백만원<br>- ’ 25.02. 착공, ‘26.10. 준공 예정 |
|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 20,124 | ① 매입비 : 20,124,300천원<br>(청년): 800호*(311-269)백만원*50%<br>= 16,805백만원<br>(신혼Ⅰ): 86호*(384-307)백만원*50%<br>= 3,319백만원 |

#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 출자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007년 이후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 제도와는 다르게 전세계약 방식과 다양한 공급면적의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2025년 6월 기준 36,365호를 서울시민에게 공급하였음.

나. 이 중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없이 시비가 전액 투입된 사업(85㎡초과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건설사업비의 58.9%(3,513억원)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자금으로 조달)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를 부채비율과 연동하여 승인함으로써 신규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음.

다. 이에 따라 2016년 제271회 시의회에서 현금출자(197,120백만원) 및 현물출자(19호)승인 받았으며, 현금출자는 12년 동안(`16년~`27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임.

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기관 개요

1) 기관명칭 :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자 본 금 : 199,209백만원(’ 25.6월 기준)

3) 주주구성(’ 27년 출자 완료 시점)

- 서울시 출자금 : 202,717백만원(89.3%)
  (현금197,120백만원, 현물5,597백만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자금 : 24,280백만원(10.7%)
  (현금24,280백만원)

나. 출자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안)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74호, 2016.9.13)

2) 필요성

- 출자기관의 장기전세주택 매입을 통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재정부담 경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재정부담 경감 및 부채비율 완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추가 사업여력 확보

다. 주요사업 : 장기전세주택(85㎡ 초과) 2,450호 임대 운영 및 관리

라. 현금출자

1) 출자계획

○ 총 197,120백만원[12년(’ 16~’ 27)동안 분할하여 지급]

(단위 : 백만원)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24,280 | 24,280 | 24,280 | 24,280 | 12,140 | 12,140 |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12,140 | 12,140 | 12,140 | 12,140 | 12,140 | 15,020 |

2) 금회 현금출자 : 12,140백만원(’ 26년도 분)

마. 의사록 및 결산보고서 : 별도 첨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공공주택특별법

1)「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부동산투자회사법」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3)「공공주택 특별법」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1항 제6호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 성 자 : 주택실 임대주택과 황지성 (☎ 2133-9594)

# 참 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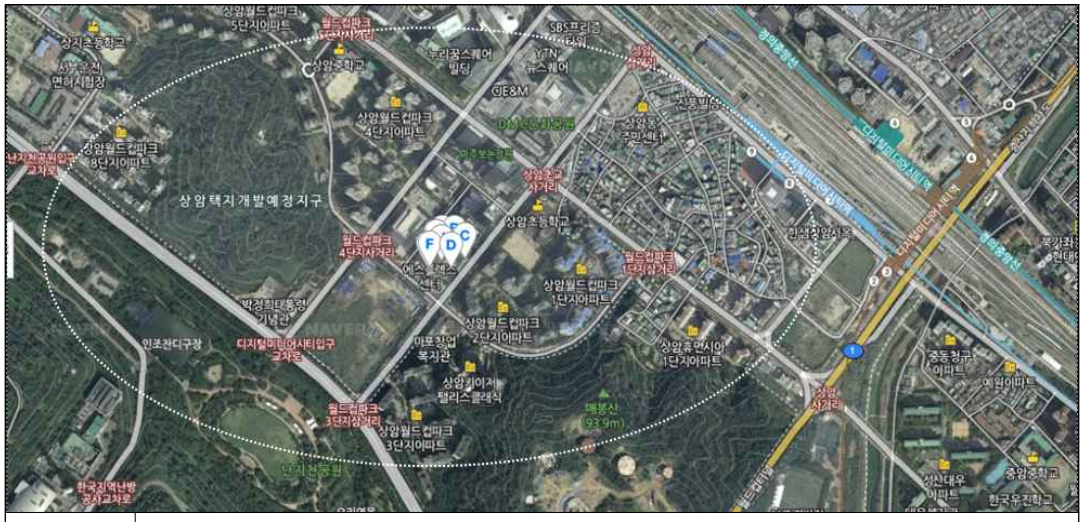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AI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서울AI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AI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서울AI재단 출연금
   나. 출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다. 출연 필요성
      ○ 디지털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 및 서비스 개발로 행정혁신 가속화 지원
      ○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및 디지털 약자·소외계층의 격차 해소 지원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생태계 활성화
   라. 출연 사무내용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
      ○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
      ○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사업
      ○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마. 서울AI재단 기관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6층
      ○ 규모(전용) : 1,738(700)m2

○ 위치도




| | |
|---|---|
| 지역여건 |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에서 도보 15분 |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붙임1

○ 소요예산 : 18,981,621천원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산출근거 : 사업비 12,320,898천원, 행정운영경비 5,872,882천원, 예비비 787,841천원

사. 이사회 회의록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원기철(☎ 2133-2919)

| 붙임 1 | 서울AI재단 2026년 예산(안) |
|---|---|

(단위 : 천원)

| 구 분 | 사업명 | ’26년 예산안 |
|---|---|---|
| 합 계 | | 18,981,621 |
| AI 행정 혁신 | 소 계 | 2,078,113 |
| | 디지털 정책연구 | 274,100 |
| | AI 행정 연구개발 | 614,947 |
| | AI활용 역량 강화 교육 | 221,600 |
| |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 304,240 |
| | 시민 AI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 | 663,226 |
| AI 융합 | 소 계 | 166,860 |
| | AI 플랫폼 운영 | 166,860 |
| AI 글로벌화 | 소 계 | 6,324,925 |
| | Urban AI 연구소 운영 | 1,632,400 |
| | AI 기반 도시혁신 협력연구 | 244,775 |
| |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 | 4,200,000 |
| | 해외 전시 서울관 조성 및 운영 | 247,750 |
| AI 시민 확산 | 소 계 | 3,751,000 |
| | 서울AI청년센터(가칭) 운영 | 2,000,000 |
| |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 운영 | 727,000 |
| | 서울 AI 동행버스 운영 | 104,000 |
| | 서울 AI 스마트시티센터 운영 | 570,000 |
| | AI 페스타 기획 및 운영 | 350,000 |
| 행정운영경비 | 소 계 | 5,872,882 |
| | 인력운영비 | 3,606,927 |

| 구 분 | 사업명 | ’26년 예산안 |
|---|---|---|
| | 기본경비 | 2,265,955 |
| 예비비 | 소 계 | 787,841 |
| | 인력증원 예비비 | 787,841 |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서울디자인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구 분 | 시설현황 | |
|---|---|---|
| 서울<br>디자인재단 |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br>- 규 모 : 사용면적 2,695㎡<br>(지하1층, 지상1,3층, 지상6~9층)<br>- 시설소유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br>- 주요시설 : 경영본부, 디자인산업본부 등 사무실 |  |
| DDP 등<br>(수탁사업) | - 위 치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br>- 시설소유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관리위탁)<br>- 주요시설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역사<br>문화공원(이간수문전시장 외 3개소),<br>디자인문화본부 사무실 |  |
| 서울디자인<br>창업센터<br>(고유사업) |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길 19<br>- 규 모 : 사용면적 2,987㎡(지상3~5층)<br>- 시설소유 : ㈜마포애경타운(시 무상사용)<br>- 주요시설 : 입주기업 창작공간, 컨퍼런스 홀, 멤버십<br>라운지, 운영 사무실 등 |  |

| 구 분 | 시설현황 | |
|---|---|---|
| 서울새활용<br>플라자센터<br>(수탁사업) |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br>- 규 모 : 사용면적 16,530㎡(지하2~지상5층)<br>- 시설소유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민간위탁)<br>- 주요시설 : 꿈꾸는 공장, 소재은행, 미디어룸,<br>창작실 등 |  |

○ 근거법령
- 법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사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다. ’26년 소요예산(안) : 39,301,347천원
○ 사 업 비 : 25,178,139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 14,123,158천원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라.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자인 문화 확산 및 산업 진흥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김효정 (☎ 2133-2706)

붙임 : 이사회 회의록 및 결산보고서(별첨)

#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출자기관인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음
   나. 서울 지하철은 개통된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가중되고 있고 수도권 교통망 확대로 이용객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량이 필요함
   다. 이에 시민 안전 제고 및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6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제안내용
   가. 출자개요
   ○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출자규모 : 4,905억 원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출자 현황
   ○ 주요 안전투자사업 : 10개 사업 4,905억 원

(단위 : 천원)

| 구 분 | 출자액(안) | 비 고 |
|---|---|---|
| 계 | 490,532,110 |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55,290,500 | 국비 매칭시비 |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41,624,000 | 국비 매칭시비 |
|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 28,066,860 | 국비 매칭시비 |

| | | |
|---|---|---|
|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 4,545,000 | 국비 매칭시비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 28,788,750 | 국비 매칭시비 |
| 서울 지하철 스마트 관제센터 구축 | 13,500,000 |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 1,450,000 | |
| 홍대입구역(2호선) 출입구 신설 | 1,400,000 | |
|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 314,900,000 | |
| 4호선 운영필수시설 현업사무실 설치 | 967,000 | |

※ 사업개수 및 사업별 예산액은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다. 출자의 필요성

○ 서울시 지하철은 일 6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개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수도권 교통망 확대로 이용객이 증가하여 시설투자 필요성이 높으나

○ 서울교통공사는 법정 무임승차 제공, 저렴한 운임수준 유지 등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어 노후시설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 붙임2 참조

나. 예산조치 : 202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끝.

붙임　1.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부.

2.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1부.　끝.

※ 작성자 : 교통실 도시철도과 양정연(☎2133-4335)

| 붙임 1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

(단위 : 천원)

| 구 분 | 소요예산 | 산출근거 |
|---|---|---|
| 계 | 490,532,110 |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55,290,500 | 1 (’ 25년 국비미매칭 시비) 876,500천원<br>2 (’ 26년 국비매칭) 6개 분야 23개 사업<br>(전기, 통신, 궤도, 신호, 구조물, 건축)<br>※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교통공사 35% |
|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41,624,000 | 1 (국비매칭) 4개 분야 11개 사업 (전기, 신호, 통신, 궤도)<br>※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교통공사 35% |
|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 28,066,860 | 1 (국비매칭) 1~8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7차 · 9차 사업분<br>※ 매칭비율 : 국비 25%, 시비 37.5%, 교통공사 37.5% |
| 4 · 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 4,545,000 | 1 (국비매칭) 4·7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증차<br>※ 매칭비율 : 국비 25%, 시비 37.5%, 교통공사 37.5%<br>- 사업기간 ’ 24~’ 27년 중 ’ 26년 필요 시비<br>※ 4호선(3,413백만원), 7호선(1,132백만원)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 28,788,750 | 1 (’ 25년 국비미매칭 시비) 5,063,750천원<br>2 (’ 26년 국비매칭) 환기설비 개량 등 8개 사업<br>※ 매칭비율 : 국비 30%, 시비 35%, 교통공사 35% |
|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센터 구축 | 13,500,000 | 1 (시 · 공사 분담) 서울지하철 1~9호선 스마트관제센터<br>건축물 공사 및 관제시스템 제작 등<br>※ 매칭비율 : 市 50% 공사 50%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 1,450,000 | 1 (시 · 공사 분담) 여자화장실 변기 확충 및 양변기 교체 등<br>- 노후화 우선순위에 따라 6개 화장실 개선 추진 등<br>※ 매칭비율 : 市 50% 공사 50% |
| 홍대입구역(2호선) 출입구 신설 | 1,400,000 | 1 (시 · 공사 분담) 홍대입구역 출입구 설계완료에 따른<br>공사추진 ※ 매칭비율 : 市 50% 공사 50% |
|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 | 314,900,000 | 1 행안부 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130%) 충족을 위한<br>부채상환 출자 지원 |
| 4호선 운영필수시설 현업사무실 설치 | 967,000 | 1 4호선 운영필수시설 유지관리 직원 상주공간 현업사무실<br>설치 |

| 붙임 2 | 출자 대상기관 개요(현황) |
|---|---|

## ☐ 설립일자 및 위치

| | |
|---|---|
| **설립일자** | · 2017. 5. 31. |
| **위 치** |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용답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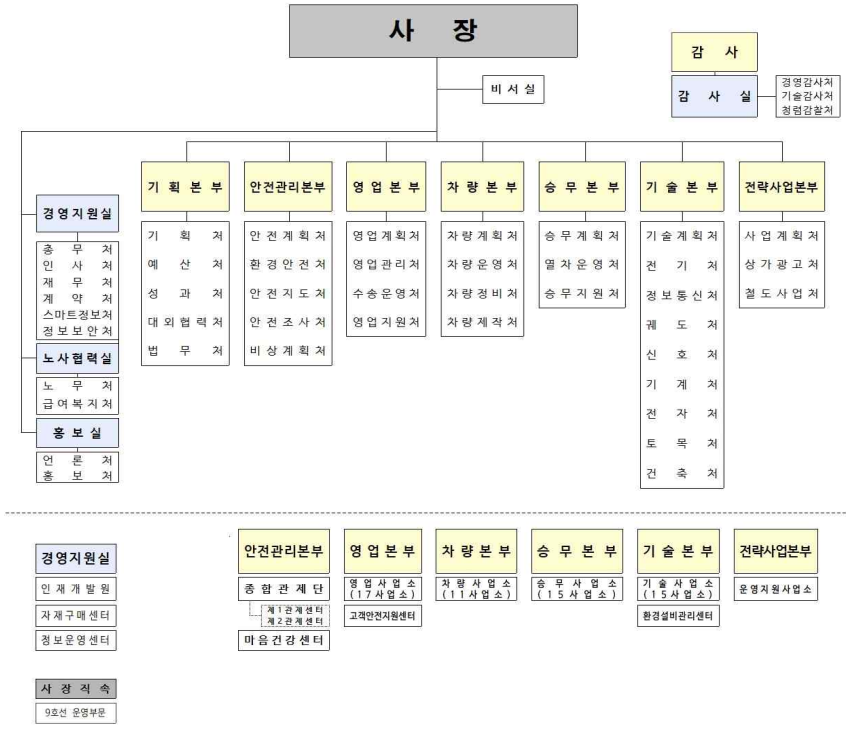
서울교통공사 Seoul Metro

## ☐ 설립근거 및 목적

| | |
|---|---|
| **근 거**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공사설립)<br>·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 3. 9.) |
| **목 적** | · 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br>·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 |

## ☐ 조직 및 인력 (’ 25.7.31. 기준)

| | |
|---|---|
| **조 직** | · **(본 사)** 사장·감사·7본부·5실·46처<br>· **(현 업)** 1부문·1원·1단·7센터·59사업소 |
| **인 력** | · **(정 원)** 16,606명 / **(현 원)** 16,884명 *임피제 별도정원(226명) 정·현원 미포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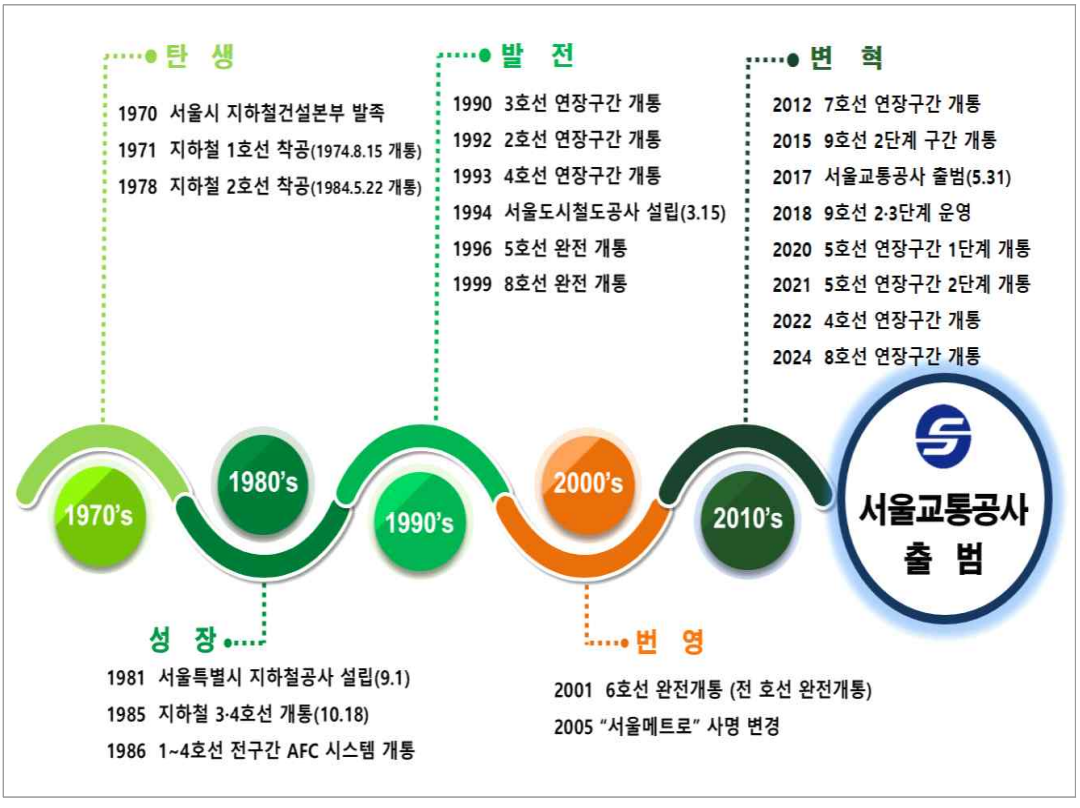
☐ 영업현황

('25. 6. 30. 기준)

| 구 분 | 영업연장 | 역 수 | 전동차 | 수송인원 | 운수수익 |
|---|---|---|---|---|---|
| 계 | 312.3km | 275역 | 3,667칸 | 6,625천명/일 | 4,303백만원/일 |
| 1호선 | 7.8 | 10 | 160 | 424 | 229 |
| 2호선 | 60.2 | 50 | 794 | 1,967 | 1,414 |
| 3호선 | 38.2 | 34 | 490 | 811 | 506 |
| 4호선 | 31.1 | 26 | 520 | 784 | 486 |
| 5호선 | 59.8 | 56 | 640 | 946 | 595 |
| 6호선 | 36.4 | 39 | 312 | 517 | 319 |
| 7호선 | 46.9 | 42 | 577 | 848 | 557 |
| 8호선 | 18.8 | 19 | 174 | 328 | 197 |

※ 9호선 2·3단계 13역(13.6km) 수탁 운영 중

☐ 공사연혁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 · 연수를 통한 행정 능률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 · 휴양 수요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 · 복지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기간이 2025.12.31.일자로 만료(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필 요 성 : 연수원은 신임자 교육, 부서 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 · 연수와 직원들의 휴양 · 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객실·식음 및 시설관리 분야 전문 인력과 연수원 운영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수안보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
      ○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
      ○ 수안보 지역 교육 및 협력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 건물면적 : 연면적 21,731㎡ , 지하2층~지상6층, 4개동
      ○ 부지면적 : 59,815㎡(대지 : 34,764㎡, 임야 : 25,051㎡)
      ○ 연수시설 : 객실(110실), 대강당, 세미나실, 중·소회의실 등
      ○ 편의시설 : 식당, 매점, 사우나, 야외 수영장, 노래연습실, PC방 등
   마. 민간위탁기간 : 2026. 1.1. ~ 2028. 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535,430천원 / 년 ※ 재위탁 공고금액(’ 26년 예산편성안)

○ 산출근거 : 충북형 생활임금, 물가 상승률 반영 및 최근 3년간 수안보연수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 결산기준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5. 7. 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 구내식당 · 매점 · 카페 · 자동판매기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 · 체력단련실 · 심리상담센터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 연수원 · 콘도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그 간의 위탁경과 >

- 최초위탁(1차) : ’ 08. 6. 1. ~ ’ 11. 5. 31. (수탁업체 : ㈜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2차) : ’ 11. 6. 1. ~ ’ 14. 5. 31. (수탁업체 : ㈜HTC / 공개경쟁)
- 재 위 탁(3차) : ’ 14. 6. 1. ~ ’ 17. 5. 31. (수탁업체 : ㈜오브이룸스 / 공개경쟁)
- 재 위 탁(4차) : ’ 17. 6. 1. ~ ’ 19. 12. 31. (수탁업체 : ㈜오브이룸스 / 공개경쟁)
- 재 위 탁(5차) : ’ 20. 1. 1. ~ ’ 22. 12. 31. (수탁업체 : ㈜오브이룸스 / 공개경쟁)
- 재 계 약*(6차) : ’ 23. 1. 1. ~ ’ 25. 12. 31. (수탁업체 : ㈜오브이룸스 / 수의계약)

※ 코로나19 상황 직원만족도 제고 노력, 종합성과평가 우수사례 선정 등 고려하여 재계약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홍경태 (☎ 2133-5783 )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연면적 2017.72㎡)
○ 인 가 일 : ’ 95. 3. 6.(2000.3.3.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



〈어린이집 전경〉



〈실외놀이터〉

나. 운영개요

○ 정·현원 : 정원 195명, 현원 146명(’ 25. 7월 말 기준)
※ 3월 원아모집 기준 : 현원 150명
○ 교 직 원 : 총 45명
– 원장 1, 선임교사 1, 교사 33, 사무원 1, 간호사 1, 영양사 1, 조리사 4, 시설관리사 1, 보육도우미 2
○ 입학자격 : 만0~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 26.3.1.~’ 29.2.28.)

○ 위탁업무

- 어린이집 운영전반(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
- 시설·장비·부품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

○ ’ 26년 예산(안) : 1,923백만원(보육료 수입 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 99.01월~’ 01.07월(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2차 : ’ 01.08월~’ 08.10월(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 3차 : ’ 08.11월~’ 11.09월(학교법인 숙명학원)
- 4차 : ’ 11.10월~’ 14.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5차 : ’ 14.10월~’ 17.09월(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6차 : ’ 17.10월~’ 20.09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7차 : ’ 20.10월~’ 23.02월(한솔어린이보육재단)
- 8차 : ’ 23.03월~’ 26.02월(킨더슐레교육재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4조의3, 제6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25.6.5.)

○ ’ 25년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5.6.26.) 심의결과 : '적정'

※ 작성자 : 행정국 인력개발과 김남철 (☎ 2133-5758)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망우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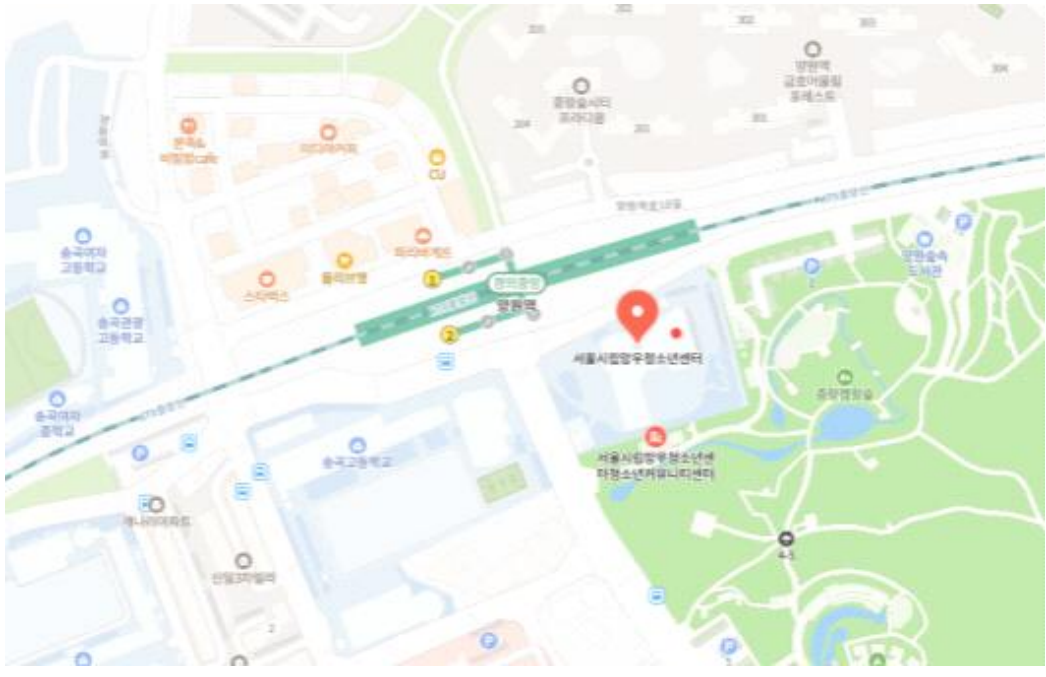
○ 추진의 필요성
- 시립망우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직업 탐색 등 청소년센터를 활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 · 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
○ 개관일자 : 2006. 4. 4.
○ 시설규모 : 대지 7,710㎡ / 연면적 5,150㎡
○ 주요시설 : 미디어 스튜디오, 메이커 스페이스, 힐링테라스, 소극장, 수영장, 체육관, 캠핑장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1.1. ~ 2028.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954백만원(’ 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448백만원, 운영비 698백만원, 사업비 2,332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47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br>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
|---|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br>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
|---|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br>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br>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br>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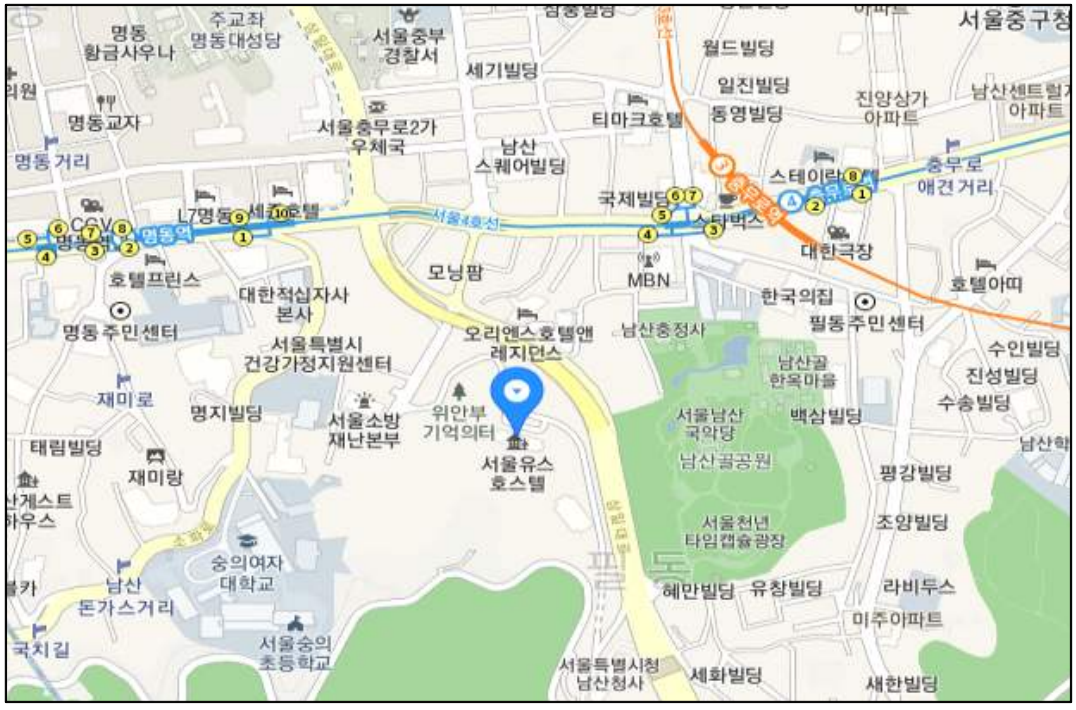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 세계시민교육 및 청소년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며, 해외 문화·언어에 대한 지식 및 네트워크 등 자원이 필요함.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 세계 시민 육성 프로그램

○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다문화교육 및 국제이해 교육 활동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 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
○ “센터”의 시설보수 및 안전 등 물적 설비 관리
○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청소년을 위하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2층
○ 개관일자 : 2000. 5. 27.
○ 시설규모 : 914.6㎡
○ 주요시설 : 강당, 세미나실, 북카페, 사무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1.1 ~ 2028.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470,582천원(’ 25년도)
○ 산출근거 : 인건비 630,327천원 운영비 104,187천원
사업비 705,090천원 사업외지출및기타 30,978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 · 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 · 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수민 (☎02-2133-4115)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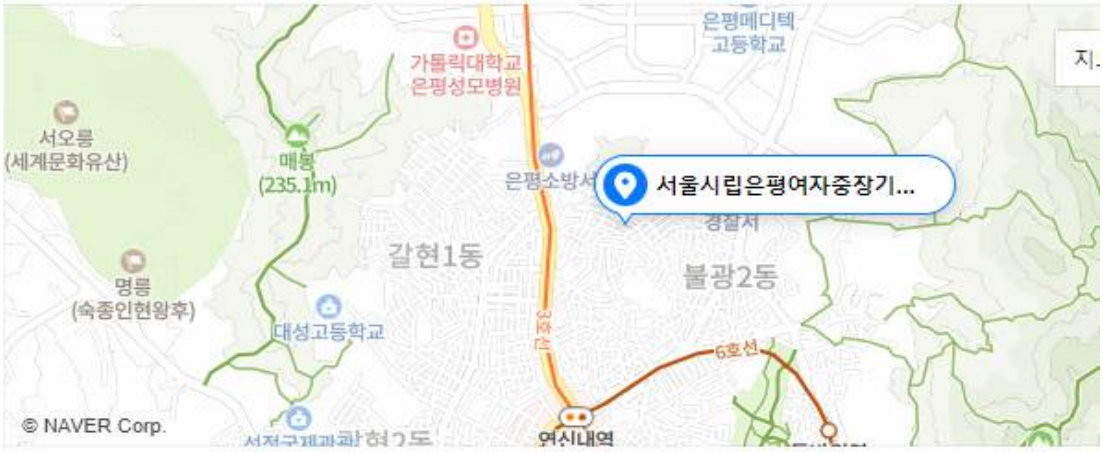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나.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은평청소년중장기쉼터(여)는 가정 밖(여성) 청소년 보호 및 가정과 사회복귀,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
      - 청소년 문제예방사업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 쉼터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 기타 '시'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 동산홈타운
○ 시설규모 : (대지) 143.99㎡, (연면적) 214.64㎡
○ 주요시설 : 숙소, 상담실,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6.01.01. ~ 2028.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안) : 521백만원(’ 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307백만원, 운영비 33백만원, 사업비 181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br>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
|---|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 장애인 · 여성 · 청소년 ·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성기원 (☎ 2133-4129)

#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 사업은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 조례」제62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 청소년의 인권 인식 증진 및 인권보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나. 어린이 · 청소년 인권 관련 교육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다. ’ 25.12.31.자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나. 위탁내용
    ○ 어린이 · 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어린이 · 청소년 인권관련 교육
    ○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 어린이 · 청소년 관련 시설 인권컨설팅 사업
    ○ 그 밖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 필요성
      –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 및 강사양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라. 위탁기간 : ’ 26. 1. 1. ~ ’ 28. 12. 31.(3년, 재위탁)
  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바. 소요예산 : 178백만원(’ 25년)
      – 인건비 123백만원, 운영비 4백만원, 사업비 51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어린이 · 청소년 인권 조례 제62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어린이 · 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이 추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 · 법률 관련자 그 외 어린이 ·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린이 · 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에 대한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 · 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어린이 · 청소년 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홍인재 (2133-4135)

#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동북권 특화 뉴미디어 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하고,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2021년 5월 「서울창업허브 창동」을 개관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위치: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아우르네
   ○ 규모: 지하2~지상4층 / 연면적 8,978.17㎡
   ○ 공간현황: 입주공간, 오픈이노베이션센터, 뉴미디어 스튜디오 등
   나. 위탁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년(2026. 1. 1.~ 2027. 12. 31.)
   ※ 위탁기간이 '25.10.31字로 종료되나, 사업추진 연속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탁법인(서울경제진흥원)과 2개월('25.11.1~'25.12.31) 위탁기간 연장 예정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 26년 소요예산(안) : 3,225백만원(민간위탁금 등)
   다. 위탁사무
   -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선발·관리·보육·지원 등 사업추진 전반
   -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VC·AC 등), 대중견기업 연계 및 사업지원
   - 뉴미디어 마케팅 스튜디오 운영 및 뉴미디어 마케팅 활용한 창업기업 보육지원
   - 창동 아우르네 전체 복합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총괄
   - 기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을 위해 '시'와 협의한 사항

라.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원스톱으로 지원 등 동북권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
- 뉴미디어 분야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수 있는 투자·창업기획 관련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 국내외 플랫폼 및 다양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한 기업 매출 증대 등 외부 투자 환경 변화에 취약한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대응이 필요한 업무임
- 따라서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은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위탁 사무로,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경위

- ’15. 2.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발표
- ’16. 5. 동북권 창업센터 조성계획 수립
- ’17. 9. ‘창동·상계 세대융합형 복합센터’ 통합 관리·운영 추진계획 수립
- ’19. 9. 동북권 창업센터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제289회 정례회)
- ’20. 4. ‘(가칭)창업고도화센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 ’21. 5. 서울창업허브 창동 개관
- ’22. 6. 서울창업허브 창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제307회 정례회)
- ’22. 10. ‘서울창업허브 창동’ 관리·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5. 5. 9.)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11조(협약체결 등)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 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곽선아(☎ 2133-4884)
김남지(☎ 2133-4880)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는 도심형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얼리업체 집적지인 종로1~4가 일대(서울의 45.5%, 전국의 22.2% 차지)를 2010년 1월 '종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나. 주얼리 디자인 개발, 콘텐츠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감정 지원, 업체 간 협업 지원 등을 위해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 15년 7월, 2관-' 17년 6월 개관)를 건립하여 주얼리산업 육성 허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다. 현재 수탁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 25. 12월 만료 예정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기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주얼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2028. 12. 31.(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및 적격자선정심의위 심사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897백만원(' 26년 예산안 기준)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책무) 및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주얼리산업관련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있고, 민간자원 연계 활용이 수월한 기관에 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주얼리 사업체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주얼리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주얼리지원센터(1관·2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총괄
○ 주얼리 산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주얼리 판로 다각화 지원 사업 기획·운영

○ 소공인, 창업자 등을 위한 제작-유통 원스톱 공간 운영
○ 기타 주얼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구 분 | 개 관 | 위 치 | 규모 | 연면적(㎡) | 주요 사무 |
|---|---|---|---|---|---|
| 1관 | ’ 15. 7. | 종로구 서순라길 89-8 | 지상 2층 지하 1층 | 338 | 〈산업지원 및 감정지원〉<br>- 주얼리 혁신기업 발굴 및 성장지원<br>- 경영컨설팅 및 라이브러리 운영<br>- 주얼리 감별 및 분석지원 |
| 2관 | ’ 17. 6. | 종로구 서순라길 83 | 지상 2층 지하 2층 | 449 | 〈전시 및 공유공간 운영〉<br>- 쇼룸 및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으로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br>- 포토스튜디오, 시제품 제작실 운영 |

마.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25. 3월~7월) : 85.46(우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5. 7. 18) : 적정

3.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2(사무의위탁)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민간위탁금 편성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 석수현 (☎2133-8776)

# 서울풍물시장 관리 ·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풍물시장’ 은 과거 동대문운동장 일대 노점 형태로 영업하던 상인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자 2008년 동대문 신설동 서울교육청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조성된 공공 관리형 시장임

나. 최초 약 800여개 점포가 입점하여 전통 골동품·생활용품 등 판매, 한국의 생활사 자료 및 체험관을 선보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내 · 외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는 서울시 특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다. 그러나 기존 노점 상인들의 전문역량 부족에 따라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낮은접근성, 협소한 점포 등 지리적·구조적 한계에 따라 시장활성화 또한 정체된 상황임

라. 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풍물시장’ 사업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풍물시장 관리 ·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및 제11조(사무의 위탁)

○ 추진경위

– ’07.08.21. : 동대문풍물벼룩시장 이전 협의

– ’07.10.11. : 청계천풍물시장 위탁관리업체 선정

– ’07.10.~’08.03 : 서울풍물시장 신축 건축공사

– ’08.04.26. : 서울풍물시장 이전 및 개장

- 위탁현황

| 위 탁 기 간 | 수탁업체 | 협약체결일 | 비 고 |
|---|---|---|---|
| '07.10.11.~ '10.10.10. | (주)에스마름 | '07.10.11. | 신규 |
| '10.10.11.~ '11.11.23. | (주)코스모리치 | '10.09.17. | 임금체불 등 사유로 협약 해지 |
| '11.11.24.~ '11.12.31. | (주)대호지앤씨 | '11.11.23. | 협약해지에 따른 한시적 위탁 |
| '12.01.01.~ '13.10.10. | (주)백상코퍼레이션 | '11.12.26. | 당초 협약 기간 중 잔여기간 |
| '13.10.11.~ '16.12.31. | (주)백상코퍼레이션 | '13.10.10. | 재위탁(공모) |
| '17. 1. 1.~ '19.12.31. | (주)백상코퍼레이션 | '16.12.23. | 재위탁(공모) |
| '20. 1. 1.~ '22.12.31. | (주)백상코퍼레이션 | '19.12.30. | 재위탁(공모) |
| '23. 1. 1.~ '25.12.31. | (주)백상코퍼레이션 | '22.12.31. | 재계약 |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점포임대차 계약 만료('21.5.26. ~ '26.5.25.)에 따른 신규 입찰 시행 예정으로 낙찰 제외된 기존 상인과 법적다툼이 예상되며, 향후 약 700여개 점포 및 500여명 상인들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인 노하우 및 관리 인원이 필요함
- 더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풍물시장 고유의 특색 있는 시장운영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경험 풍부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위탁사무내용

○ 위탁대상 사무 : 서울풍물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

- 시설물(부대시설, 비품·장비 포함) 유지 및 안전관리
- 점포관리, 임대·차 계약, 관리비용 징수, 공유재산 사용료 납입고지서 교부 및 징수독려 등
- 시장활성화 추진 종합대책 수립(점포재배치, 마켓팅 홍보, 관광객유치 등)
- 유통 및 상거래 질서의 확립 업무, 상인 입주 및 그 관련 사항
-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 시장 주변의 환경 정비 및 관리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8,513.76㎡

- 시설현황 : 총 821점포, 지상2층, 상인교육장(231.87㎡)
- 기타시설 : 방재실·야외무대·재활용수집장 등(407.84㎡)

마.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6.1월 ~ ’ 28.12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945백만원(’ 26년)
○ 민간위탁금 : 1,734,733천원
- 인건비 : 897,813천원
- 운영비 : 215,720천원
- 시설물 유지보수 : 241,200천원
- 사업부대경비 : 38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 210,000천원
- 시설환경개선비(관리사무소이전) : 210,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제8조 및 제9조에 대한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고범주(☎2133-5559)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순환경제 사회 구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 증가로 인해 재활용 및 새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나.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및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서, 2017년 9월 개관 이래 민간 전문기관에 의해 위탁운영 중에 있음
  다. 위탁기관과의 협약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며, 또한,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신규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새활용플라자
    ○ 위탁기간 : ’ 26.1.1. ~ ’ 28.12.31.(3년)
    ○ 위탁방식 :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 위탁)
    ○ 소요예산(안) : 6,262백만원(’ 26년 예산안 기준)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리 · 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은 자원순환, 환경, 디자인, 관련 산업 활성화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효율적으로 민간자원을 연계 ·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운영 · 관리를 위탁하여 순환경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 23년~’ 25년 동안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자원순환과)과 입주기업 지원(창업정책과) 사무를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나, ’ 26년부터 사무를 통합 · 운영하기 위해 신규위탁을 추진하는 바임

다. 주요 위탁 사무

○ 새활용플라자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새활용 및 자원순환 관련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민간제로마켓 모집 및 운영 지원
○ 새활용 산업 육성 및 소재 유통 활성화
○ 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및 인프라 관리

라.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 위　　치 :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규　　모 : 연면적 16,678.75㎡, 지하 2층 ~ 지상 5층

○ 공간구성

| 층 | 운영 공간 |
|---|---|
| 5층 | 운영사무실, 교육실, 레스토랑, 공용회의실(3개소) |
| 4층 | 입주기업 사용 공간 |
| 3층 | 입주기업 사용 공간, 창업지원센터, 카페 |
| 2층 | 신한은행아름인도서관, 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친환경체험학습센터 |
| 1층 | 새활용하우스, 꿈꾸는공장, 미디어룸, 야외창작실 |
| 지하1층 | 소재은행, 재사용작업장(입주기업:밀알복지재단) |
| 지하2층 |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창고 |

○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서울새활용플라자 위치도



서울새활용플라자 전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시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박우현 (☎2133-3696)

# 서울특별시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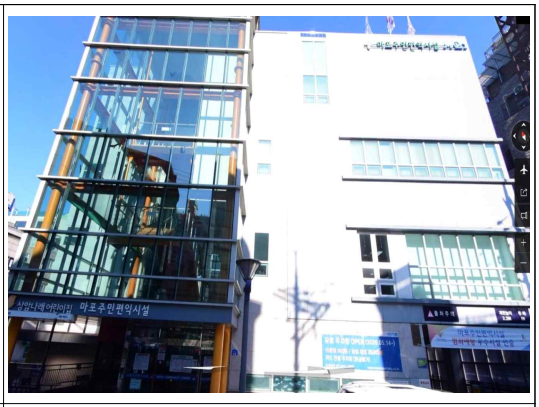
1. 제안이유
가. 마포주민편익시설은 마포자원회수시설로부터 환경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 공간 제공과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임
나. 현재 해당 시설은 안정적 운영과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위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
나. 위탁기간 : 3년 (’25년 12월 30일 ~ ’28년 12월 29일)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필요성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 주민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

라. 위탁사무 내용
○ 편익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의 처리
○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및 관리
○ 주민 이용자의 소통체계 구축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편익 증진
○ 기타 편익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마. 시설개요
○ 시 설 명 :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4길 40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 연 면 적 : 4,773$m^2$
○ 주요시설 : 목욕탕, 어린이집, 골프연습장, 헬스장, 독서실 등
○ 준공년월 : 2009. 12.
○ 이용대상 :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등
○ 시설 위치도 및 외부 전경

<table>
<tr><td> 
</td><td> 
</td></tr>
<tr><td>위치도</td><td>외부 전경</td></tr>
</table>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사. 소요예산 : 운영비 지원 없음(자립형으로 시설이용료 수익금으로 운영)

아. 기대효과
○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로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민간 운영을 통한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확대 기대
○ 서울시 별도 예산지원 없이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 기대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20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조직담당관-7384, '25.7.1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8조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 | |
|---|---|
| 마포주민편익시설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강수연 (☎2133-3679)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하여 민원상담,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임
나.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성과, 개선점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로 통합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다. 공항소음 또는 소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나.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마. 위탁사무 내용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위탁기간 : 3년 (' 26. 1. 1. ~ ' 28. 12. 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아. 소요예산 : 781백만원(민간위탁금, ’ 26년 기준)

자. 기대효과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대 및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
○ 위탁사무 통합관리로 주민 요구사항에 효율적 대응

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 25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5.7.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남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고척동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 민간위탁 종료 후 신규 민간위탁 추진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백윤미 (☎2133-4254)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수상레포츠센터는 수상레포츠 교육·체험, 레저선박 계류 · 보관, 편의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한강 내 최초 친수기반 복합시설로서,
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 운영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일대 (난지한강공원)
○ 시설규모 : 연면적 1226.9㎡(계류장 면적 제외)

| 구 분 | 규 모 | 주요기능 | |
|---|---|---|---|
| 복합지원센터 (수상구조물) | (1층) 611.4㎡ | 교육 및 편의시설 |  |
| | (2층) 615.5㎡ / 옥상 | 휴게공간 및 전망시설 | |
| 계 류 장 | (수상) 2,600㎡ |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보관·계류 | 〈시설 전경 〉 |
| | (육상) 5,000㎡ | | |

○ 추진경위 : 조성공사 준공(’ 24. 2. 29.), 센터 운영개시(’ 25. 5. 1.)
– 운영관리 용역 : ’ 25. 4. 9. ~ ’ 26. 2. 8.
다. 위탁기간 : 2026. 2. 1. ~ 2029. 1. 31. (3년)
라. ’ 26년 예산요구(안) : 398백만원
마. 위탁사무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상레포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수상 및 육상 계류시설 운영
○ 서울수상레포츠센터 시설물 유지 · 관리
○ 그 밖에 홍보 및 행사 등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보관·계류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이해 및 기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 사무 수행을 위한 전문자격 및 역량이 필요한 사업으로,

○ 용역의 경우 매년 신규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며 선정기간(약 2개월) 동안 공백이 발생하는 등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어려움을 고려하여,

○ 운영사무 수행방식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호(민간위탁 사무내용)

나. 예산조치 : ’ 26년 예산 편성필요

다. 합　　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작성자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안전부 수상운영과 강수영 (☎ 3780-0594)

# 서울특별시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산림문학관은 서울시 내 복합문학 플랫폼으로서 서울시의 문학 중심지이자 시민과 문학인이 중심이 되는 문학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로,
나.「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산림문학관 관리 및 운영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 산림문학관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65
○ 시설규모 : 대지 1574.7㎡, 연면적 596.39㎡
(산림문학관 지상 2층, 주차장)
○ 개관일자 : 2026. 4월(예정)
다. 위탁기간 : ’ 26.3.27.~ ’ 28.3.26.(2년)
라. ’ 26년 예산요구(안) : 285백만원
마. 위탁사무
○ 산림문학관 시설 관리 총괄(운영, 안전, 유지보수 등)
○ 문학 행사(전시, 시상식, 강연 등)를 위한 공간 제공 및 행사 지원
○ 시민 대상 문학프로그램 기획 · 운영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자심의위원회)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시민·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프로그램실, 문학 행사를 위한 대형 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문학예술 플랫폼 운영을 통해 문학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 문학은 예술 분야의 원천이 되는 기초예술의 핵심으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기존 문학 향유자인 시민들이 창작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문학인들의 실제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역량있는 민간기관을 선정 ·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나. 예산조치 : `26년 예산편성 필요

다. 합　　의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작성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이승민 (☎2133-2560)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 민간위탁 동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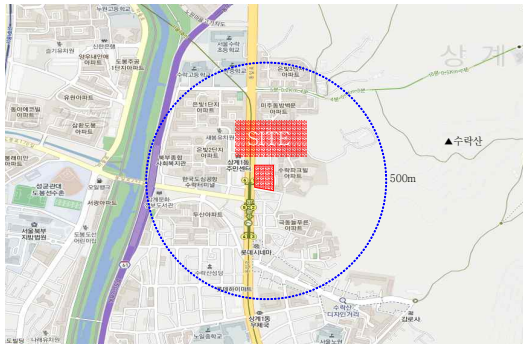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복합체육시설(’ 26.6월 개관예정)로 볼링장, 수영장 등을 활용한 전문 · 생활 체육프로그램 기획과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시설임
  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동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시설형)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제1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 필요성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 더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다년간의 유사 시설 운영, 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역량이 요구되는 바,
      – 서울시를 대표하는 전문체육시설이자 복합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절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규정 마련
    ○ 서울어울림체육센터(볼링장·수영장·체육관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체육센터 재산 및 기타 물품 등의 보존·유지관리
    ○ 기타 체육센터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위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연면적 14,780㎡, 지하2 지상3)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1268
    ○ 주요시설 : 볼링장, 수영장, 장애인다목적공간, 체육관, 주차장 등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수락산역 인근)



시설 조감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 26. 1. 1. ~ ’ 28.12.31.), 신규 위탁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서울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공동 수의협약

사. 소요예산(안) : 3,320백만원

– (민간위탁금) 인건비 1,762백만원, 사업 · 운영비 1,558백만원

※ ’ 26년 예산과 제출안 기준으로 향후 변동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각호와 같다.

3. 문화 · 체육 ·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제18조의2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중
다. 합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5. 7.1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 25년 제6차 심의)
○ 향후 계획
–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 협약체결 : ~’ 25.12월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준공 : ~’ 26.3월
–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 및 운영 : ’ 26.6월 예정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손정훈 (☎ 2133-2694)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시민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무로, 위탁 기간이 2025.12.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나. 체육 분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운영규모 : 24개 종목 26개팀 189명

나. 위탁근거 및 추진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25.6.9.)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02.1.~2004.12. (3년), 서울시체육회
- 2차 : 2025.1.~2007.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3차 : 2008.1.~2010.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4차 : 2011.1.~2013.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5차 : 2014.1.~2017. 3. (3년 3개월,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6차 : 2017.4.~2019.12. (2년 9개월, 재위탁), 서울시체육회
- 7차 : 2020.1.~2022.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8차 : 2023.1.~2025.12. (3년, 재계약), 서울시체육회

○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여부
- ’25. 6. 9.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제96호)

- ’ 25. 7.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80.21점)
※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 25. 7. 1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조직담당관)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26.1월 ~ ’ 28.12월)
○ 위탁유형 : 사무형
○ 위탁방법 : 재위탁(공모)
○ 위탁목적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

○ 기관선정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시 체육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위탁업무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
-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생활관의 운영
- 우수선수 확보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
-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장비의 관리
-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소요예산(안) : 20,547,241천원(’ 25년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중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동인(☎2133-2687)

#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효창운동장은 국내 최초 축구 전용구장으로 건립되어 아마추어 축구발전을 위한 경기장으로 지속 활용되고 있으며,
효창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단체(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나. 현 민간위탁 재계약이 ’ 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효창운동장 관리 ·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직전 동의 : 제315회 정례회(’ 22.12.16.), 본회의 동의 가결

※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09. 7. 1 ~ ’ 11.12.31 : 신규 민간위탁(서울특별시 축구협회)
○ (2차)’ 12. 1. 1 ~ ’ 13.12.31 : 재계약(서울특별시 축구협회)
○ (3차)’ 14. 1. 1 ~ ’ 16.12.31 : 재계약(서울특별시 축구협회)
○ (4차)’ 17. 1. 1 ~ ’ 19.12.31 : 재위탁(공모)(서울특별시 축구협회)
○ (5차)’ 20. 1. 1 ~ ’ 22.12.31 : 재위탁(공모)(서울특별시 축구협회)
○ (6차)’ 23. 1. 1 ~ ’ 25.12.31 : 재계약(서울특별시 축구협회)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효창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 규 모 : 건축 총면적 28,524㎡, 경기장 면적 25,300㎡(수용인원 18,000명)
○ 위탁기간 : 3년 예정(’ 26. 1. 1 ~ ’ 28. 12. 31)
○ 위탁유형 : 자립형 위탁(시설 사용료 명목의 위탁료 부과)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주요 위탁사무 : 효창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아마추어 축구발전을 위한 각종 대회(초 · 중 · 고 및 일반) 유치
○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계도, 매·수표, 청소, 주차관리 등
○ 사무공간, 식당 등 임대유치 및 운동장내 광고권의 관리·운영
○ 시설·장비·비품 유지관리 및 기기 운전
○ 기타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효창운동장은 아마추어 축구 및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 전문기관 · 단체에 의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각종 대회 유치와 더불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오윤경(☎2240-8860)

#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목동실내빙상장은 국내 최초 국제규격의 빙상장으로, 빙상인구의 저변확대, 우수 선수 육성, 국제 대회 유치,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전문업체((주)와이키키신사)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바,
  나. 현 민간위탁 재계약이 ’ 26년 1월 19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직전 동의: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19.4.30.)

※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현황

○(1차)’ 00. 1. 1 ~ ’ 02. 12. 31: 신규 민간위탁(한국동계스포츠센터)
○(2차)’ 03. 1. 1 ~ ’ 05. 12. 31: 재계약(한국동계스포츠센터)
○(3차)’ 06. 1. 1 ~ ’ 08. 12. 31: 재계약(한국동계스포츠센터)
○(4차)’ 09. 1. 1 ~ ’ 11. 12. 31: 재계약(한국동계스포츠센터)
○(5차)’ 12. 1. 1 ~ ’ 13. 12. 31: 재계약(한국동계스포츠센터)
○(6차)’ 14. 1. 1 ~ ’ 16. 12. 31: 재계약(한국동계스포츠센터)
○(7차)’ 17. 1. 1 ~ ’ 19. 12. 31: 재위탁(서울시체육회) ※ 중도해지(’ 19.7.31.)
○(8차)’ 20. 1. 1 ~ ’ 22. 12. 31: 재위탁((주)와이키키신사)
○(9차)’ 23. 1. 1 ~ ’ 26. 1. 19: 재계약((주)와이키키신사)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목동실내빙상장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 규 모: 건축 총면적 14,700㎡, 경기장 면적 6,018㎡(최대 수용인원 7,000명)
    ○ 위탁기간: 3년 예정(’ 26. 1. 20. ~ ’ 29. 1. 19.)

○ 위탁유형: 자립형 위탁(시설 사용료 명목의 위탁료 부과)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주요 위탁사무: 목동실내빙상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경기장 사용 허가, 질서계도, 매·수표, 청소 등 운영
○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시설 관리·운영
○ 시설·장비·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목동실내빙상장과 관련된 기기 운전
○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운영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추진
○ 공공 체육시설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필요한 수익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목동실내빙상장은 빙상인구의 저변확대, 우수선수 육성, 시민 체력증진 및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대표적인 동계체육·문화공간으로,
○ 전문기관·단체에 의한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동계체육을 진흥하고자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운영의 위탁)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소라(☎2640-3813)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사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써
  나. 장애인의 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 구제 · 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존중을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재계약으로 운영하였으며,
  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사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12.31.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1,133,719천원(’ 25년 예산안 기준)
    ○ 수탁자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수탁기관 공개모집)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추진 필요성
      – 본 위탁사무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담, 사법지원, 교육 · 홍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함
      –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임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심현희(☎2133-7365)

#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의 재위탁 절차 추진

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장애인들에게 완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 재위탁 예정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365,250천원(’ 25년 기준)
(인건비 301,423천원, 운영비 63,827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나. 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다.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23. 6.)

라. 추진 필요성

○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운영경험 필요

○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 소 재 지 :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상계동)

○ 시설규모 : 업무시설 299.18㎡,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 4층)

- 지하1층(전시체험장, 개조제작실), 2층 사무실,
4층 보조기기 수리 및 품질관리실

○ 개관일자 : ‘14. 8. 1.

○ 관 할 구 :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다.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이향림 (☎ 2133-7464 )

#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의 재위탁 절차 추진

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장애인들에게 완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 재위탁 예정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361,936천원(’ 25년 기준)
(인건비 298,109천원, 운영비 63,827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나. 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다.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23. 6.)

라. 추진 필요성

○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운영경험 필요

○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5층

○ 시설규모 : 업무시설 253.28㎡, (5층만 사용)

–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사무실, 보조기기 수리 및 품질관리실, 보조기기 제작실

○ 개관일자 : ’ 08. 11. 18.

○ 관 할 구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다.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 작성자 :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이향림 (☎ 2133-7464 )

# 서울특별시 비전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는「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로서,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적정' 이었으며,
다. 협약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양질의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3,547,413천원(' 25년) ※ 민간위탁금: 2,541,693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2025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25.7.18.) : 적정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 · 운영 등)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복지정책과-14101, ' 23.6.21.)
○ 추진 필요성
-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신체·정신질환, 질병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 대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시설로,
- 정신질환·고령·장애인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사례관리, 심리상담, 치료재활, 복지자원 연계 등 노숙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지원이 필요하므로

- 자활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 시설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 노숙인 알코올해독센터 운영
○ 알코올의존·정신질환을 지닌 노숙인 재활지원
○ 지원주택, 임시주거지원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 탈시설 · 탈노숙인 지역사회 정착(취업 및 주거지원)
○ 거리노숙인 아웃리치 및 응급쉼터 운영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노숙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설립일자 : 2004.2.1.
○ 시설위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 시설규모 : 3,372㎡(2개 동(가, 나동) 각 2층)
○ 시설구성 : 생활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체력단련장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 · 운영 등) 제1항

▸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5항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1항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자활지원과 주하영 (☎ 2133 - 7494)

#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서울광역자활센터와 관련하여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재계약 만료도래로 재위탁 절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있는 단체(“법인등”)를 선정하여 종합적·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26. 2. 7. ~ 2029. 2. 6.(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1,238,515천원(’ 25년 예산)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2025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25.7.18.) : 적정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24.12.)
○ 추진 필요성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25개 자치구 30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허브기관(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임
-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형 자활사업 개발·운영, 자활사업 홍보, 자활생산품 판로 개척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서울광역자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전문적 · 지속적 자활서비스 공급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 · 경험이 있는 단체( “법인등” )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취업·창업 및 사업지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각종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자활생산품 홍보·판로개척·전시회 개최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 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및 기타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추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설립일자 : 2010.11.9.
○ 시설위치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목동 514-18)
○ 시설규모 : 1,089.96㎡(건축 연면적 330평)
○ 시설구성 : 지상 1층(공용 1층 홀 자활상품전시관), 205호 (교육장 및 회의실), 305호(사무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1항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 · 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자활지원과 김미경 (☎ 2133 - 7559)

# 시립고덕양로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립고덕양로원의 위탁기간이 2026.3.4. 자로 만료 됨에 따라

나. 노인 복지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명 : 시립고덕양로원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지설) 및 같은 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추진 필요성

- 시립고덕양로원은 저소득 어르신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복지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 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시설보호대상 노인의 입소 및 보호
○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용
○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
○ 규 모 : 대지 21,804㎡, 건물 3,573㎡ / 본관, 별관
○ 주요시설 : 생활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강당, 사무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2026.3.5.~2031.3.4.)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75백만원(’ 25년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 2,017백만원, 운영비 105백만원, 사업비153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025년 제5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32조(노인주거복지지설) 및 같은 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 |
|---|
|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br>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br>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
|---|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
|---|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br>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복지실 고독대응과 김미연 (☎ 2133-7181 )

# 서울특별시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 실천과 건강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시 아토피 · 천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지원,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 보급,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며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아토피 · 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지원
○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 알레르기질환 정책개발 지원
○ 기타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라.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재위탁)
바. 소요예산 : 390백만원
○ 민간위탁금 : 39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김혜진 (☎ 2133-7884 )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식생활 교육 정책 개발과 사업 확산을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식생활 교육 전문 기관으로

나. ’ 20년 1월 공모를 통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 23년 1월 재계약으로 운영하여 ’ 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또는 설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①항2호(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호(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민의 가구 및 인구유형 변화(1인가구 및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따른 식생활 다변화로, 식생활 관련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단시간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식생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 서울시민의 다양한 식생활 · 식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내 영양 · 식생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 · 영양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위탁을 통해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활성화 가능

다. 위탁사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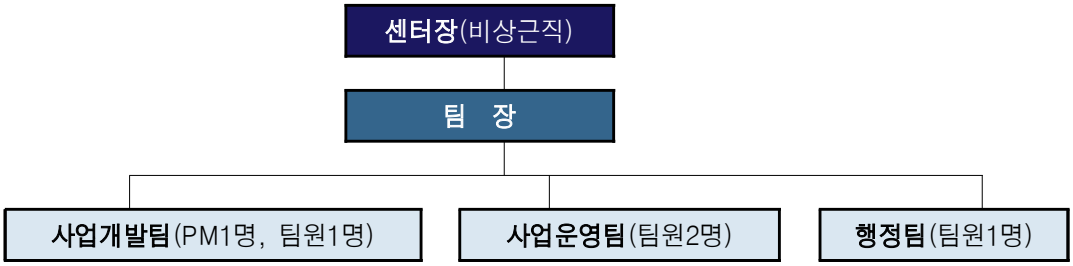
○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및 취약분야 사업 개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 · 홍보 강화
○ 자치구 식생활 개선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 교육사업 수행

○ 서울시민 맞춤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환경친화적 식생활 교육 정책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라.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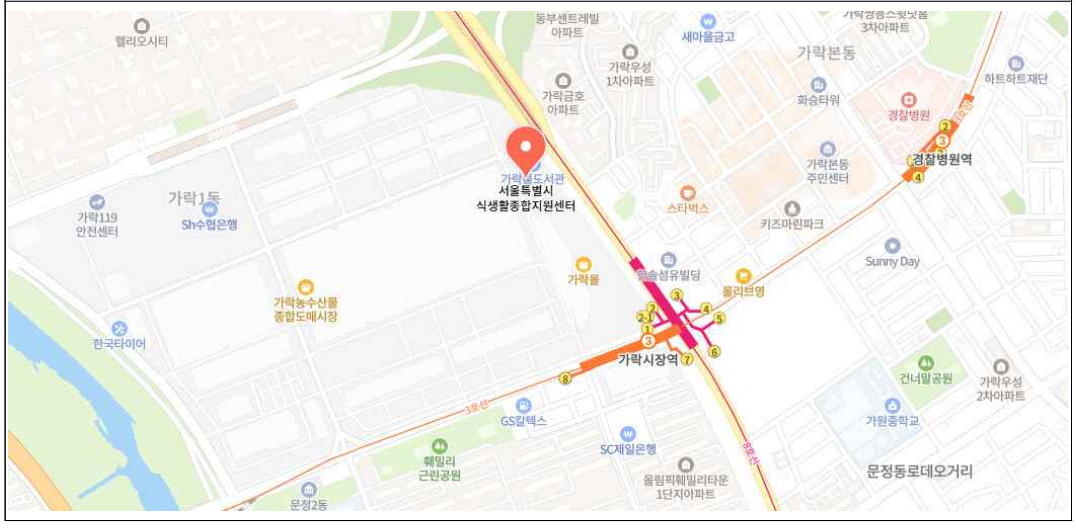
마.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 조직도 및 정·현원 : 정·현원 7명(센터장, 팀장 1명, 팀원 5명)




○ 주요시설 : 개인상담실, 사무실, 회의실 등
○ 위치도

시설명: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자격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선정

사. 소요예산 : 710백만원

○ 민간위탁금 : 710백만원(국비 50% 145, 시비 50% 145, 자체시비 420)

※ ‘26년 국비 보조금액 등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353,487천원, 운영비 52,290천원, 사업비 등 300,223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정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
4.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다른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7.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5.6.25.: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재위탁)
- 2025.7.11.: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실시(85.26점)
- 2025.7.1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5. 제5차)
○ 향후계획
- 2025.9.: 시의회 동의
- 2025.10.~12.: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이은형 (☎ 2133-4739 )

#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강동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13길 56
○ 시설규모 : 연면적 46㎡ (성내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강당 등
○ 인력운영 : 5명 (센터장 1명, 과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6. 1. 1.~ 2028.12.31.)
○ 위탁업무
– 강동외국인주민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실, 한국어자격증반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커뮤니티사업 등 운영
· 영상제작, K-뷰티, 다국가요리, K-드로잉 등 신규 문화체험형 강좌 개설 및 전문봉사단 운영 등 특화사업 운영

○ 소요예산 : 333,822천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97,464천원, 운영비 18,940천원, 사업비 117,418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5.07.14.)
· 권고사항: 센터별 기능 정립 및 종합 비전 수립 등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7.20.>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6개소)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문화담당관-7503, 2025.6.27.)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정애(☎ 2133-8690)

#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금천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9
◯ 시설규모 : 65㎡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강당 등
◯ 인력운영 : 5명 (센터장 1명, 과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6. 1. 1.~ 2028.12.31.)
◯ 위탁업무
– 금천외국인주민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
· 상호문화 교류와 외국인주민의 자기개발을 위한 SNS 기반 홍보사업, 출판, 건강검진 및 자격증 교육과정 등 특화사업 운영
◯ 소요예산 : 331,517천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03,420천원, 운영비 15,000천원, 사업비 113,097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5.07.14.)
· 권고사항: 센터별 기능 정립 및 종합 비전 수립 등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7.20.>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6개소)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문화담당관-7503, 2025.6.27.)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정애(☎ 2133-8690)

#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양천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 시설규모 : 70㎡ (신목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강당 등
○ 인력운영 : 5명 (센터장 1명, 과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6. 1. 1.~ 2028.12.31.)
○ 위탁업무
– 양천외국인주민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힐링아트 교실, 외국인대표자 캠프 등 여가·리더십 프로그램과 함께 베이커리 등 기술교육 및 학령기 아동 대상 영어교실 운영 등 특화사업 운영
○ 소요예산 : 353,065천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11,528천원, 운영비 13.607천원, 사업비 127,93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5.07.14.)
· 권고사항: 센터별 기능 정립 및 종합 비전 수립 등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7.20.>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6개소)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문화담당관-7503, 2025.6.27.)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정애(☎ 2133-8690)

#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은평외국인주민센터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교육·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지원시설로,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14-26
○ 시설규모 : 69㎡ (녹번종합사회복지관 3층, 사무실)
※ 사무실 외 기타 시설은 종합복지관과 시설 공유를 통해 센터 운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강당 등
○ 인력운영 : 5명 (센터장 1명, 과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6. 1. 1.~ 2028.12.31.)
○ 위탁업무
- 은평외국인주민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 일체
· 일반 상담 및 법률, 노무 등 상담사업 운영
· 한국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사업 운영
· 문화체험 행사, 의료지원, 인권문화다양성 사업 등 운영
· 자격증 교육과정, 인권영화제, 명절 여가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운영
○ 소요예산 : 341,422천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206,706천원, 운영비 13,500천원, 사업비 121,216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권고) (’ 25.07.14.)
· 권고사항: 센터별 기능 정립 및 종합 비전 수립 등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문화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다양한 기관(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노무사, 봉사자, 종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8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6., 2021.7.20.>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 2021.7.20>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6개소)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문화담당관-7503, 2025.6.27.)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정애(☎ 2133-8690)

# 시립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립마리공동체는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위한 주거 지원 및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시설로,

나.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 25년 12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 재 지 : 용산구 소재(비공개 대상 시설)
○ 시설규모 : (건물면적) 226.5m² , 지상4층(총 10호 중 3호)
○ 시설용도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주거 · 자립 지원
○ 인력운영 : 4명(시설장 1, 상담원 3)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2026. 1. 1.~ 2030. 12. 31.)
○ 위탁사무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신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수사 · 재판에의 조력 등 법률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립 · 자활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육아 및 보육 지원
○ 소요예산(안) : 277,089천원(’ 25년도)
- 인건비 212,189천원, 사업비 25,610천원, 운영비 등 39,29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25.6.26.)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8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립마리공동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공모)추진계획 (다문화담당관-6244, 2025.5.26.)

○ 민간위탁 추진현황

| 구 분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선정방법 | 비고 |
|---|---|---|---|---|
| 최초위탁 | 3년 (’ 09.11.01.~’ 12.10.31.) | (사복)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공개모집 | |
| 2차 위탁 | 3년 (’ 12.11.01.~’ 15.10.31.) | (사)참여성노동복지터 | 공개모집 | |
| 3차 위탁 | 5년 (’ 15.11.01.~’ 20.10.31.) | (사)참여성노동복지터 | 공개모집 | |
| 4차 위탁 | 5년 (’ 21.1.~’ 25.12.) |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 공개모집 | 수탁기관명 변경(기관동일) |

라.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폭력피해 등 위기에 처한 이주여성을 긴급히 보호하고, 의료 · 법률 · 통번역 등 외부 자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시설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특히 대사관, 병원, 경찰서, 법률사무소, 이주민지원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전문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이주여성 그룹홈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공모)추진계획(다문화담당관-6244, 2025.5.26.)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김선영 (☎ 2133- 8694)

# 연남동 공공주택건립사업 토지교환 조건 (변경)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공공임대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1항 1호에 따라 공용·공공용재산(작은 도서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토지교환을 하였으나, 도서관 운영 주체가 없어 부득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1항 4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토지교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교환 공유재산 현황

| 구 분 | 소재지 | 면적(㎡) | 기준가격(천원) | 이용현황 | 참고사항 |
|---|---|---|---|---|---|
| 토지 교환 | 마포구 연남동 245-82 | 282.30 | 1,749,413 | 나대지(지목:대) | 사유지 → 시유지 |
| 토지 교환 | 양천구 신정동 1290 | 605.30 | 1,899,431 | 주차장(지목:대) | 시유지 → 사유지 |

나. 토지교환 조건 변경 필요성

○ 시유지와 사유지 토지교환을 통해 통합공공 임대주택 및 작은 도서관 건립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1. 3차)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음

○ 그러나, 작은도서관 운영기관(마포구) 협의결과 사용계획이 없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액 및 임대주택 공급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시의회 동의를 얻어 토지교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제1항제4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 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3. 중략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1년 6월 16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작성자 : 주택실 공공주택과 윤진석 / 정현희 (☎2133 - 7067/7073)

## - 시청역 펀 스테이션 조성 -

## 지하 유휴공간 기반시설 조성 위·수탁 협약체결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시청역 펀 스테이션 운영과 관련하여, 시청역 지하 유휴공간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추진 중임
   나.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을 요청함에 따라 협약 체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는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를 부담하고, 서울교통공사는 시청역 지하 유휴공간 환기·피난·소방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건축·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수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공사 준공 시점에 맞춰 ' 26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유연경 (☎2133-0419)

#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25. 3. 24. ~ 5. 16.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총 39명)
    ○ 2025. 6. 9.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39명 중 17명 선정)

  나. 선정결과 : 총 17명(남 10명, 여 7명) ※ 세부명단 별첨
    ○ 국가 및 지역 : 16개국(※ 국명 가나다순)

| 국 가 | 인원 | 국 가 | 인원 | 국 가 | 인원 | 국 가 | 인원 |
|---|---|---|---|---|---|---|---|
| 네팔 | 1 | 몽골 | 1 | 사우디아라비아 | 1 | 중국 | 1 |
| 대만 | 1 | 미국 | 1 | 아제르바이잔 | 1 | 카자흐스탄 | 1 |
| 독일 | 1 | 베트남 | 1 | 영국 | 1 | 키르기스스탄 | 1 |
| 모로코 | 1 | 브라질 | 1 | 인도 | 2 | 페루 | 1 |

  다. 향후일정(안)
    ○ 2025. 11월 : 2025년도 명예시민증 수여식 개최

  라. 관련근거
    1)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2) 수여대상자 결정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 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서울시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4조 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외교담당관 김형주 (☎ 2133-5288)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 한양대학교 -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2. 안건내용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면 적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학 교 | 대학 (한양대학교) | 제1 캠퍼스 | 행당동 17번지 일대 | 411,356 | 증) 4,939 | 416,295 | 서고시 제60호 (1975.5.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 |
| | | 제2 캠퍼스 | 사근동 223번지 일대 | 108,906 | - | 108,906 | | |
| | | 합 계 | | 520,262 | 증) 4,939 | 525,201 | | |

2) 변경사유서

|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한양대학교 | • 제1캠퍼스<br>면적 : 증) 4,939㎡ | • 3구역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신축을 위한 용적률 확보를 위해 행당동 23-1전, 산22-1임 필지 학교 추가<br>(증 4,939㎡, 18구역) |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구역계획

| 캠퍼스 | 구 역 | | 구분 | 면 적 (㎡) | | | 비 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제 1캠퍼스 | 관리 | 일반관리구역 | ① | 93,909 | - | 93,909 | |
| | | | ② | 16,118 | - | 16,118 | |
| | | | ③ | 97,387 | - | 97,387 | |
| | | | ④ | 70,610 | - | 70,610 | |
| | | | ⑤ | 57,374 | - | 57,374 | |
| | 유지 | 상징경관구역 | ⑥ | 11,403 | - | 11,403 | |
| | | 외부활동구역 | ⑦ | 5,847 | - | 5,847 | |
| | | | ⑧ | 20,241 | - | 20,241 | |
| | | | ⑨ | 4,835 | - | 4,835 | |
| | 보전 | 녹지보존구역 | ⑩ | 18,095 | - | 18,095 | |
| | | | ⑪ | 15,537 | - | 15,537 | |
| | | | ⑱ | - | 증) 4,939 | 4,939 | 금회 추가 구역 |
| | 소 계 | | | 411,356 | 증) 4,939 | 416,295 | |
| 제 2캠퍼스 | 관리 | 일반관리구역 | ⑫ | 13,068 | - | 13,068 | |
| | | | ⑬ | 31,406 | - | 31,406 | |
| | | | ⑭ | 25,468 | - | 25,468 | |
| | 유지 | 외부활동구역 | ⑮ | 9,090 | - | 9,090 | |
| | 보전 | 녹지보존구역 | ⑯ | 26,213 | - | 26,213 | |
| | | | ⑰ | 3,661 | - | 3,661 | |
| | 소 계 | | | 108,906 | - | 108,906 | |
| 합 계 | | | | 520,262 | 증) 4,939 | 525,201 | |

2) 밀도계획 (건폐율)

| 구분 | 용도지역 | 밀도산정 기준면적(㎡) | | | 조례 건폐율(%) | | 사용 건폐율(%) | | 관리 건폐율(%)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제1 캠퍼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235,059 | 증)15,209 | 250,268 | 30 | 30 | 27.48 | 26.4 | 30 | 30 | 비오톱1등급 (11,588㎡)해제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64,709 | 증)1,318 | 166,027 | 60 | 60 | 33.72 | 33.7 | 35 | 35 | |
| | 소 계 | - | 증)16,527 | 416,295 | - | 42 | - | 29.3 | - | 32 | |
| 제2 캠퍼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18,985 | - | 18,985 | 30 | 30 | 4.04 | 4 | 20 | 20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89,921 | - | 89,921 | 60 | 60 | 16.21 | 16.2 | 20 | 20 | |
| | 소 계 | - | - | 108,906 | - | 54.8 | - | 14.1 | - | 20 | |
| 합 계 | | - | 증)16,527 | 525,201 | - | 44.6 | - | 26.1 | - | 29.5 | |

※ 18구역(4,939㎡) 시설결정 추가

※ 제1캠퍼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 구분

3) 밀도계획 (용적률)

| 구분 | 용도지역 | 밀도산정 기준면적(㎡) | | | 비오톱 1등급지(㎡) | | 조례 용적률(%) | | 사용 용적률(%) | | 관리 용적률(%)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제1 캠퍼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235,059 | 증)15,209 | 250,268 | 11,588 | - | 150 | 150 | 146.67 | 140.7 | 150 | 150 | 비오톱1등급 (11,588㎡)해제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64,709 | 증)1,318 | 166,027 | - | - | 200 | 200 | 198.13 | 198.2 | 200 | 200 | |
| | 소 계 | - | 증)16,527 | 416,295 | - | - | - | 169.9 | - | 163.6 | - | 169.9 | |
| 제2 캠퍼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18,985 | - | 18,985 | - | - | 150 | 150 | 20.81 | 20.8 | 88 | 88 | |

| 구분 | 용도지역 | 밀도산정 기준면적(㎡) | | | 비오톱 1등급지(㎡) | | 조례 용적률(%) | | 사용 용적률(%) | | 관리 용적률(%) |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89,921 | - | 89,921 | - | - | 200 | 200 | 80.67 | 80.7 | 88 | 88 | |
| | 소 계 | - | - | 108,906 | - | - | - | 191.3 | - | 70.2 | - | 88 | |
| 합 계 | | - | 증)16,527 | 525,201 | - | - | - | 174.4 | - | 144.3 | - | 152.9 | |

※ 18구역(4,939㎡) 시설결정 추가

※ 제1캠퍼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용적률 구분

4) 구역별 밀도계획 (용적률)

| 캠퍼스 | 구분 | 구역 | 밀도산정 기준면적(㎡) | | 조례용적률(%) | | 사용용적률(%) | | 이전용적률(%) | | 관리용적률(%)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제1캠퍼스 | 일반관리 | ① | 93,909 | 93,909 | 177.49 | 177.5 | 202.93 | 202.9 | +25.77 | +25.8 | 203.26 | 203.3 | |
| | | ② | 16,118 | 16,118 | 157.89 | 157.9 | 190.99 | 191.0 | +74.20 | +74.2 | 232.09 | 232.1 | |
| | | ③ | 97,387 | 97,387 | 157.82 | 157.8 | 182.06 | 192.4 | +24.36 | +34.6 | 182.18 | 192.4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금회 신축, 자연대과학관 증축 |
| | | ④ | 70,610 | 70,610 | 197.43 | 197.4 | 223.11 | 223.5 | +25.87 | +26.1 | 223.31 | 223.5 | |
| | | ⑤ | 57,374 | 57,374 | 158.96 | 159.0 | 172.84 | 172.8 | +19.93 | +19.9 | 178.89 | 178.9 | |
| | 상징경관 | ⑥ | 11,403 | 11,403 | 151.32 | 151.3 | 116.96 | 114.8 | -34.36 | -34.4 | 116.96 | 117.0 | 교수연구동후면지하주차장 오기로 인한 구역이동 (⑥구역→④구역) |
| | 외부활동 | ⑦ | 5,847 | 5,847 | 150.00 | 150.0 | 8.03 | 8.0 | -141.97 | -142.0 | 8.03 | 8.0 | |
| | | ⑧ | 20,241 | 20,241 | 163.91 | 163.9 | 7.01 | 7.0 | -155.92 | -155.9 | 7.99 | 8.0 | |
| | | ⑨ | 4,835 | 4,835 | 200.00 | 200.0 | 4.31 | 4.3 | -195.69 | -195.7 | 4.31 | 4.3 | |

| 캠퍼스 | 구분 | 구역 | 밀도산정 기준면적(㎡) | | 조례용적률(%) | | 사용용적률(%) | | 이전용적률(%) | | 관리용적률(%)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 녹지보존 | ⑩ | 6,507 | 18,095 | 150.00 | 150.0 | - | - | -150.00 | -65.1 | - | - | 비오톱1등급지 (11,588㎡) → 개별비오톱 2등급 |
| | | ⑪ | 15,537 | 15,537 | 173.41 | 173.4 | 1.86 | 1.9 | -171.55 | -171.5 | 1.86 | 1.9 | |
| | | ⑱ | - | 4,939 | - | 163.3 | - | - | - | -163.3 | - | - | 금회 추가 구역 |
| 소 계 | | | - | 416,295 | - | 169.9 | - | 163.6 | - | - | - | 166.3 | |
| 제2캠퍼스 | 일반관리 | ⑫ | 13,068 | 13,068 | 195.48 | 195.5 | 197.54 | 197.5 | +9.52 | +9.5 | 205.00 | 205.0 | |
| | | ⑬ | 31,406 | 31,406 | 200.00 | 200.0 | 74.54 | 74.5 | - | - | 125.00 | 125.0 | |
| | | ⑭ | 25,468 | 25,468 | 199.32 | 199.3 | 106.35 | 106.4 | - | - | 115.00 | 115.0 | |
| | 외부활동 | ⑮ | 9,090 | 9,090 | 200.00 | 200.0 | - | - | - | - | - | - | |
| | 녹지보존 | ⑯ | 26,213 | 26,213 | 166.70 | 166.7 | 0.69 | 0.7 | -4.75 | -4.8 | 0.69 | 0.7 | |
| | | ⑰ | 3,661 | 3,661 | 200.00 | 200.0 | - | - | - | - | - | - | |
| 소 계 | | | - | 108,906 | - | 191.3 | - | 70.2 | - | - | - | 87.7 | |
| 합 계 | | | - | 525,201 | - | 174.4 | - | 144.3 | - | - | - | 150.0 | |

※ 제1캠퍼스 10구역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지(11,588㎡)에서 서고시 제2015-157호 개별비오톱 2등급으로 변경됨

5) 높이계획

| 구분 | 구역 | 높이(m)*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
| 1캠퍼스 | 1 | •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2m~55m 이하 | 일반관리구역 |
| | 2 | •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8m~35m 이하 | 일반관리구역 |
| | 3 | •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 일반관리구역 |
| | 4 | •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2m~45m 이하 | 일반관리구역 |
| | 5 | • 지표로부터 최대 20m~35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m~35m 이하 | 일반관리구역 |

| 구분 | 구역 | 높이(m)* | | 비고 |
|---|---|---|---|---|
| | | 기 정 | 변 경 | |
| | 6 |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m~28m 이하 | 상징경관구역 |
| | 7 |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0m 이하 | 외부활동구역 |
| | 8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외부활동구역 |
| | 9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외부활동구역 |
| | 10 | • 건축배치불가 | • 건축배치불가 | 녹지보존구역 |
| | 11 | • 건축배치불가* | • 건축배치불가* | 녹지보존구역 |
| | 18 | - | • 건축배치불가 | 녹지보존구역 |
| 2캠퍼스 | 12 | •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8m~45m 이하 | 일반관리구역 |
| | 13 |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일반관리구역 |
| | 14 |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 일반관리구역 |
| | 15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외부활동구역 |
| | 16 | • 건축배치불가* | • 건축배치불가* | 녹지보존구역 |
| | 17 | • 건축배치불가 | • 건축배치불가 | 녹지보존구역 |

*현황 건축물에 한해 유지

6) 변경 건축물 조서

| 구역번호 | 연번 | 건물명 | 건축면적 | | | | 연면적 | | | | 지상층 연면적 | | | | 층수(지하) | | 비고 |
|---|---|---|---|---|---|---|---|---|---|---|---|---|---|---|---|---|---|
| |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 | | |
| |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 ③ | 1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 - | 1,082 | - | 446 | - | 8,228 | - | 8,541 | - | 5,383 | - | 2,746 | - | 6(3) | 금회 신축 |
| | 2 | 자연대 과학관 | 3,114 | 3,384 | - | - | 23,405 | 25,315 | - | - | 20,081 | 21,971 | - | - | 2/7 | 2/7 | 금회 증축 |
| 합 계 | | | 3,114 | 4,466 | - | 446 | 23,405 | 33,543 | - | 8,541 | 20,081 | 27,354 | - | 2,746 | | | |

3. 입안사유

○ 한양사이버대 교사시설 확충(사이버3관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2019.12.)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자연대학관 내 부족한 강의실 확보를 위한 증축 계획을 반영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4. 도시관리계획 사항

○ 용도지역

– 대학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도시계획시설 : 학교

5. 주민 의견청취 사항

○ 의견청취기간 : 2025. 7. 31. ~ 8. 14.

○ 게 재 신 문 : 서울시보 제4082호(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05호)

○ 열 람 장 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성동구 도시계획과

6. 관련부서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부서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 공통사항<br>○ 기후변화 대응 및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개발로 인한 물순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기법(LID)과 유휴물자원 활용체계를 계획에 반영 | ▸사업 인허가시 협의하겠음 | 반영 |
| | • 빗물관리<br>○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사업구역 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전 해당 자치구 물순환 주관부서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 반영 |
| | • 물재이용<b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하고,<br>○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 할 것 |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 | 반영 |

| 협의부서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서울시 수변감성 도시과 | | | |
| | • 토양<br>○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시행(공사)과정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 ▸사업시행(공사) 중 오염토양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 조치하겠음 | 반영 |
| | • 지하수<br>○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br>○ 지하수위 이하 구간 굴착을 포함하는 공사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경우(지반침하 포함), 지하수위 측정데이터를 매 분기 말까지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로 제출(계측 시작부터 계측 종료시까지)<br>○ 사업설계 단계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유출 지하수 발생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br>○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관련 | ▸ 지하수위는 「서울특별시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관리하겠음<br><br>▸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 할 경우 사업 시행 시 반영하겠음<br><br>▸사업 인허가시 협의하겠음<br><br>▸서울특별시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 사업에 해당될 시 적합하게 반영하겠음 | 반영 |
| 성동구 도시계획과 | ○ 건축허가 및 신고 시 「단순결정(건축면적 30%이하의 변경 또는 연면적 10%이하 변경)」 사항으로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미반영된 내용에 대하여 모두 반영하여 결정(변경)하기 바람 | ▸ 기 건축물의 대하여 사용승인 완료후 추후 세부시설조성계획 시 반영하겠음 | 반영 |
| 성동구 공원녹지과 | ○ 도시계획시설(학교) 편입계획 필지 중 행당동 산 22-1(3,808㎡, 지목 임야)은 2025. 7. 18. 임목 복구준공처리 된 토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 만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음 | 반영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 ▸고시된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dwg)을 고시일 2주전까지 공문 | 반영 |

| 협의부서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반영 여부 |
|---|---|---|---|
| 성동구 토지관리과 | 령」 제7조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6조,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등 전산파일(dwg)을 고시일(효력발생일) 2주전까지 공문 제출하여, 고시일에 맞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원활히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하겠음 | |
| 성동구 교통행정과 | ○ 금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변경심의 대상) 및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 변경 절차 이행하기 바람 | ▸교통영향평가 해당 지침 등을 검토하여 이행하겠음 | 반영 |

7. 기 타

○ 재원조달계획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 구분 | 소요자금 | 비고 |
|---|---|---|
| 합 계 | 67,800,000,000 (100.0%) | |
| 건축기금 | 7,000,000,000 (10.0%) | |
| 이월금 | 60,800,000,000 (90.0%) | |

– 자연대과학관

| 구분 | 소요자금 | 비고 |
|---|---|---|
| 합 계 | 7,000,000,000 (100.0%) | |
| 건축기금 | 7,000,000,000 (100.0%) | |

○ 연차별 예산계획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이버3관

| 구분 | 2025~2026년 | 2027~2028년 | 비고 |
|---|---|---|---|
| 합 계 | 9,200,000,000(13.57%) | 58,600,000,000(86.43%) | |
| 사업비 | 9,200,000,000(13.57%) | 58,600,000,000(86.43%) | |

- 자연대과학관

|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비고 |
|---|---|---|---|---|
| 합 계 | 1,050,000,000(15.00%) | 2,800,000,000(40.00%) | 3,150,000,000(45.00%) | |
| 사업비 | 1,050,000,000(15.00%) | 2,800,000,000(40.00%) | 3,150,000,000(45.00%) | |

○ 환경성 검토 결과 녹지훼손, 지형변화, 경관 및 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 시 환경저해요소(소음, 진동 등)의 저감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교통성 검토 결과 당해 계획으로 인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평가(변경) 실시 예정임

○ 추진경위

- '75.05.01.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 '93.11.19. : 자연대과학관 사용승인일
- '01.10.10. : 한양사이버대학교 설립 최종인가 통보
- '17.12.28.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
- '25.07.24.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신청
- '25.07.24.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관계부서 협의
  ⇒ 기 간 : '24.07.24.~07.31.
- '25.07.31.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기 간 : '24.07.31.~08.14. (서울시보)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안). 끝.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노송이 (☎ 2133-8413)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 의견청취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산업 및 상권 활성화,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수립 및 고시(’ 24.8.29.)한 사항과 관련하여,

나. 정비가능구역, 용적률, 높이 계획, 상업지역 주거비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심지 정비 유도를 위한 정비가능구역 조정
- 정비가능구역 추가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 조정

나. 용적률 및 높이계획 조정
- 용적률 체계 조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조정
- 서울도심 外 높이기준 조정

다. 상업지역 주거공급계획 조정
-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비율완화 반영
-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관리방안 변경
- 시니어주택 공급부문 신설 등

3. 추진경위

○ '23.02.16.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 '24.08.29.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 '25.04.~07. :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및 전문가 자문
○ '25.08. : 주민공람(예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청취사항

※ 작성자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홍윤호 (☎ 2133-4633)

# 영등포 경인로 일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영등포 경인로 일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수립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지 역 명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1번지 일대
  - 유 형 : 경제기반형
  - 면 적 : 524,409㎡
  - 마중물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나. 주요 변경사항
  - 14개 마중물사업 중 변경(축소) 6건, 폐지 1건
  - 마중물 사업비 499억원 → 288억원 (감 211억원)

 다. 추진경위
  - ’17.02.16.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 선정
  - ’18.07.05.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20.04.16. :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3.04.2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기간연장
  - ’24.05.0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 착수
  - ’24.11.28.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기간연장
  - ’25.07.18. : 공청회 개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청취 사항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정현경 (☎02-2133-8640)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활성화계획 주요사업의 완료 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나. 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4.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나. 사업면적: 628,000㎡
   다. 사업기간: 2019년 6월 ~ 2024년 12월
   라. 총사업비: 574.8억원(마중물사업 200억원/지자체 협력사업 374.8억원)
   마.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추진 성과 및 정책방향 등을 반영한「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 마중물사업 | 9개 단위사업 | 8개 단위사업 | 1개사업* 감소 |
| 지자체 협력사업 | 11개 사업 | 9개 단위사업 | 2개사업** 감소 |

*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
** 아카데미하우스활성화사업, 삼각산 시민청 화장 및 커뮤니티 기능강화

◯ 계획 변경 내용 반영 및 완료 사업의 정산 등 예산 집행계획 변경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 마중물사업 | 200억원 | 91.13억원 | 108.87억원 감소 |
| 지자체 협력사업 | 374.8억원 | 376.18억원 | 1.38억원 증가 |

3. 추진경위 및 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 19. 6. 2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 ’ 22. 11. 3.

– 마중물사업 기간 연장(기존:’ 22년 → 변경:’ 23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 ’ 23. 12. 28.

– 마중물사업 기간 연장(기존:’ 23년 → 변경:’ 24년)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5. 6. 5. ~ 6. 17.

– 9개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2개 부서(기관) 회신 (별도의견 없음)

○ 주민공청회 : ’ 25. 7. 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발표 및 질의응답, 의견 수렴 (별도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 ‘25. 8월 중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25. 9월 중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25. 10월 중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

나. 예산조치: 예산 변경 사항 반영

(총사업비 574.8억원 → 467.31억원, 감107.5억원)

붙임 1. 위치도 1부.

2. 구상도 1부.

3. 예산집행계획 변경(안) 1부. 끝.

※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김승선 주무관 (☎ 2133-8295)




| 기관의 장 |
| --- |
| 선람 |

| 공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